

# 남북교류협력법규집



 통일부



# 총 목 차

<p>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p> <p style="padding-left: 20px;">I-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3</p> <p style="padding-left: 20px;">I-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p> <p style="padding-left: 20px;">I-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p> <p>II. 남북한 왕래 ..... 91</p> <p style="padding-left: 20px;">II-1.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93</p> <p style="padding-left: 20px;">II-2.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 97</p> <p style="padding-left: 20px;">II-3.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 107</p> <p style="padding-left: 20px;">II-4.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 111</p> <p>III. 교역 및 수송 ..... 115</p> <p style="padding-left: 20px;">III-1.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117</p> <p style="padding-left: 20px;">III-2.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125</p> <p style="padding-left: 20px;">III-3. 개성공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 133</p> <p style="padding-left: 20px;">III-4.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 137</p> <p style="padding-left: 20px;">III-5.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143</p>	<p style="padding-left: 20px;">III-6.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155</p> <p style="padding-left: 20px;">III-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 179</p> <p style="padding-left: 20px;">III-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185</p> <p style="padding-left: 20px;">III-9.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205</p> <p>IV. 협력사업 ..... 221</p> <p style="padding-left: 20px;">IV-1.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223</p> <p style="padding-left: 20px;">IV-2.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229</p> <p style="padding-left: 20px;">IV-3.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 233</p> <p style="padding-left: 20px;">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243</p> <p style="padding-left: 20px;">IV-5.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247</p> <p>V. 남북협력기금법 ..... 257</p> <p style="padding-left: 20px;">V-1. 남북협력기금법 ..... 259</p> <p style="padding-left: 20px;">V-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259</p> <p style="padding-left: 20px;">V-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259</p>
--	--

VI. 남북협력기금 관련 하위법규 ..... 277

VI-1.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279

VI-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299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325

VI-4. 교역보험 취급기준 ..... 329

VI-5.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 381

VII. 남북합의서 ..... 411

VII-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413

VII-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417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423

VII-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425

VII-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429

VII-3-3.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438

VII-3-4.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442

VII-4. 남북경협 9개 합의서 ..... 445

VII-4-1. 개성공업지구 통선에 관한 합의서 ..... 447

VII-4-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449

VII-4-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452

VII-4-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454

VII-4-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458

VII-4-6.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462

VII-4-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467

VII-4-8. 남북해운합의서 ..... 471

VII-4-9.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475

# I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출입장소)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문점</li> <li>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li> <li>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li> <li>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li> <li>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li> <li>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li> </ol>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p> <p>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p>	<p>하는 곳</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 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 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9.1.30]</p> <p>제5 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li> <li>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li> </ol> <p>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b></p> <p>제4 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p> <p>②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제5 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⑥협의회의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전문개정 2009.1.30]</p> <p>제6조 (협의회의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li> <li>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li> <li>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li> <li>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li> <li>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li> <li>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li> <li>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09.1.30]</li> </ol> <p>제7조 (협의회의의 회의와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②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p> <p>제6조 (협의회의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8 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전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 8 조 (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9 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p> <p>제10 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li><li>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li><li>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li><li>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li></ol> <p>제11 조 (준용규정 등) ①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 (남북한 방문)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b></p> <p>제 12 조 (방문승인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li> <li>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li> <li>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제 2 조 (방문승인 신청)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②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 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li> <li>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 증명서”라 한다)</li> </ol>	<p>②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p>	<p>제3 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 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p> <p>②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li> <li>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li> </ol> <p>③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명서번호</li> <li>2. 성명</li> <li>3. 성별</li> <li>4. 생년월일</li> <li>5. 유효기간</li> </ol>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④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p> <p>⑥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li> <li>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li> <li>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li> <li>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li> <li>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li> </ol>	<p>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p> <p>⑤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시행일 : 2009.10.31]</p> <p>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p> <p>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p> <p>⑥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p> <p>⑦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은 경우</li> <li>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li> </ol>	<p>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⑦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li> <li>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li> <li>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p>⑧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⑨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p> <p>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li> <li>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li> </ol> <p>⑨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13 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p>제14 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p>제7 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p>	<p>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 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li> <li>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li> <li>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li> </ol> <p>제16조 (접촉신고) 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li> <li>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li> </ol>	<p>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p> <p>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li> <li>③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li> </ol>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하는 서류</p> <p>②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li> <li>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li> <li>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li> <li>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li> <li>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li> </ol> <p>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p> <p>④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li> <li>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li> <li>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li> <li>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li> <li>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li> </ol> <p>⑤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⑤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li> <li>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li> <li>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⑥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p> <p>제17 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p>제18 조 (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p>	<p>⑤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 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 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11 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19 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p> <p>제20 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p> <p>제21 조 (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2 조 (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원의 확인</li> <li>2. 휴대품 등의 검사</li> <li>3. 검역</li> </ol>	<p>제10 조 (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p> <p>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p> <p>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p> <p>②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p> <p>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 23 조 (심사 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24 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p>	<p>②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p> <p>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교 역</b></p> <p>제25조 (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출·반입 계획서</li> <li>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li> <li>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li> <li>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p> <p>②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li> <li>2. 대금결제 방법</li> <li>3. 반출·반입 유효기간</li> <li>4. 반출·반입 승인 조건</li> </ol> <p>③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li> <li>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li> </ol>	<p>③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p> <p>④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p> <p>⑤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p> <p>⑤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p>	<p>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④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 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li> <li>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li> <li>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⑤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li> <li>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li> <li>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li> <li>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li> <li>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9.1.30]</li> </ol> <p>제 14 조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 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li> <li>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li> </ol>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전문개정 2009.1.30]</p> <p>제15 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 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li> <li>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6 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2 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16조 삭제 &lt;2009.1.30&gt;</p> <p>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li> <li>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li> <li>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li> <li>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li> <li>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협력사업</b></p> <p>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li> <li>2. 협력사업 계획서</li> <li>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li> <li>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②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p> <p>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p> <p>②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p> <p>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p> <p>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p> <p>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p> <p>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②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li> <li>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③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p> <p>④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li>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li> <li>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li> <li>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li> </ol>	<p>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p> <p>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④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li> <li>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li> <li>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⑤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p> <p>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p> <p>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p> <p>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p> <p>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p> <p>⑤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17 조의 2 (협력사업의 신고) ①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p>	<p>제 28 조 (청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p> <p>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29 조 (협력사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li> <li>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li> </ol> <p>②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li> <li>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li> <li>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li> </ol>	<p>제14 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p>	<p>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p> <p>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③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li> <li>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li> <li>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④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li> <li>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li> <li>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li> </ol>	<p>②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p> <p>③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 18 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li> <li>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p>	<p>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제 30 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 15 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19 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p>	<p>④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li> <li>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li> <li>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li> <li>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⑤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보 칙</p> <p>제 31 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20 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은행</li> <li>2. 한국수출입은행</li> <li>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li> <li>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li> </ol> <p>제 32 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p> <p>제 33 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제 16 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 38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li> <li>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li> <li>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li> <li>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li> <li>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li> <li>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li> <li>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②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p>	<p>③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li> <li>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⑤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p>	<p>②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p> <p>③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p> <p>⑤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li> <li>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p>④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을 붙일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li> <li>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li> <li>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⑥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li> <li>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li> </ol> <p>⑦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⑧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p>	<p>제34조 (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p> <p>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li> <li>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li> <li>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li> </ol>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 23 조 (검역 등) ①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삭제 &lt;2009.5.28&gt;[전문개정 2009.1.30]</p> <p>제 24 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p>	<p>간통신역무</p> <p>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p> <p>제 36 조 (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p> <p>제 37 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25 조 (협조 요청)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25 조의2 (업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li> <li>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li> </ol>	<p>제 38 조 (업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 17 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p> <p>제 25 조의 3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30]</p> <p>제 25 조의 4 (지도·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p>	<p>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p> <p>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p> <p>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p> <p>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p> <p>제 39 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p> <p>제 40 조 (지도·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사무소·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9.5.28&gt; [본조신설 2009.1.30]</p> <p>제 26 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②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p>	<p>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p> <p>⑥제5항에 따라 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41 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p> <p>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p>	<p>제 18 조 (지도·감독 등) ①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p> <p>②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p> <p>③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③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환거래법」</li> <li>2. 「외국인투자 촉진법」</li> <li>3. 「한국수출입은행법」</li> <li>4. 「수출보험법」</li> <li>5. 「대외경제협력기금법」</li> <li>6. 「법인세법」</li> <li>7. 「소득세법」</li> <li>8. 「조세특례제한법」</li> <li>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li> <li>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li> </ol>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p>	<p>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li> <li>2. 「국세기본법」</li> <li>3. 「국세징수법」</li> <li>4. 「부가가치세법」</li> <li>5. 「개별소비세법」</li> <li>6. 「주세법」</li> <li>7. 「교육세법」</li> <li>8. 「식물방역법」</li> <li>9. 「가축전염병예방법」</li> </ol> <p>④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2 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p> <p>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p> <p>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p> <p>④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43 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 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4 조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 26 조의 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p> <p>제 27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p>품등의 반출·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 26 조 제 3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p> <p>③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li><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li><li>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li><li>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li><li>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li><li>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li></ol>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li><li>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li></ol>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p> <p>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28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p> <p>제 28 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li> <li>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복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li> </ol>	<p>제 45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p> <p>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p> <p>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29 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p> <p>제 30 조 (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30]</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附則 &lt;제4239호,1990.8.1&gt;</p> <p>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p> <p>24.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p> <p>附則(정부조직법) &lt;제4268호,1990.12.27&gt;</p> <p>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第2條 省略</p> <p>第3條 (國土統一院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5條第2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2條 내지 第14條, 第15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1項 및 第25條중 “國土統一院長官”을 각각 “統一院長官”으로 한다.</p> <p>第4條 및 第5條第5項중 “國土統一院”을 각각 “統一院”으로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및 ③省略            第4條 내지 第10條 省略</p> <p>附則(출입국관리법) &lt;제4522호,1992.12.8&gt;</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내지 第5條 省略</p> <p>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를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로 한다.            ④省略</p> <p>附則(대외무역법) &lt;제4850호,1994.12.31&gt;</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第2條 및 第3條 省略</p> <p>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附則(대외무역법) &lt;제5211호,1996.12.30&gt;</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第2條 내지 第7條 省略</p> <p>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p> <p>⑪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12條중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p> <p>第14條第1號중 “自動承認品目”을 削除하고, 同條第1號 및 第2號중 “制限承認品目”을 각각 “승인을 要하는 品目”으로 한다.</p> <p>第9條 省略</p> <p>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lt;제5454호,1997.12.13&gt;</p> <p>이 법은 199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附則(외국인투자촉진법) &lt;제5559호,1998.9.16&gt;</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2條 및 第3條 省略</p> <p>第4條 (租稅減免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서 이 法 施行日까지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에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p> <p>第5條 (申告受理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申告受理를 받았거나 승인·許可·보고·확인 또는 登錄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法에 의하여 각각 申告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申告·승인·許可·확인 또는 登錄 등의 申請을 받아 그 節次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은 것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적용한다.</p> <p>第6條 및 第7條 省略</p> <p>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26條第3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外國人投資促進法</p> <p>②내지 ⑩省略</p> <p>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外資導入法중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 인용된 規定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lt;제6316호,2000.12.29&gt;(대외무역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중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를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을 하는 자”로 한다.</p> <p>②내지 ⑦생략</p> <p>부칙 &lt;제7539호,2005.5.31&gt;</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별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lt;제8364호,2007.4.11&gt;(검역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lt;제8852호,2008.2.29&gt;(정부조직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156&gt; 까지 생략</p> <p>&lt;157&gt;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lt;158&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lt;제9191호,2008.12.26&gt;</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9357호,2009.1.30&gt;</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p> <p>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p> <p>부칙 &lt;제9745호,2009.5.28&gt;</p> <p>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21648호,2009.7.30&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 (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p>	<p>부칙 &lt;제52호,2009.7.31&gt;</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p> <p>제3조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6 조 (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p> <p>제7 조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8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p> <p>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p> <p>②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p>	<p>제5 조 (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한다.</p> <p>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으로 한다.</p> <p>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2조의2를 삭제한다.</p> <p>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합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300만원 이하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복합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3.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	100만원 이하
5.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300만원 이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5호	300만원 이하
7.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	300만원 이하

[시행규칙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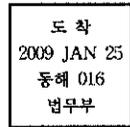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예시)



(규격 30mm×20mm)

(예시)



(규격 30mm×20mm)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			
	소속 및 직위	(전화 : )			
②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증개인포함)					
⑤ 방문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및 귀환 예정 경료					
⑦ 방문 계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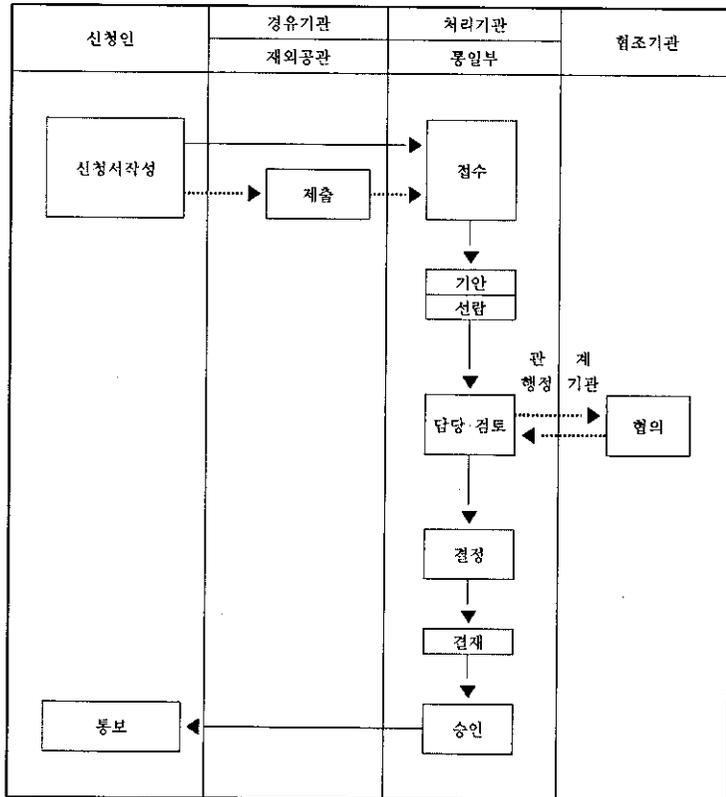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복한 달곡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문 확인한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	성 별	남·여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방 문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 문 목 적						
④ 방 문 경 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⑤ 방 문 예 정 지 역 및 기 간						
⑥ 방 문 및 귀 환 예 정 경 로						
⑦ 방 문 계 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방 문 경 험 (과거 3년 이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한 방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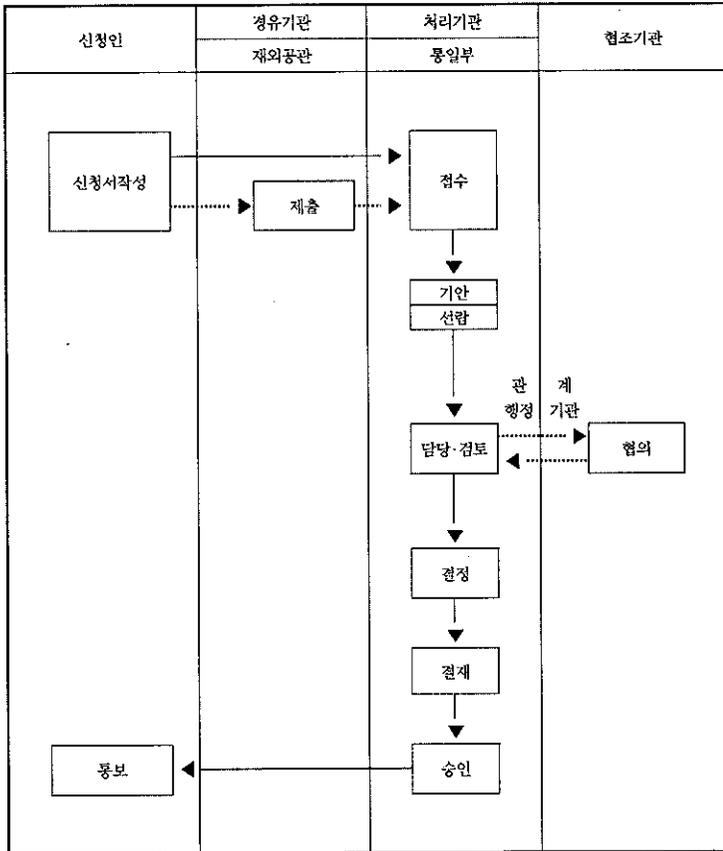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통일부

(뒷면)

※ 첨부서류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방문승인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북한주민접속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신고인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		사 진 (3.5cm×4.5cm)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재외국민)		
성 별		
주 소		
직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가 정	
	직 장	
	휴 대 폰	
신 장		cm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승인 번호		방 문 승 인 서	
①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② 방 문 대상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지역 및 방문 기간			
⑤ 방문 경로			
⑥ 승인 조건			
⑦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북한, 남한) 방문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서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방문자 인 사 사 항	성 명	(한자: )	성 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② 방 문 승 인 내 역	승인일자		승인번호	
③ 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④ 연 장 사 유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귀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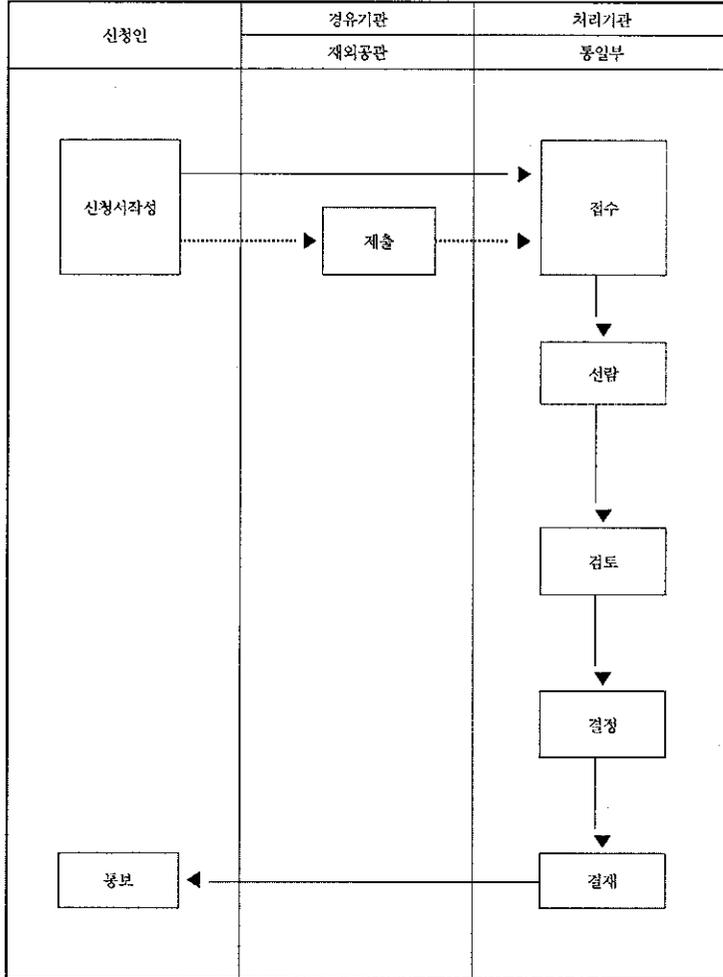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제활용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방문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방문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③ 방문 목적					
④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압선 및 중개인 포함)					
⑤ 방문 지역 및 기간					
⑥ 방문 경로					
⑦ 방문 결과 개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이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북한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귀하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판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성별	남·여	사 집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		
②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③ 방문대상자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방문자와의 관계
④ 방문목적					
⑤ 방문경위 (입북비자 획득 등)					
⑥ 방문지역 및 방문기간(일정)					
⑦ 방문경로 (경유지 포함)					
⑧ 방문계획 및 결과					
⑨ 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북한 방문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p>					
<p>* 신고번호는 공관별 점문 전치부호-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록합니다. (예: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방문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한자: )	성별	남·여
	현 방문증명서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② 재발급 사유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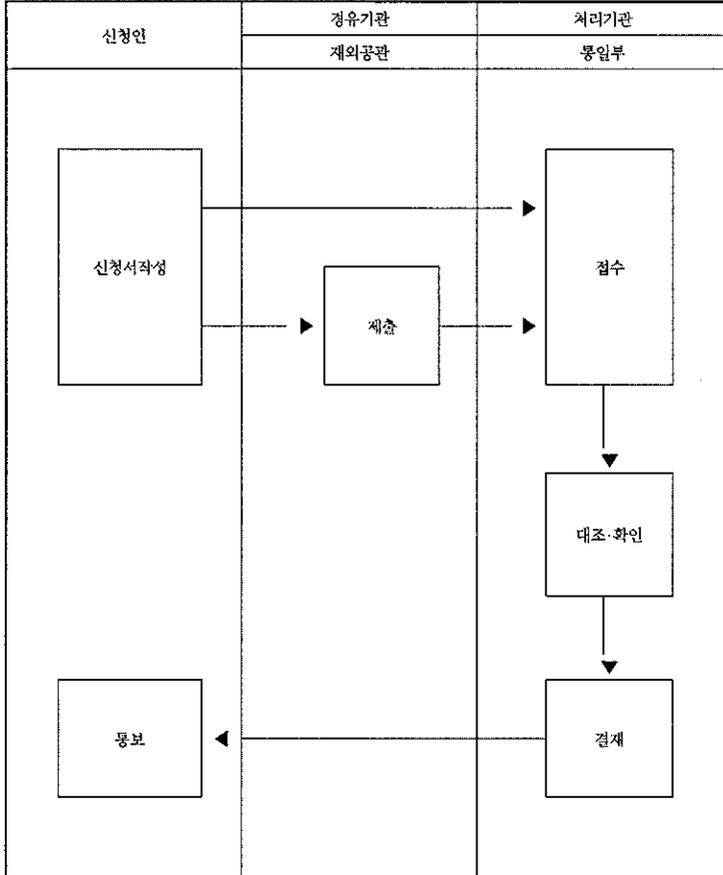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뒷면)

※ 첨부서류

- 방문증명서 제발급을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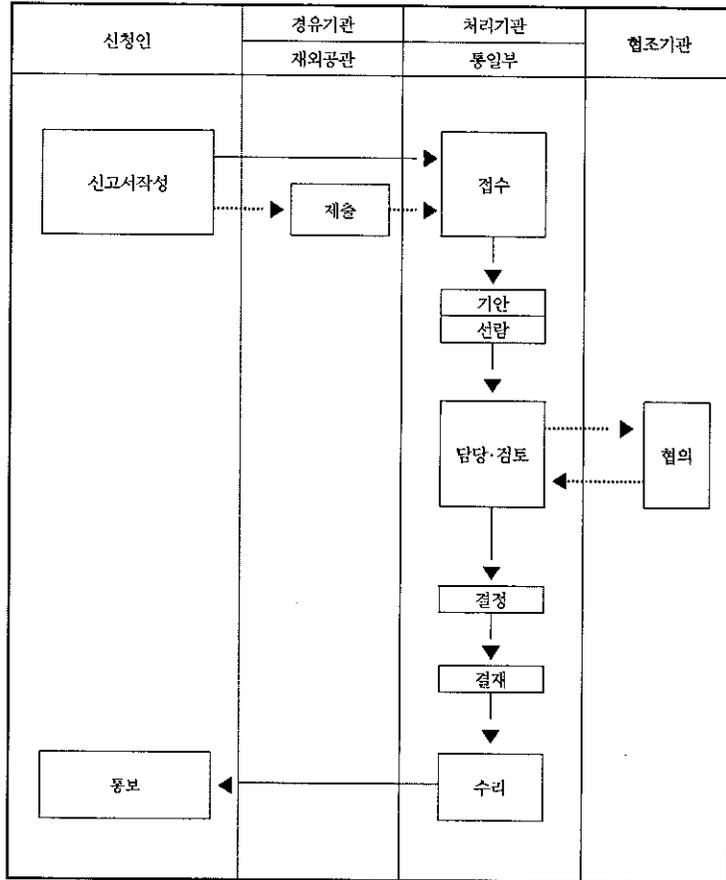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접촉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				
	소속 및 직위	(전화 : )				
② 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③ 접촉 목적						
④ 접촉 경위 (접촉일선 및 증개인 포함)						
⑤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⑥ 접촉 방법						
⑦ 접촉 경험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뒷 면)

※ 첨부서류

1. 북한주민 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수리 번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① 접촉인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② 접촉 대상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③ 접 촉 목 적		
④ 접촉 기간 및 장소		
⑤ 접 촉 방 법		
⑥ 수 리 조 건		
⑦ 수 리 유효 기 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위와 같이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북한주민접촉신고인 인적사항

[별지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① 접촉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연락처	(전화: )			
	소속 및 직위	(전화: )			
② 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고인과의 관계
③ 접촉 목적					
④ 접촉 경 위 (접촉일선 및 중개인 포함)					
⑤ 접촉일시 및 장소					
⑥ 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⑧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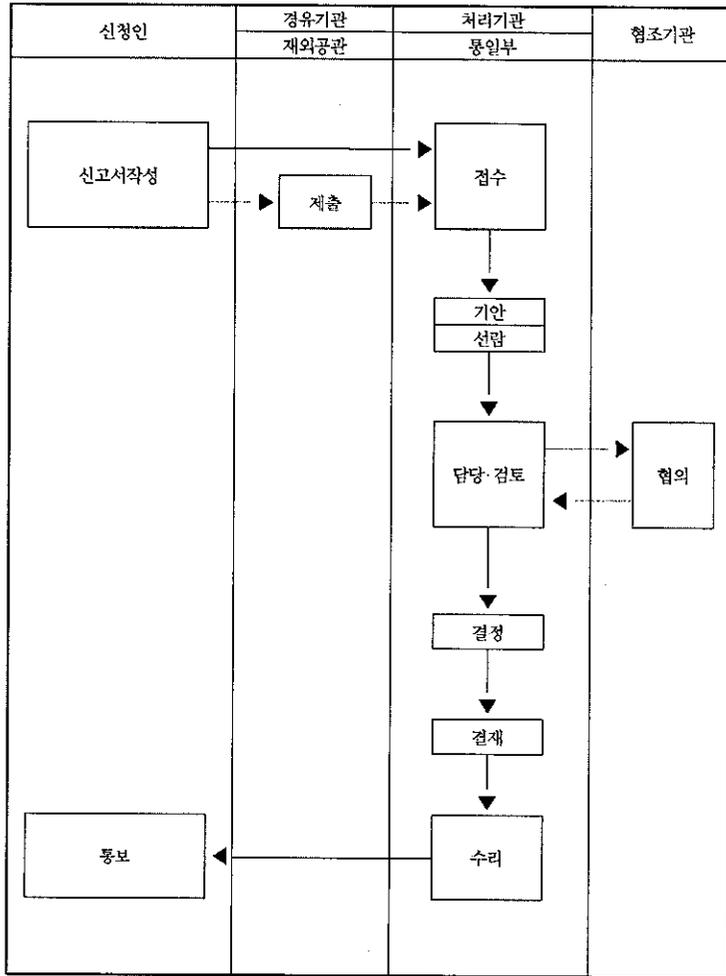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접촉인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		성 별
	접촉신고 수리 날짜 및 수리 번호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소·연락처	(전화: )		
② 연 장 기 간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③ 연 장 사 유				
④ 북한주민 접촉경과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사업추진에 수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사업추진 경과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몇 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 출입신고서

- 깨끗하고 바르게 죄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거주지 주소·전화번호	직업·직장명	
방문지 주소·전화번호		
방문목적	출발지(탐승편명) ( )	
방문예정기간	서명	
공용란	심사인	

80mm×118mm 일반용지(OCR급) 105g/m<sup>2</sup>(특급)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반출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⑦ 구 매 자		
			⑧ 거래형태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⑨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추신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 반출 목적					
④ 원 산 지		⑩ 금 액			
⑤ 선 적 항		⑪ 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		⑫ 가 격 조 건			
⑬ HSK번호	⑭ 품 명 및 규 격	⑮ 단 위 및 수 량	⑯ 단 가	⑰ 금 액	
⑱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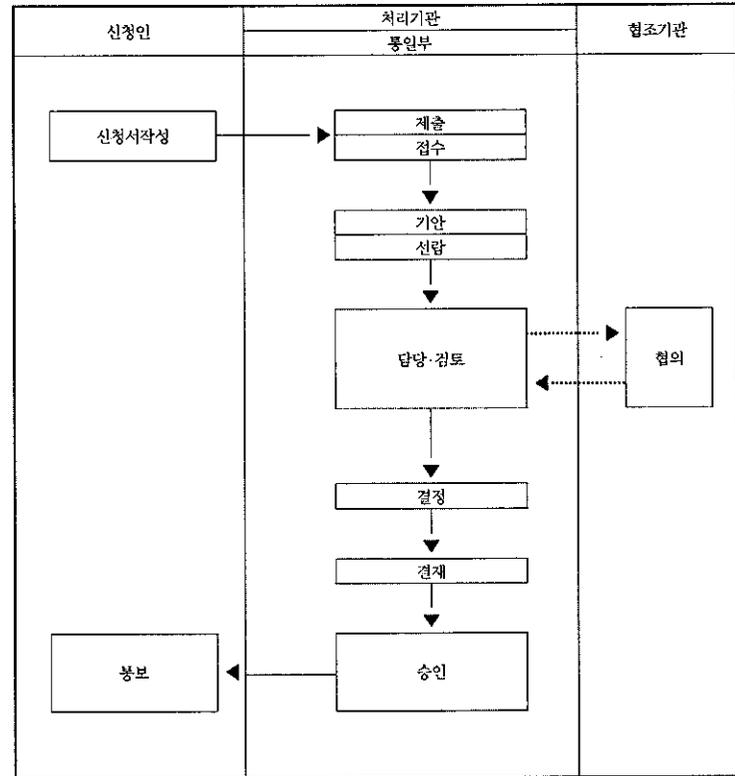
210mm×27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 계획서
2. 북한측 상대방과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방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반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⑥ 공급자		
			⑦ 거래형태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⑧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 반입 목적		⑨ 금 액			
④ 원산지		⑩ 결제기간			
⑤ 산지항		⑪ 가격조건			
⑫ HSK번호	⑬ 품명 및 규격	⑭ 단위 및 수량	⑮ 단가	⑯ 금액	
⑰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 공제통합공목분류표에 따른 공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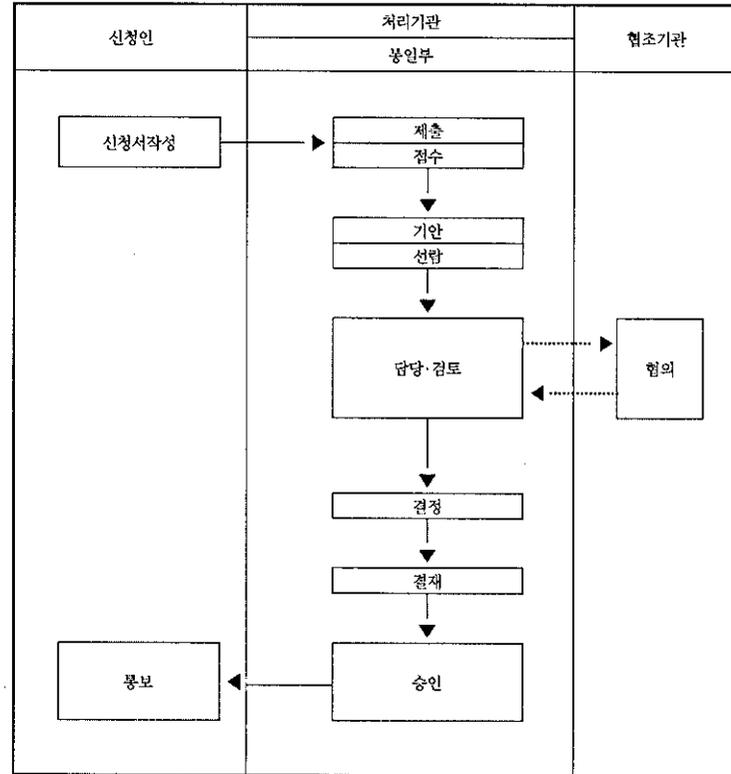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반출입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⑨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 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반 출	금 액	
			결제기간	
③ 반출입 목적		반 입	가격조건	
④ 계약상대방			⑩ 거래형태	
구 분	반 출	반 입	대금결제방법 : 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⑤ 원 산 지			금 액	
⑥ 선 적 항			결제기간	
⑦ 도 착 항			가격조건	
⑪ 반출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 명 및 규 격	단 위 및 수 량	단 가	금 액
⑫ 반입물품의 명세				
HSK번호	품 명 및 규 격	단 위 및 수 량	단 가	금 액
⑬ 유효기간				
반출 :		반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동의 반출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세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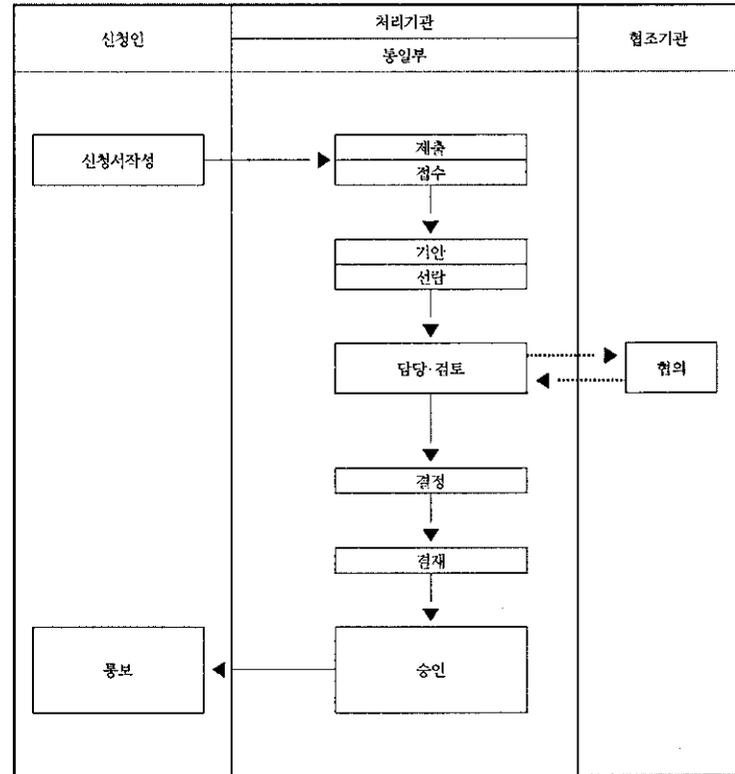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kg/m<sup>2</sup>(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방과의 반출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방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통품동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반출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FAX	이동전화		
	E-mail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반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반 입 경 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 해당시	
판매방법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등	천\$	
		- ○○년 :	중	천\$	
		- ○○년 :	중	천\$	
		- ○○년 :	중	천\$	
	반출	- ○○년 :	중	천\$	
		- ○○년 :	중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 메 일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대한민국 통일부  
통일관리국

[별지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반출 예정일			
실제 반출자			
반입 예정일			
실제 반입자			
반입 경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개3국 경유 사유)			○ 해당시
대북한 교역신적 (최근 5년간)	반입	- ○○년 :	동 천\$
		- ○○년 :	중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반출	- ○○년 :	동 천\$
		- ○○년 :	중 천\$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년 :	동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성 명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 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신고수리번호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성 명	전 화	
	팩 스	이동전화	
	이 메 일		
그 밖의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알 려)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 역 업 고유번호	② 변경 전 승인일자
		③ 변경 전 승인번호
④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승인유효기간		
「남북교류협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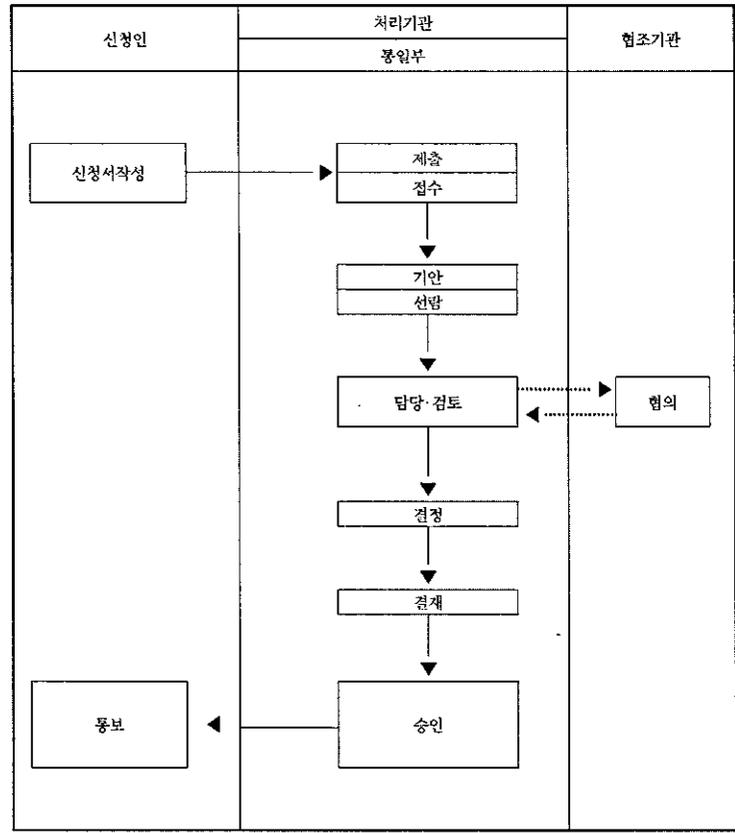


(뒷 면)

※ 첨부서류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방과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방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승인번호	반출 승인서			
① 반출지(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⑦ 구매자		
		⑧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 송금환( ) 추신어음( ) 기 타( )		
③ 반출 목적				
④ 원산지		금 액		
⑤ 선적항		결제기간		
⑥ 도착항		⑨ 가격조건		
⑩ HSK번호	⑪ 품명 및 규격	⑫ 단위 및 수량	⑬ 단가	⑭ 금액
⑮ 승인 조건				
⑯ 승인 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통일부장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승인번호		반입 승인서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⑥ 공급자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③ 반입목적		금 액				
④ 원산지		결제기간				
⑤ 선적항		⑧ 가격조건				
⑨ HSK번호	⑩ 품명 및 규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가	⑬ 금액		
⑭ 승인 조건						
⑮ 승인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210mm×297mm(일반용지60g/m'(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승인번호		반출입 승인 신청서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⑨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인)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③ 반출입 목적		금 액				
④ 계약상대방		결제기간				
구분	반출	반입	⑩ 가격조건			
⑤ 원산지			⑪ 결제조건			
⑥ 선적항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⑦ 도착항			금 액			
반출물품의 명세		결제기간				
⑬ HSK번호	⑭ 품명 및 규격	⑮ 단위 및 수량	⑯ 단가	⑰ 금액		
반입물품의 명세						
⑱ HSK번호	⑲ 품명 및 규격	⑳ 단위 및 수량	㉑ 단가	㉒ 금액		
㉓ 승인 조건						
㉔ 승인유효기간						
반출 :			반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210mm×297mm(일반용지60g/m'(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승인번호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인)	무역업 고유번호	② 변경 전 승인일자	
		③ 변경 전 승인번호	
④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승 인 조 건			
⑥ 승인유효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 조정명령 이유	
④ 조정명령 기간	
⑤ 위반시 제재조치	
⑥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반출 결과보고서						
① 반출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출품 상세내역						
② 반출품	품명	상표	수량	사양 및 규격	제조사	
거래 정보						
③ 북한내 사용회사		사용회사 소재지		사용회사 소속		
						④ 반출품 사용처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⑤ 북한교역당사자
⑥ 중개상명		소재지				
⑦ 수송경로	직재항	경유항	도착항		도착지(북한내)	
⑧ 대금결제 현황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물물교환		<input type="checkbox"/> 송금환	
	수령액	\$	품명	수량	단가	발송인 (수령액 \$)
특 이 사 항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반출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반입 결과보고서						
① 반입자 관련 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입품 상세내역						
② 반입품	품명	상표		수량		
	북한내 생산단위(공장·농장등)		생산단위 소재지		생산단위 소속	
거래 정보						
③ 북한교역당사자			④ 원산지증명번호			
⑤ 중개상명			소재지			
⑥ 수송경로	출발지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		
⑦ 대금결제 현 황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신용장		<input type="checkbox"/> 송금환	
	지급액	\$	신용장번호		결제계좌번호 (수취인), 송금액(\$)	
유통 정보						
⑧ 유통방식 <input type="checkbox"/> 자기판매 <input type="checkbox"/> 도매상판매 <input type="checkbox"/> 소매상판매 <input type="checkbox"/> 실수요자납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⑨ 판매처						
판매처명	소재지	납품가	중량	총액		
특 이 사 항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반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반출입 결과보고서					
① 반출입자 관련사항	상 호			무역업고유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출입품 상세내역					
②반출입품	품명	상표	수량	사양 및 규격	제조사
거 래 정 보					
③북한내 사용회사	사용회사 소재지		사용회사 소속		
④반출입품 사용처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반출입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협력사업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상 대 자	상 호 (법 인 명)		소 속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명기
	사업내용 및 규모 (투자금액, 근로자수 포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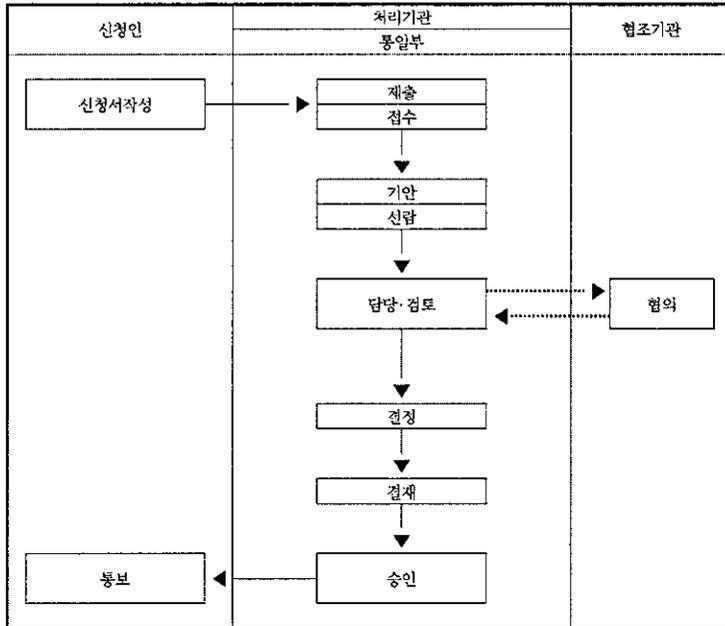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직사항(신청인이 범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li> <li>2. 협력사업 계획서</li> <li>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의서</li> <li>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li> <li>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li> <li>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li> <li>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li> <li>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li> </ul>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변경전 승 인 사 항	승인 일자		승 인 번 호	
③변경 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li> <li>* 업종변경 시에는 변경 전 업종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li> <li>* 업종변경 시에는 변경 후 업종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li> </ul>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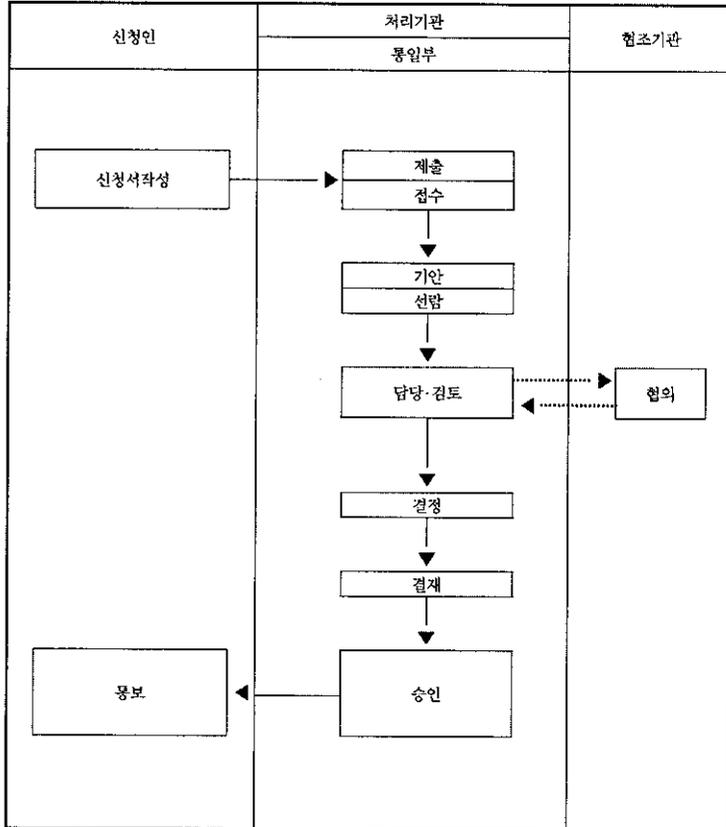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승인번호		협력사업 승인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② 상대자	상 호 (법 인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③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투자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 승인 조건			
⑤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별지 제32호서식]

승인번호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변경전 승 인 사 항	승인 일자	승인번호		
③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 승인 조건				
⑤ 유효 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div>				
통일부장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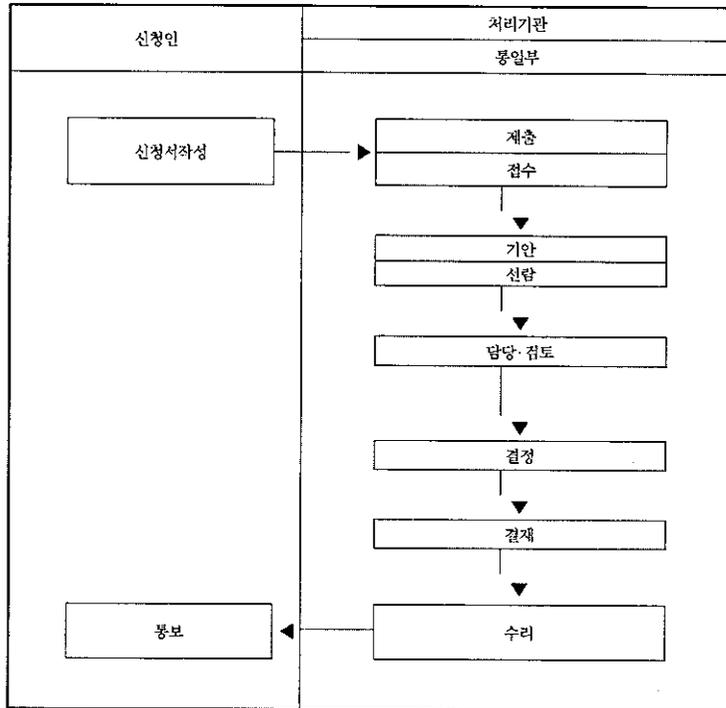
협력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상 대 자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법 인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③ 사 업 개 요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명기		
	사업 내용 및 규모 (투자금액, 근로자수 포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력 사업을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div>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합니다)</li> <li>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li> <li>3. 협력사업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li> <li>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등기부 등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확인합니다)</li> </ul>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앞 면)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변경전 신 고 사 항	신 고 일 자	신 고 번 호		
	업종별 누적 투 자 금 액			
③변경 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작성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li> <li>※ 업종변경시에는 변경 전 업종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li> <li>※ 업종변경시에는 변경 후 업종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 명기</li> </ul>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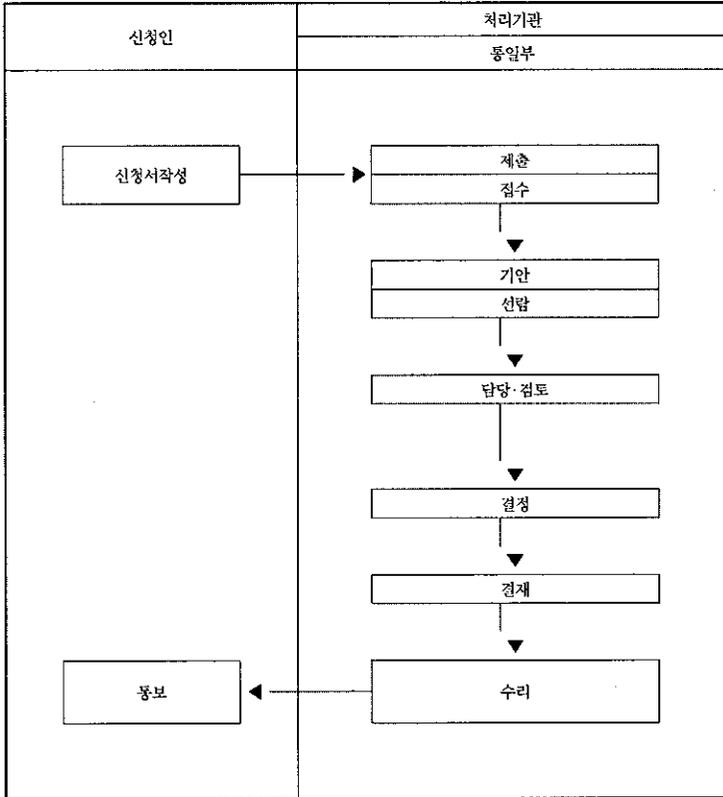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뒷면)

※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수리번호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① 신청인	상 호 명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② 상 대 자	상 호 명 (법 인 명)	소 속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③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 드 번 호	
	사업내용 및 투자 규모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④ 수리 조건			
⑤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수리번호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① 신청인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변경전 수 리 사 항	수 리 일 자	수 리 번 호	
③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④ 수리 조건			
⑤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③ 조정명령 이유	
④ 조정명령 기간	
⑤ 위반시 제재조치	
⑥ 기타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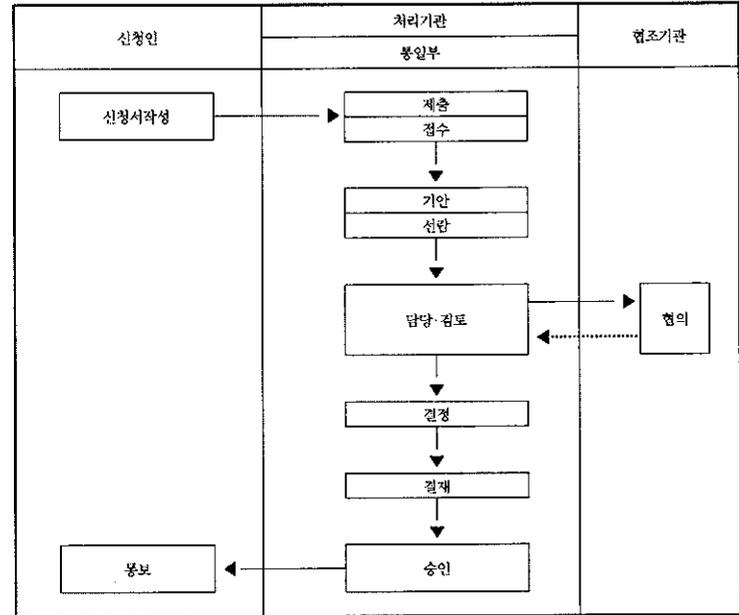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수송장비 제원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료 차종 기종)	선박선적 및 총본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운항 목적						
④운항 용도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⑤운항 기간						
⑥운항 노선						
⑦운항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60g/n<sup>2</sup>(재활용품))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아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선박착중서(「선박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착중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앞 면)

<b>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b>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② 변경 전 승인사항	승인 일자		승인번호	
③ 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십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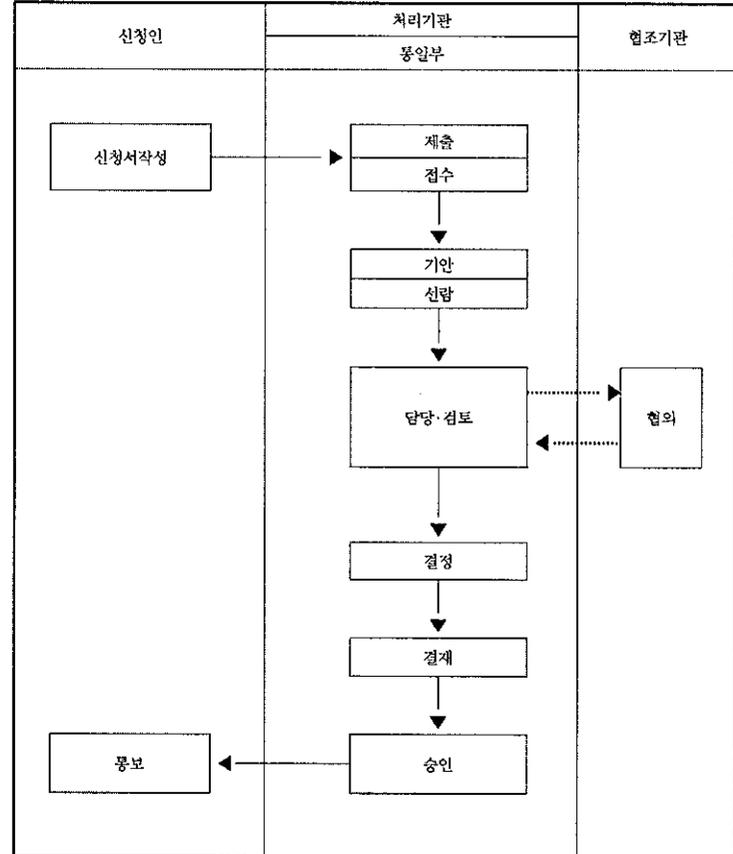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제할용품))

(뒷 면)

※ 첨부서류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은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별지 제40호서식]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수송장비 제원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수송장비 기종	선박선적 및 총톤수	승무원(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여객수)		
③ 운항 목적							
④ 운항 용도 <input type="checkbox"/> 자가용 <input type="checkbox"/> 사업용 (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⑤ 운항 승인 유효기간							
⑥ 운항 노선							
⑦ 운항 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⑧ 승인 조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승인번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①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② 승인사항	승인 일자			승인 번호	
③ 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작성합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④ 승인 조건					
⑤ 운항 승인 유효 기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변경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별지 제42호서식]

###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승인번호	상호(법인명)	수송장비 종류 및 명칭	운행기간	운행노선	적재량 (여객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진  
(2.5×3cm)

김 ○ ○

위 사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직인

55mm×85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위 사람은 시설의 운영상황, 사무소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에 따른 직무권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4호서식]

### 조사 계획서

귀하  
주 소  
제 호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장소	
조사의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법적 근거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그 밖의 안내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화: , e-mail: )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 영치 조서

영치 일자		영치 장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영치 목적			
영치 물건 (품명·수량)			
근거 법령			
영치물 반환 시기			
그 밖의 안내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원	○○○ (서명 또는 날인)
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II . 남북한 왕래

---



## Ⅱ-1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 (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 (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 (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6.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6조 (물품의 보관)** 반출·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 (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 개정규정은 「식품  
위생법」 개정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Ⅱ-2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제42조, 제43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라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3조 (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남북한왕래자 세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남북한왕래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3. 1일 수회 출입경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이하 “현지기업 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으로 별표3의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이하 “확인표”라 한다)를 입경시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

**제3조의2 (세관 성실신고자)** ①세관장은 현지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 중 수시북한방문자에 대하여 과거 휴대품통관 실적 및 관세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이하 “세관 성실신고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 현지기업 등은 별지 제4호의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 성실신고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표3의 확인표를 발급하고, 세관 성실신고자는 복수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세관 성실신고자가 관세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세관 성실신고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세관 성실신고자 및 현지기업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확인표의 위조·변조·양도·대여 금지

2. 현지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또는 세관과 공동으로 휴대품 통관 제도에 대해 소속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홍보 및 교육 실시

**제4조 (신고대상물품)**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



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견본품 등 화사용품
4.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6.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8. 양속·아편·코카엽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9. 동물(고기·가죽·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용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

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1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 물품

②당해연도에 5회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왕래자가 제7조제1항의 입경횟수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을 경우 이를 휴대품신고서에 표시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휴대품 검사)** ①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장 휴대품 통관

**제6조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①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에 대하여는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고시를 적용한다.

**제7조 (남북한왕래자 1인당 면제금액 등)** ①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1인당 US\$300을 면제하되, 당해연도 4회차 입경까지 허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빈번입경자에 대해 당해연도 면세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 4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

②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8조 (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다음 각호에 계기된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1병(1리터 이하)

2. 담배: 쉐련 200개비, 엽쉐련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람

3. 향수: 60ml

4. 농림축수산물·한약재: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7조를 준용한다.

②세관장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반출입 규제물품)**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물품 (별표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다만, [별표1] 가. 1)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해당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통보한 목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목록에 없는 물품의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반출·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 (별표2)
2. <05.6.3 삭제>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약사법에 의한 규제물품
4. 기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 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③<05.6.3 삭제>

**제10 조 (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유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남북한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9조에서 규정한 반·출입 규제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계기된 물품의 통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에 계기된 물품은 제11조에 의해 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에 계기된 물품 중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4. 제1항제3호에 계기된 물품 중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득한 후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 조 (반출입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제7조제1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②<05.5. 삭제>

**제 4 장 출경절차**

**제12 조 (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 반출하는 물품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 수단 등
4.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제13 조 (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은 출경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경하는 때에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에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휴대반출하여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승무원 휴대품 및 체류물품의 인정범위 등

**제 14 조 (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체류물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제1호 개정규정은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2005.6.3 삭제>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 반출·반입 제한물품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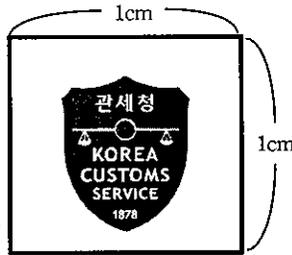


다  
보  
의  
안  
리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닌 물품

[별표 3]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



[별지 제1호 서식]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

(앞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방문증번호	방문기간
국적	면명
방문목적	<input type="checkbox"/> 관광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공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소	
연락처 ( )	
* 한 가족(직계)당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 (동반가족수 명)	

세관 신고 사항

\*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된 □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 1. 국한 운전, 국가 인보·공안·공속을 해할 물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 유류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성 또는 방사성 물질   |                          |                          |
| 3. 이판·헤로인·코카인·히로폰·MLMA·대마 등 마약류 및 실험용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의약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동·식물, 과일채소류 등 식물 또는 그 재료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열중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호랑이, 코برا, 거북, 악어, 산호, 옹달, 사향 등)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물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8. 미화민권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9.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긴급수리물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0.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한 물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1.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2.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출결서 신고한 통일부장관이 공고한 시제품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3. 기타 신고여부에 의문이 있는 물품이나 사항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이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뒷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세관 신고 안내 사항

\* 모든 입경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 휴대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포, 도검, 화약류, 방사성 또는 유독성 물질 등 테러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신고 및 신분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물품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성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고, 신고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입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관하고 휴대품 유치서를 교부해드리며, 관련요금 등을 갖추면 면세 또는 과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통일부장관이 공고(2017.10)한 시제품 중 일정가격 기준(주류 및 화장품은 30만원, 가죽 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 광학기기, 악기 등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출결경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관련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방북시 반송할 수 있으나,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관세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됩니다.

◇ 휴대품 면세허용범위

- ◇ 북한에서 취득/구매한 것으로서 1회당 합계액 US\$300 이하인 물품(연도별 제한 인정)  
\* 단, 농림축수산물, 한약 및 한약재는 총 구입금액 10만원 이내이며 수량(중량)제한이 없습니다.
- ◇ 종류에 관계없이 주류 1병(1ℓ 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60ml)이하로서 1병)  
(단, 1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 ◇ 북한산 물품에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 부과하며, 외국산 물품에는 관세를 포함한 세세를 부과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  
CERTIFICATE OF CUSTOMS CUSTODY

성명 Name		신고번호 Declaration No	
주민등록번호 Residence No		TAG 번호 Tag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중량 Weight	
전화번호 Telephone		기(선)명 Flt/Ship No	
주소 Address		입항일 Arrival Date	
입국회수 No of visits		수리일 Permit Date	

순위 No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of Articles	수량 Quantity	세번번호 HS Code	주세율 Liquor Tax Rate 주세 Liquor Tax	(기타세목) Other Taxes 가산세 Penalty Tax	비고 Remark (면세부호) (Duty Free Code)
		단위 Unit	과세가격 Customs Value	특별소비세율 Special Excise Tax Rate 특별소비세 Special Excise Tax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평가방법 Evaluation Method	관세율 Duty Rate 관세 Customs Duty	교육세율 Education Tax Rate 교육세 Educational Tax	세액계 Total	
1				% W	% W	
2				% W	% W	
3				% W	% W	
4				% W	% W	
5				% W	% W	
계		합계 Total	과세가격 Customs Value			환율 Exchange rate

유치상품에 대한 봉인, 반송 및 보관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customs clearance, returning of goods and custody charge of items under custody, please refer to the back of this page.

세관 검사직원으로부터 편지에 있는 봉환, 반송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다.  
Instructions about clearance and returning of goods was given by customs inspector. (Traveler's Signature)

[별지 제3호 서식]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유의사항]

1. 미화 3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였다가 재반입한 경우에는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대반출신고한 물품의 제조번호가 세관에 전신등록되었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반출입할 경우에는 2회차부터 세관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통일부장관이 공고(09.7.10)한 사치품 중 일정가격 기준(주류 및 화장품은 30만원, 가죽·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광학기기, 약기 등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는 경우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세관에 기 신고한 물품이 아닌 새로운 물품을 휴대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제조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출경시마다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반입하는 때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No :

품명	규격	수량 또는 중량

위와 같이 반출함을 신고(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세관기재사항

반출확인자 : ○○세관 ○급 ○○○(서명)



국  
세  
관  
인  
민



## Ⅱ-3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

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					
① 접촉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 화 :                    )			
	소속 및 직위	(전 화 :                    )			
② 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③접 촉 목 적					
④접 촉 경 위 (접촉일시 및 중개인 포함)					
⑤접촉일정 및 장소					
⑥접 촉 방 법					
⑦접 촉 경 험 (3 년 이 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사후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첨부서류 : 사후접촉 신고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Ⅱ-4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 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여행경비

#### 가. 여행경비 지급한도

관광객은 매회 관광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광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기본경비 : 미화 1,000불 상당 이내
- 2) 기타경비 :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

#### 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관광객은 북한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관광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북한지역 관광사업자(동 사업자의 현지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관광선내의 환전영업자 설치인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영업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관광객에 대한 환전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영업자가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 경비지급 영수증」 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관광사업자의 관광비용 지급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6.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7. 기 타

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등 북한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0·8·1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III. 교역 및 수송



Ⅲ-1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①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등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다만,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

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
  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포괄적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 ②물품등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물품등에 대한 그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 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통일부  
공표

- 2. 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등.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 (반출·반입 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2. 북한당국과의 협의
-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한도물량)** ①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

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305-30-1000	어류의 페렛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4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대게의 압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흰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브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7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압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흰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달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만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26	0404-10-1099	유장(기타)
27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8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외유(버터 이외)
29	0409-00-0000	천연꿀
30	0410-00-3000	로얄제리
31	0507-90-1110	녹용전자
32	0507-90-1190	녹용기타
33	0507-90-1200	늑다
34	0701-10-0000	감자(종자용)
3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6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7	0703-20-1000	마늘/말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8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9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40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41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2	0710-80-2000	마늘(냉동)
43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4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5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6	0712-20-0000	양파(건조)
47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8	0712-90-1000	마늘(건조)
49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0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1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2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3	0714-20-1000	고구마(신선)
54	0714-20-2000	고구마(건조)
55	0714-20-3000	고구마(냉장)
56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냉동·고구마 이외)
57	0714-90-9090	서류(기타)
58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59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0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1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2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3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4	0810-90-3000	대추(신선)
65	0811-90-1000	냉동밤
66	0811-90-2000	냉동대추
67	0811-90-3000	냉동잣
68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69	0813-40-2000	대추(건조)
70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1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2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
73	0910-10-2000	생강(건조)
74	0910-10-9000	생강(기타)
75	1003-00-9010	검보리



고려 무역공사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종 명
76	1003-00-9020	쌀보리
77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78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7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0	1005-90-2000	옥수수(팥콘용)
81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팥콘용 이외)
82	1006-10-0000	벼
83	1006-20-1000	메현미
84	1006-20-2000	찰현미
85	1006-30-1000	말쌀
86	1006-30-2000	잡쌀
87	1006-40-0000	채미
88	1007-00-1000	수수(종자용)
89	1008-10-0000	메밀
90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1	1102-90-1000	보리가루
92	1102-90-2000	쌀가루
93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4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5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6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7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8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0	1103-20-1000	밀(펠리트)
101	1103-20-2000	쌀(펠리트)
102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3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4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5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6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08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09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0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1	1104-29-1000	윤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2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4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종 명
115	1108-11-0000	밀 절분
116	1108-12-1000	옥수수 절분(식품용)
117	1108-12-9000	옥수수 절분(기타)
118	1108-13-0000	감자 절분
119	1108-14-1000	메니옥 절분(식품용)
120	1108-14-9000	메니옥 절분(기타)
121	1108-19-1000	고구마 절분
122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메니옥·고구마 이외)
123	1108-20-0000	이눌린
124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5	1201-00-1020	대두(사료용)
126	1201-00-9010	대두(광·나물용)
127	1201-00-9090	대두(기타)
128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29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0	1207-40-0000	참깨
131	1207-99-1000	들깨
132	1211-20-1100	수삼
133	1211-20-1210	백삼(분삼)
134	1211-20-1220	백삼(미삼)
135	1211-20-1240	백삼(잡삼)
136	1211-20-1310	홍삼(론삼)
137	1211-20-1320	홍삼(미삼)
138	1211-20-1330	홍삼(잡삼)
139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0	1211-20-2210	홍삼분
141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2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3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4	1211-20-9200	인삼종자
145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6	1213-00-0000	곡물의 껍과 껍질(벧짚에 한함)
147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8	1214-90-9000	기타 사료용 식물(알갈파 메일 이외)
149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50	1302-19-1210	홍삼엑스
151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2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3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4	1605-90-9010	조미요징어
155	1702-11-1000	유당
156	1702-19-1000	기타 유당
157	1702-90-1000	인조꿀
158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9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0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1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2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3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4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5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6	1902-19-2000	당면
167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8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9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0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71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2	2103-90-1030	고추장
173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4	2103-90-9040	메주
175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76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7	2106-90-3021	홍삼차
178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79	2106-90-9091	로얄제라, 벌꿀 조제품의 것
180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1	3505-10-3000	베소전분
182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83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184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85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6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87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188	3505-20-1000	전분 글루
189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90	3505-20-9000	기타 글루



Ⅲ-2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제2조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결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전략물자로 본다.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전략물자의 반출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준용규정)**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①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①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 (반출승인신청)** ①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교역의 경우에 한하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도적대북지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6.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해당 전략물자의 취급시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전략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 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



- 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 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 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 1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

- 1. 반출품등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 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 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
- 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 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및 재반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반출승인사항의 변경)** ①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출승인의 취소)** ①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출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류의 보관)** 반출자는 반출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개발된 전자적관리체계(남북교류협력시스템)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①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리기간 15일

1. 반출자	무역업고유번호	* 반출승인 신청자								
	상 호									
	주 소									
2. 반출자의 실부 담당자	대표자 성명			연락처						
	성 명			전 화						
	FAX			휴대폰						
	E-mail									
3. 위탁자	사업의 종류	교역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당사자								
	상 호	* 1과 같을 경우 "반출자와 동일" 로 기재								
	주 소									
4. 제조자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상 호	* 반출 전략물자의 제조자								
	주 소									
5. 반입자	성 명			연락처						
	상 호									
	주 소									
6. 최종수하인	성 명			연락처						
	상 호	* 5와 같을 경우 "반입자와 동일" 로 기재								
	주 소									
7. 최종사용자	성 명			연락처						
	상 호	* 6과 같을 경우 "최종수하인과 동일" 로 기재								
	주 소	* 최종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제출" 로 기재, 별지에 일련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8. 최종사용용도										
	9. 반출계약서 또는 품증내도화양서 번호(교역) 협력사업승인번호(협력사업) 또는 지원사업번호(지원사업)									
10. 허가신청사유 (해당란에 체크)	반출 <input type="checkbox"/>									
	재반출 <input type="checkbox"/>	수입목적확인서 번호								
	이반입 전락 <input type="checkbox"/>	발급일자								
	본자의 반출	수입목적확인서 번호								
11. 원산지	발급일자					12. 출발지		13. 도착지		
14.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input type="checkbox"/>		추심어음 <input type="checkbox"/>		송금환 <input type="checkbox"/>		청산결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금 액				결제기간					
15. 가격조건										
16. 연번	17. HS 코드	18. 전략물자 통제번호	19. 품명	20. 규격	21. 단위	22. 수량	23. 단가(K\$)	24. 금액(S\$)	25. 소모성 여부	
대국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 . . .										



25. 승인번호	27. 승인유효기간
28. 승인조건	
29. 기타	
제5항의 반입자, 제6항의 최종수하인 또는 제7항의 최종사용자가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승인받은 전략물자를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전략물자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20 . . . . . 통일부 장관 <span style="float: right;">㉞</span>	

[별지 제2호 서식]

### 전략물자반출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반출입자	무역업고유번호		* 반출입승인 신청자								
	상 호										
	주 소										
2. 반출입자의 실무 담당자	대표자 성명				전 화						
	성 명				전 화						
	FAX				휴대폰						
	E-mail										
3. 위탁자	사업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교역 <input type="checkbox"/> 협력사업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1과 같음 경우 "반출자와 동일"로 기재								
	주 소										
4. 제조자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상 호		* 반출 전략물자의 제조자								
	주 소										
5. 수하인	성 명				연락처						
	상 호		* 1과 같음 경우 "반출입자와 동일"로 기재								
	주 소										
6. 최종사용자	성 명				연락처						
	상 호		* 5와 같음 경우 "수하인과 동일"로 기재								
	주 소		* 최종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제출"로 기재, 별지에 인련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성 명				연락처							
7. 최종사용용도											
8. 반출계약서 또는 상품개도화약서 번호(교역) 협력사업승인번호(협력사업) 또는 지원사업번호(지원사업)											
9. 원산지											
반출 반입		10. 출발지				11. 도착지					
12. 연번	13. HS 코드	14. 전략물자 통제번호	15. 품명	16. 규격	17. 단위	18. 수량	19. 단가(\$)	20. 금액(\$)	21. 소모성 여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20 . . . . . ㉞											
25. 승인번호		27. 승인유효기간									
28. 승인조건											
29. 기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의 반출입을 승인합니다. 통일부 장관 20 . . . . . ㉞											

[별지 제3호 서식]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① 물품명	② 모델 및 형식	
③ 용도		
④ 전략물자 분류번호	⑤ 전략물자의 기술수준	⑥ 신청품목의 기술수준

[별지 제4호 서식]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1. 승인번호	2. 변경차수	3. 유효기간	
4. 반출자	무역업등록번호	* 반출승인 신청자	
	상 호		
	주 소		
5. 반출자의 실무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성 명	전 화	
	FAX	휴대폰	
	E-mail		
6. 변경사유			
7.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승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 . . 신청인 인			
8. 변경승인 조건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변경을 합니다. 20 . . . . . 통일부장관 인			



통  
일  
부  
장  
관

[별지 제5호 서식] 전락물자반출결과보고서

1. 승인번호																		
2. 보고자 (반출자)	무역업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봉관일	...			4. 도착항				5. 도착일				...						
6. 반입자	상 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7. 최종수하인	상 호		※ 5와 같을 경우 "5와 동"으로 기재															
	주 소																	
	성 명		연락처															
8. 최종사용자	상 호		※ 6와 같을 경우 "6과 동"으로 기재															
	주 소		※ 최종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제출"로 기재, 별지에 일련 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성 명		연락처															
9. 연번	10. HS 코드	11. 전락물자 통제번호	12. 품명	13. 규격	14. 단위	15. 수량	16. 단가	17. 금액	18. 소모성									
19. 특이사항																		
<p>대북 전락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락물자 반출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장관 귀하</p>																		

Ⅲ-3

개성공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 개성공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 (반출신청 및 승인)** ①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 2 (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 3 (반출 및 반입 보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반출자 의무)** ①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기관의 관리)** ①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



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일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시 조치사항)** ①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지구에 반출된 컴퓨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반출된 컴퓨터로 본다.

②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통일부장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Ⅲ-4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 ①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④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원산지 판정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절차)** ①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8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제5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
2.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제9조 (원산지 확인기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

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제 10 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 11 조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①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국내에서 공급한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2.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국내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②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실무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대표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 13 조 (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증명서</b> CERTIFICATE OF ORIGIN</p>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 (Other information)		상기제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발급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 인 Stamp ○</p>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 이 양식은 남북교역물품용임.

210mm\*297mm

\* 복축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증명서**

번호 \_\_\_\_\_  
 날 자   주체       년   월   일  
 (2004)

판   매   자 \_\_\_\_\_  
 구   매   자 \_\_\_\_\_  
 품            명 \_\_\_\_\_  
 수   량   /   중   량 \_\_\_\_\_  
 포   장   /   표   식 \_\_\_\_\_  
 제   품   생   산   자 \_\_\_\_\_  
 제   품   생   산   장   소 \_\_\_\_\_  
 수   송   수   단 \_\_\_\_\_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발급장소 :

Ⅲ-5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3)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 (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5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해당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내국세 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육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 (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에 따라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을 법 제35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해당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물품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반출승인 또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승인, 추천 또는 그 밖에조건외의 구비를 요하는 남북교역 물품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 (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준용)**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일반 규정을 따른다.

### 제 3 장 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 13 조 (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반입신고 시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 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이하 “민경련”이라 한다)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 14 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는 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 15 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관세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

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간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①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에 정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발급기관장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장은 15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간내에 확인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에 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에 따른 통보일자는 당초 보고시한으로부터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⑥관세청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원산지인정 배제)** 원산지확인 등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의 반출자·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 18 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그 밖에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제 4 장 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 19 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그 밖에 발급기관장이 원산지확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22조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기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와 재발급표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 기 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기 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재발급** 2003.10.10)

⑦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은 최초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⑧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그 밖에 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이외에 그 밖에 발급기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발급기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0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제 5 장 원산지확인기준

**제22조 (원산지확인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해당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기

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7. 그 밖에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제 23 조 (원산지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남한 또는 북한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해당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원산지확인 세부기준 운영)** 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확인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5 조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 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 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 26 조 (조사의회)**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법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 27 조 (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 (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법칙 등의 조사의회(즉시)
2. 그 밖에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 29 조 (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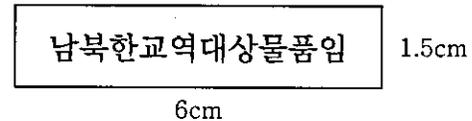
**제 30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20>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중전 고시의 폐지)** 중전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031호, 2003.9.25)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고시 제11조 관련)



필요하면  
→

(별지 제1호 서식) <고시 제20조제1항 관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 반출신고번호(신고수리일) : \_\_\_\_\_
2. 송하인(상호,주소,국가) : \_\_\_\_\_
3. 수하인(상호,주소,국가) : \_\_\_\_\_
4. 생산자(상호,주소,국가) : \_\_\_\_\_
5. 생산장소 : \_\_\_\_\_
6. 운송수단, 경로 및 선적일 : \_\_\_\_\_
7. 반출물품 내역

연번	HS번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품 명	수 량	총중량

8. 원산지 기준(해당란에 ○로 표시할 것)

- 완전생산 기준 ( )
  - 생산지역(설박명, 제조·가공내용) : \_\_\_\_\_
- 실질변형 기준 ( )
  - 사용원재료 내역

연번	HS번호	품 명 · 규 격	수 량	원산지	수입신고번호

\* 국내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 구입원재료 내역기재

-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공구, 포장용품 ( )
  - 제작사 국적(기계·기구·차량 및 내용품 등 원산지) : \_\_\_\_\_

붙임 : 원산지기준 증명자료(생산입증자료, 수입신고필증, 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상기물품에 대하여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고시 제20조제2항 관련>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b>원산지증명서</b>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5. 품제사용 For official use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 (Other information)	
		상기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확 인 인 Stamp ○	

\* 이 양식은 남북교역물품용임.

210mm×297mm

(별지 제3호 서식)<고시 제20조제3항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급번호	신청인	수하인	생산자	품명	수량	중량	비고

\* 발급번호 : 세관부호(또는 상공회의소 부호) - 연도(4자리) - 인련번호

(별지 제4호 서식)<고시 제20조제4항 관련>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발급일자 :
- 발급번호 :
- 재발급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남북교역물품 풍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기 발급 신청정보관용 원산지증명서 1부(제출이 가능한 경우)
- 2. 기 발급 신청시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관련서류

200 . . . . .

신청인 : (인)

○ ○ 세 관 장 귀하

고역 및 수송



Ⅲ-6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 칙

**제1-0-1 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 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로부터 반입한 물품(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장치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통관역”이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8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철도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당해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역을 말한다.
4. “통관장”이라 함은 법 제148조제4항에 의거 세관장이 도로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당해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관세통로”라 함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중에서 법 제148조제2항에 의거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6. “통행차량”이라 함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으로서 철도차량 및 도로차량을 말한다.

7.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8. “도로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활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제1-0-3 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업지구로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남북통관에 관한 다른 고시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공업지구반출입물품 통관

### 제1절 일반원칙

**제2-1-1 조 (관세 비과세)** ①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산인 경우 또는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산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공업지구와 남한간에 인원 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2 조 (내국세 과세)**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



이 부과·징수한다.

**제 2-1-3 조 (관세등 환급)**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구로 반출한 물품(이하 “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보아 당해 물품 또는 당해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반출되는 물품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일부를 공업지구 밖의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북한에 판매하였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공업지구세관으로부터 증명받아 환급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절 물품반출입 신고

**제 2-2-1 조 (반출·반입신고)** ①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제2항 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입신고건에 대하여

는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2 조 (신고의 시기)** ①공업지구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또는 보세구역장치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 2-2-3 조 (연속공급물품 반출신고)** 남측에서 전선이나 배관을 통해 공업지구에 연속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10일 이내에 당해 월 공급예정 수량을 반출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을 정정(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서식 사용)하여야 한다.

1. 전기
2. 가스
3. 용수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 2-2-4 조 (신고세관)** ①공업지구에서 통행차량으로 운송된 물품은 도라산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접경지세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반출물품은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2-2-5 조 (신고시 제출서류)** ①제2-2-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

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
  3. 화물운송장부분
  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원산지증명 관련서류
  7. 기타 세관장이 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제2-2-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신고서(수출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
  3. 반출승인서(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대상으로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함)
  4. 법 제226의 규정에 의한 반출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세관장이 반출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 거래내용, 운송방법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고인(반입자)은 임가공여부 통관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단위로 다음분기 첫째달 25일까지 세관장(수입통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 수리필증, 소요량증명관련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별지 제7호 서식 사용)
2. 자율소요량계산서(매분기별로 1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제2-2-6 조 (신고인)**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 및 또는 화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3절 검사 및 심사

**제2-3-1 조 (반입신고 물품의 검사)** ①세관장은 공업지구에서 위탁가공된 반입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가공 이외의 물품은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제출된 포장명세서에 포장(box)별, 품명, 규격(모델), 수량, 중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보완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2-3-2 조 (반입신고전 물품검사)** ①세관장은 반입물품의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안보위해물품·마약류·품명상이·수하인 또는 통지처



불분명·밀반입 등 감시 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반입신고전에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제1항에 규정의 의한 검사대상 선별, 검사 실시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관리대상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3 조 (반출신고 물품의 검사)** ①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건에 대하여는 현품일치 여부 및 타 물품 은닉여부 등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반출신고된 물품이 접경지에서 검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접경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환급·밀반출 등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3-4 조 (물품의 검사장소)** ①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세관장이 통행차량의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②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접경지세관에서 반출물품을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3-5 조 (검사시 입회)** ①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검사입회를 통보한 검사일시에 신고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신고인은 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을 세관검사공무원에게 검사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6 조 (통관심사)** ①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2-2-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서류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요건 구비 여부
4. 원산지확인 관련서류 구비여부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5. 반입승인서 구비여부
6. 기타 반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②반출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2-2-5조제2항에 규정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요건 구비 여부
4.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5. 반출승인서 구비여부
6. 기타 반출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③관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개성공단물품에 대한 반출·반입신고 수리 자료를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7 조 (신고필증의 교부)** ①세관장은 반출입신고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출입신고건이 전자서류에 의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이 관세사인 경우에는 신고수리필 고무인과 관세사 인장을 날인한 후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절 반송 및 반출 기간

**제2-4-1 조 (반송신고 요건)** 공업지구에서 반입된 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공업지구로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 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2 조 (반출기간)** 반출 또는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지구로 운행하는 통행차량에 적재하여 관세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3 조 (휴대반출확인)** 반출(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 반출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공무원에게 반출(반송)신고필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원산지

### 제1절 원산지 확인기준

**제3-1-1 조 (원산지 확인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



관세  
수리  
수속

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제3-1-2조 (원산지 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남한 또는 북한으로 본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포장용품과 내용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를 서로 달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3조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전시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1-4조 (원산지 세부기준 운영)** 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절 원산지 확인

**제 3-2-1 조 (원산지신고서 등 제출)**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서 개성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2-2 조 (원산지신고서 제출면제)** ①제3-2-1조 및 제3-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다만, 한 송하인이 같은 수하인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한 금액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용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6. 세관장이 이미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

②제3-3-3조의 규정에 의거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2-3 조 (원산지신고서 심사)** ①세관장은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3-1-1조부터 제3-1-4조까지 총측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2-4 조 (신고수리전 반출)** ①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신청 및 담보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3-2-5 조 (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3-1-1조부터 제3-1-4조까지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

2.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②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1조부터 제3-1-4조까지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

2. 제3-1-1조부터 제3-1-4조까지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남한인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

3. 제3-1-1조부터 제3-1-4조까지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③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 제 3 절 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

**제 3-3-1 조 (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물품 중 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제 3-3-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하 “일시반출입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남

한산으로 간주하며, 동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표시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공업지구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자분이 60%이상인 경우

2. 공업지구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제 3-3-2 조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출)** ①공업지구로 물품을 일시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3-3-1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임과 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작업예정기간”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반출입신고 내용이 적정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 3-3-3 조 (일시반출입물품의 반입)** ①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3-3-1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반입신고서 및 원산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일시반출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2-5조제2항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제3-3-4 조 (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 ①제3-2-1조 및 제3-3-3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3-2-1조, 제3-3-3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류에 준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4 장 공업지구 반출입 화물의 관리

### 제 1 절 적하목록 제출 및 화물관리

**제 4-1-1 조 (적하목록의 제출)** ①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 4-1-2 조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①제4-1-1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은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통관역장(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

합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 접경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혼재화물의 경우에는 법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을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3 조 (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담당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적하목록의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1-4 조 (반입물품 하차)** ①반입물품을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하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하차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에 하차장소(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보세구역외장치를 말한다)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차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 4-1-5 조 (보세구역 장치)** ①하차신고를 한 때에는 입경일 익일까지 접경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하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다

**제 4-1-6 조 (반입물품의 보세구역관리)**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이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통행차량에 의해 운송된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적재상태 장치포함)한 때에는 장치 즉시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물품을 출고하여야 하며, 출고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7 조 (반출물품 보세구역관리)**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에는 화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지역에서 접경지세관으로 보세운송된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보세구역장치신고로 같음한다.

③접경지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반출물품의 반출(반송)신고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절 보세운송

**제 4-2-1 조 (보세운송 승인)** ①반입물품을 개항·보세구역·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세관관서·통관역·통관장 또는 통관우체국간의 장소로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2 조 (보세운송물품 검사)** 접경지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 4-2-3 조 (보세운송 승인대상)** 접경지세관장은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

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승인할 수 있다.

1. 수출하기 위하여 공·항만으로 운송되는 물품
2. 보세공장·보세판매장·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으로 운송되는 물품
3.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4. 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5. 기타 접경지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통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 4-2-4 조 (담보제공)**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 관세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
2.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하는 화주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3.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인 경우

**제 4-2-5 조 (철도차량 운송물품)** 철도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철도화물을 통관역에서 다른 화차에 환적하지 아니하고 통관역 이남 철도역까지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절 컨테이너 확인

**제 4-3-1 조 (컨테이너 운송원칙)** 공업지구로의 반출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유개차 등 포함)로 운송하여야 한다.



1. 운송물자의 크기나 무게가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한 경우
2. 운송물자의 성질상 컨테이너 운송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3-2 조 (입경 컨테이너 확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세관장은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장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세관장은 제4-3-3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3-3 조 (출경 컨테이너 확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해서 통행차량이 접경지세관을 통과할 때에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②반출신고서류(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또는 적하목록을 포함한다) 우측하단에 개성공업지구 반출물품임을 표시한 고무인(별표 1)을 날인하고 반출신고서류 세관기재란 등 우측 여백에 운송차량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③물품을 적입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통행차량 출발허가서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 제 5 장 보 칙

**제 5-0-1 조 (범칙조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관세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 조사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조상표를 부착한 경우
2.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세관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반출입한 때
4. 원산지관련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때
6. 통행차량 출발증지·진행정지 명령 또는 차량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7.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 5-0-2 조 (준용규정)** ①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및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한다.

②공업지구이외의 지역에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제4-3-2조 및 제4-3-3조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0-3 조 (접경지세관장에 대한 위임사무)** 접경지세관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통관장 및 통관역, 보세구역 등에 대한 장비·인력 등의 배치·운영 및 통행차량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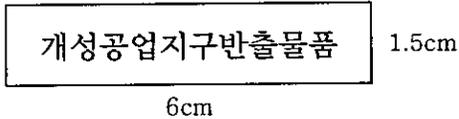
**제 5-0-4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08-2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성공업지구반출물품 표시 (제4-3-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성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제3-2-1조 관련)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							
1. 신고인			작성번호	- -			
상 호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2. 반입물품			작업기간 ( - )				
HS번호	품명	규격	원산지	수량(중량)	금액 (FOB\$)	부가가치 비율(%)	
3. 원재료 내역							
HS	품명	규격	원산지	수량 (중량)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4. 원산지 결정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주요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결정사유							
개성공업지구반출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2-1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200   년    월    일</span>							
신 고 인						(인)	
작성담당자 :						(서명)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령] (제3-2-1조 관련)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1. 신고인

- 작성번호란에는 업체명알파벳(4자리)-년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로 기록  
예) 대한상사의 경우 : DHSS - 05 - 00003
- 상호,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 연락가능 전화번호 기록

### 2. 반입물품

- 작업기간란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제품을 생산한 기간을 기재.
- 반입하는 제품의 HS, 품명, 규격, 원산지, 수량 및 개성공단 출고금액(FOBS)을 기재
- 작업기간은 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작업한 기간을 기재
- 부가가치비율에는 개성공단(북한)의 FOB가격대비 부가가치율을 기재

### 3. 원재료 내역

- 남한산, 북한산, 기타(제3국산) 원재료 순서로 기재하고 국가별로 합산하여 그 하단에 기재
- HS번호, 품명, 규격, 수량(중량), 단가(\$), 금액(\$)란에는 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내역을 기재
  - 단가, 가격(금액)은 북한 도착가격(CIF US\$)을 기준으로 함
- 비고란에는 반출신고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 합계란은 수량(중량) 및 금액(\$)의 합계만 기재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2.반입물품란도 같음)

### 4. 원산지 결정

- 원산지 결정기준 4종류 중 실제 적용된 기준에 (○)표시

### ○ 결정사유란 기재방법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주요공정 내용 기재
- 세번변경기준 : 주요 원재료세번과 완제품세번 기재
- 주요공정기준 : 원산국의 주요공정(국가명) 기재
-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 계산근거 기재

### 5. 신고인 및 작성담당자

- 신고인란에는 회사명판을 날인
- 작성담당자란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가 이름을 쓰고 서명



교역 및 수송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신고서 작성대장(제3-3-4조 관련)

### 원산지신고서 작성대장

원산지신고서 작성번호	작성일자	반입신고번호	HS	종명	규격	원산지	수량	금액 (FOBS)	비고

\* A4형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용

[별지 제4호 서식] 반입물품적하목록 (제4-1-1조제1항 관련)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반입물품적하목록 CARGO MANIFEST		1. 원본(PAGE NO)
3. 철도(운송회사)명		4. 열차번호(차량번호)		2. 적하목록 관리번호
7. 출발지		8. 도착지		5. 일경횟수
10. 열차번호 TRAIN NO		13. C수하인 (S: Simple, C: Consol, B: Breakdown)		6. 국적(열차, 차량)
11. UBL TYPE (S: Simple, C: Consol, B: Breakdown)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9. 도착일시
2차분류부 U: 원시(원상) R: 12 화물용 통장번호		15. 품명		16. 포장개수
				17. 총중량(KGS)
				18. 화물 종류
				19. 반입장소 (화차장소)
				20. 비고

3차\*25mm백상지 60kg/m<sup>3</sup>

[별지 제4-1호] 반입물품적하목록작성요령(제4-1-1조제1항 관련)

### 반입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가. 철도(도로)운항정보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 PAGE NO.	N. N.	3 3	M	서류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 배수별 일련번호 · 현재 페이지 번호 · 총 페이지 수(전체서류 배수)	21 OF 150 페이지번호 ↓ 체서류배수
2. 적하목록 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	AN	11	M	공통	- 철도(도로차량)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철도(도로)회사부호(A4) + 일련번호(AN) + CHECK DIGIT(N1)"로 구성 · "철도(도로)회사부호"는 당해 운송을 책임지는 철도(도로운송)회사의 영문부호 4자리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 시 미사용 가능 - 적하목록관리번호는 적하목록이 관세청시스템에 최초로 제출된 시점에서 확정되며 제출사 임의로 변경불가 - 일련번호는 1년 이내에 세관별 통관역(통관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대리점)가 자율적으로 부여	- H운송회사가 ORN, 통관역에 도착한 차량의 적재물품목록 관리번호는? - 수차입: 04-HDAS-C 234-2 - EDI: 04-HDASC2 342
2-1. 운송구분	AN	2	M	EDI	- 운송구분부호 2자리 기재 · 차량에 의한 경우: "20", 철도에 의한 운송: "30"	
3. 철도회사 (운송회사)명 Name of Carrier	AN.	25	M	서류	당해 열차(차량)의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호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 HYUNDAI ASIAN Corporation
4. 열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 코드 기재 - 열차 번호 또는 대표 차량번호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대표 차량번호 기재	- HDAS - 경기 95 차 6902
5. 일경횟수	N	3	M	공통	- 동일차량 당일 일경횟수 일련번호 기재	
6. 국적 (열차, 차량)	A..	7	M	서류	- 차적상의 국적을 기재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 해당국가 약어를 기재 - 차적상의 열차/차량의 국적을 기재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 국적 → KOREA - 국적 → KR
7. 출발지	A.. A	20 5	M M	서류	-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발송역 및 차량명 기재 · 발송역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역(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 다른 출발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 출발지별로 화물명 세를 작성하고, 출발지가 바뀌면 PAGE를 달리한다.	
	A	5	M	EDI	-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지역코드 · 해당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기재 · 물품별 출발지 다른 경우는 출발지별로 화물명보통 입력	
8. 도착역 (도착지) Port of Discharge	A.. A	20 5	M M	서류	-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도착지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 부산항 (KR)PUSAN [KR]PUS
	A	5	M	EDI	-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재	- KR)PUS (KR)R)DH
9. 도착일시 Date of arrival	N N	8 8	M M	서류 EDI	- 차량의 통관장(역) 입경(예정)일을 기재 · 년월일(YYYY/MM/DD) - 차량의 통관장(역) 입경(예정)일을 기재	- 2002/12/31 - 20040901



교역 및 수송

나. 화물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0. 일련번호 MSN HSN	N. N.	4 3	M C	공통	-운송화사가 발행한 적하목록별 Master B/L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별로 4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 - House B/L이 있는 경우에는 HSN 기재하고 "20.비고"란에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부호 기재 - Master B/L별로 일련번호와 연계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부여한 House B/L 단위의 3자리 이내의 일련번호 - 적하목록관리번호와 조합하여 개별화물에 대한 식별번호로 사용됨	-1, 2, 3, ... 9998, 9999
11. 1) B/L TYPE (S:Simple C:Consol E:Empty Container)	A	1	M	공통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유무 표시 -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이 없는 경우는 'S', House B/L이 있는 경우는 'C'로, 공컨테이너가 수입되는 경우는 'E'로 기재 - 즉, 운송사가 화주에게 직접 B/L을 발행한 때는 'S', 운송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때는 'C'로 표시 - 'C'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House B/L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 Express Cargo 중 Sample화물 - D : Express Cargo 중 Document	S C E X D
2) 화물구분 Cargo Classification	A	1	M	공통	-적재물품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반입 및 일시양륙의 구분 - 반입화물(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하여 양륙하는 화물)의 경우는 'I', 일시양륙 화물(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하여 양륙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T'로 구분하여 기재 -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하여 일시양륙하는 화물은 화물구분에 'T'를 기재함으로써 일시양륙 신청으로 같음 - 서류의 경우 반입화물과 일시양륙화물은 PAGE를 달리하여 기재	
12. 화물운송장 번호	AN.	16	M	서류	-운송사명의로 발행되는 화물운송장번호 - Master B/L번호를 16자리로 이내로 기재 - House B/L인 경우에는 House B/L번호를 16자리로 이내로 기재	-HLHE0404010
13. 수하인 Consignee	AN.	35	M	서류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한 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맨 앞에 "C"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지시적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CISAMYOUNG EXPRESS CO. 371-20, SINSOO DO NG, MAPO-KU, SEOUL, KOREA (02)512-0870
	AN. AN.	105 5	C O			
	AN.	35	M	EDI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한 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입력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 (지시적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AN. AN.	105 25	C 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통지처 Notify Party	AN. AN. AN.	35 105 25	M C O	서류	-물품도착통지처 - 맨 앞에 "N"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Consignee가 "To order"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SAME AS ABOVE"를 기재하고 이하 생략가능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N/HYUNDAI ELECTRONI CS CO. LTD SAN 136-1, A M I - R I, BUBAL-MY ON ICHON-KUN, KYUNGKI- DO, KOREA (032)45-6010
				EDI	-물품도착통지처 - Consignee가 "To order"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생략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송하인 Shipper	AN. AN. AN.	35 105 25	M M O	서류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맨 앞에 "S"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SIU-FREIGHT AMERICA INC 330, C O R E Y W A Y, SANFRANCI SCO, CA, 94000 U.S.A
				EDI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의 화차번호 또는 차량이 여러 개의 경우 차량번호 모두 기재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경기5자 6002
14.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봉인번호/ Seal No.	AN.	11	C	서류	-컨테이너 소유자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의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 컨테이너 규격과 종류를 ISO 코드 4자리로 ( ) 에 기재 (ISO/DIS3462 사용) -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표시후 컨테이너번호 10자리 이내로 봉인번호 기재 -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시Seal과 검역Seal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 2개의 봉인번호를 "/"표시로 연결하여 기재 -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M/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CYUL219854 (20GP) /541088-7R8881  IN BULK 20GP
	AN.	4	C			
	AN.	10	C			
	AN.	35	O			



고려 및 수습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AN.	11	C	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li> <li>-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li> <li>-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li> <li>-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li> <li>-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li> </ul>	
	AN.	4	C		-컨테이너 SIZE TYPE CODE(ISO/DIS6346.2)	
	AN.	10	C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본인번호	
	AN.	35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테이너별 선사Seal 및 검역Seal을 모두 입력</li> <li>-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amp; NO.)</li> <li>-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li> </ul>	
15. 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200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별 품명</li> <li>-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 생략)</li> <li>-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li> </ul>	-에 SPEAKERS (ELECTRO- VOICE BRAND) SPEAKERS ETC
16. 포장개수 No. of PKGS	N.	8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 기준에 따른 물품의 포장개수</li> <li>-포장단위의 구분없이 각 포장단위별 포장개수를 합산하여 기재(PCS단위로 기재할 필요 없음)</li> <li>-산물(BULK CARGO)의 경우 "0"으로 기재</li> <li>-포장되지 않고 수량단위로 운송되는 물품(예: HANGER CONTAINER)은 당해물품 수량을 기재</li> <li>-PCL화물인 경우 B/L별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하나의 B/L에 컨테이너가 여러 대인 경우는 컨테이너별 포장개수를 기재</li> <li>-LCL화물인 경우 B/L별로 포장개수를 기재</li> <li>-관세청 봉제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li> <li>-포장종류가 2종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중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를 기재</li> <li>-산물은 기재생략</li> </ul>	-1.234567CT
	A	2	M			
17. 중량 (KGS) Gross Weight	N.	14	M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수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합계</li> <li>-먼저 '1'을 기재한 후, Kg단위로 환산한 포장중량을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li> <li>-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li> </ul>	-112345605
	N.	14	M	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수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합계</li> <li>-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li> <li>-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li> </ul>	
18. 특수 화물코드 Special Goods Code	AN.	4	C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물품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 기재</li> <li>-김역대상물품 및 보존/보냉물품인 경우 다음 코드 기재</li> <li>-동물검역대상 물품 : QA</li> <li>-식물검역대상 물품 : QP</li> <li>-보온/보냉물품 : RF</li> <li>-복수화물 코드가 복수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전부 기재</li> </ul>	-12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9. 반입장소 (하차장소)	AN.	10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차물품 구분코드(A2) + 보세구역부호(N8)</li> <li>-하차물품 구분코드(A2)</li> <li>-ID: 입항전반입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 즉시 자살반출</li> <li>-IT: 하차전 보세운송신고 수리물품 중 즉시 자살반출하는 물품</li> <li>-SD: 입항전반입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장소 장차 후 반출물품</li> <li>-ST: 하차전 운송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장소 장차후 반출 물품</li> <li>-GD: 하차장소 장차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봉관되는 물품</li> <li>-GT: 하차장소 장차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보세운송되는 물품</li> <li>-보세구역부호(N8):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보세구역 부호 기재</li> </ul>	
20. 비고	AN.	25	C	서류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호 기재	
	AN.	4	C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AN.	4	C	EDI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영문부호 4자리	
* 합계 Summary	N.	4	M	공통	-적재물품목록별 주요 관리항목단위 합계	
	N.	4	M		-B/L 총개수	
	N.	4	M		-B/L Type이 'C'인 M B/L 총개수(혼재화물건수)	
	N.	4	M		-물품적입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N.	14	M		-공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N.	12	M		-적하목록당 물품 총중량	
	N.	8	M	-적하목록당 물품 총포장개수		
◎제출일시	-	-	-	서류	-세관접수일로 같음	
	N	10	M	EDI	-적재물품목록 제출일시	- 9911251000
					-세관시스템에서 적하목록 수신시 수신일시를 자동등록	(06.1.25.1000)
◎접수확인자	-	-	-	서류	-수작업시 기재하지 않음	
	N	6	M	EDI	-접수담당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직원코드번호 입력	- 810234
					-EDI로 수신된 적재물품목록정보를 확인하면 세관담당자 직원코드 자동 입력	

[별지 제5호 서식] 반출물품적하목록 (제4-1-1조제2항 관련)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반입물품적하목록 CARGO MANIFEST		1. 연번(PAGE NO.)	
3. 철도(운송회사)명		4. 열차번호(차량번호)		2. 적하목록 관리번호 :	
7. 출발지		8. 도착지		9. 도착일시	
10. 반입승권 번호 (MBL No)	11. UBL TYPE (S: Sealed, C: Closed, E: Empty Container) 2) 화물구분 U: 반출구분, T: 이력화물 ↓ 12. 철도승권번호 (H B/L No)	13. CO수시인 NO용지차 S: 화물 공인번호	14. 운차번호 (차량번호) 운차번호번호 공인번호	15. 총 중량	16. 포장개수
				17. 총중량(KGS)	18. 반출일시
				신고수리 번호	포장개수
					30 피코

364\*257mm(백상지 60g/㎡)

[별지 제5-1호] 반출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제4-1-1조제2항 관련)

반출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가. 철도(도로)운항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 PAGE NO.	N.. N..	3 3	M	서류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 매수별 일련번호 · 현재 페이지 번호 · 총 페이지 수(전체서류 매수)	21 OF 150 페이지번호 ↓ 서류매수
2. 적하목록 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	AN	11	M	공동	-철도(도로차량)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철도(도로)회사부호(A4) + 일련번호 (AN4) + CHECK DIGIT(N1)"로 구성 · "철도(도로)회사부호"는 당해 운송을 책임지는 철도 (도로운송)회사의 영문부호 4자리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 출시 미사용 가능 -적하목록관리번호는 적하목록이 관세청시스템에 최초 로 제출된 시점에서 확정되며 제출자 임의로 변경불가 -일련번호는 1년 이내에 세관별 통관역(통관장)별로 중 복되지 않도록 회사(대리점)가 자율적으로 부여	-H(운송회사가 04년 통관역에 도착한 차량의 적하목록목록 관리번호는? 수작업: 04-HDAS-1 234-5 -EDI: 04-HDAS1235
2-1. 운송구분	AN	2	M	EDI	-운송구분부호 2자리 기제 · 차량에 의한 경우: "20", 철도에 의한 운송: "30"	
3. 철도회사 (운송회사)명 Name of Carrier	AN..	25	M	서류	-당해 열차(차량)의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호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제	-HYUNDAIAN Corporation -HDAS
4. 열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동	-열차 번호 또는 대표 차량번호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대표 차량번호 기제	-경기 95 자 6602
5. 입경횟수	N	3	M	공동	-동일차량 당일 입경횟수 일련번호 기제	-국적 → KOREA
6. 국적 (열차, 차량)	A..	7	M	서류	-차적상의 국적을 기제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 해당국가 약어를 기제 -차적상의 열차/차량의 국적을 기제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제	-국적 → KR
7. 출발지	A.. A A	20 5 5	M M M	서류 M EDI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발송역 및 국가명 기제 · 발송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제 · 해당 역(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 ]에 기제 -물품별 출발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 출발지별로 화물명 세를 작성하고, 출발지가 바뀌면 PAGE를 달리한다.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지역코드 · 해당 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기제 · 물품별 출발지 다른 경우는 출발지별로 화물정보를 입력	
8. 도착역 (도착지) Port of Discharge	A.. A A	20 5 5	M M M	서류 M EDI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제(T/S화물) · 도착지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제 · 해당 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를 [ ]에 기제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제(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제	-부산항 -BUSAN [KR/US] -KRPUS -KRPUS
9. 도착일시 Date of arrival	N N	8 8	M M	서류 EDI	-차량의 봉관장(역) 입경(예정)일을 기제 · 년월일(YYYY/MM/DD) -차량의 봉관장(역) 입경(예정)입을 기제	-2002/12/31 -2004001

나. 화물정보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0. 선하증권번호 M B/L No.	AN	16	M	공통	-포워더의 H B/L과 관련된 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Master B/L번호) - Master B/L번호 총 16자리 중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부호를 부여하고, 11자리는 철도·육로운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 마지막 1자리는 Check Digit 기재 *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시 미사용 가능 - 5년간 중복사용 불가	-HDAS041001 Z3AB01
11. B/L TYPE (S:Simple C:Consol E:Empty Container)	A	1	M	공통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유무 표시 -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이 없는 경우는 'S', House B/L이 있는 경우는 'C'로, 공컨테이너가 수입되는 경우는 'E'로 기재 - 즉, 운송사가 화주에게 직접 B/L을 발행할 때는 'S', X 운송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할 때는 'C'로 표시 - 'C'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House B/L 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작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 Express Cargo 중 Sample화물 - D : Express Cargo 중 Document	S C E X D
2) 화물구분 Cargo Classification	A	1	M	공통	-적하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반출 및 이적의 구분 - 반출화물의 경우는 'E', 이적화물인 경우에는 'R'로 구분하여 기재 - 서류의 경우 반출화물과 이적화물은 PAGE를 달리하여 기재	
12. 화물운송장 번호 H B/L No.	AN	16	M	공통	-포워더 명의의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House B/L번호) - House B/L번호 총 16자리 중 앞에서부터 4자리는 관세청에 등록된 부호를 부여하고, 11자리는 철도·육로운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여 기재, 마지막 1자리는 Check Digit 기재 *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시 미사용 가능 - 5년간 중복사용 불가 - 개별화물에 대하여 House B/L이 두 번 이상 발행되었을 경우(Co-Load)에는 최초 수출자에게 발행된 House B/L번호를 기재	-DBSC0410123 4AB01
13. 수하인 Consignee	AN.	35	M	서류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맨 앞에 "C"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지시적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C)SAMYOUNG EXPRESS CO. 371-20, SENSO-DONG MAPO-KU, SEOUL, KOREA (02542-0870
	AN.	105	C			
	AN.	5	O			
	AN.	35	M	EDI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입력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 (지시적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통지처 Notify Party				서류	-물품도착통지처 - 맨 앞에 "N"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SAME AS ABOVE"를 기재하고 이하 생략가능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N)HYUNDAI ELECTRONI CS CO.LTD SAN 135-1, AMI-RL BUBAL-MY ON ICJON-KUN, KYUNGKI- DO, KOREA (032)45 6010
	AN. AN. AN.	35 105 25	M C O		EDI	-물품도착통지처 -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생략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송하인 Shipper				서류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맨 앞에 "S"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SJU-FREIGHT AMERICA INC 320, COREY WAY, SANFRANCI SCO, CA, 94000 USA
	AN. AN. AN.	35 105 25	M M O		EDI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의 화차번호 또는 차량이 여러 개의 경우 차량번호 모두 기재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경기 95 자 6902
14.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봉인번호/ Seal No.	AN.	11	C	서류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 컨테이너 규격과 중량을 ISO 코드 4자리로 ( )에 기재 (ISO/DIS363462 사용) -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표시후 컨테이너번호 10자리 이내로 봉인번호 기재 - 하나의 컨테이너에 전자Seal과 잠금Seal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 2개의 봉인번호를 "/"표시로 연결하여 기재 -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M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CYUL2199854 (30GP) /541088-7709881 IN BULK 20GP
	AN.	4	C			
	AN.	10	C			
	AN.	35	O			



필요 시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AN.	11	C	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li> <li>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li> <li>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li> <li>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li> <li>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li> <li>컨테이너 SIZE TYPE CODE(ISO/DIS6346.2)</li> <li>선박회사의 컨테이너용인번호</li> <li>컨테이너별로 선사Seal및 경역Seal을 모두 입력</li> <li>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amp; NO.)</li> <li>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인위 화물은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li> </ul>	
15. 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200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별 품명</li> <li>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 생략)</li> <li>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li> </ul>	-E SPEAKERS (ELECTRO- VOICE BRAND) SPEAKERS ETC
16. 포장개수 No. of PKGS	N.	8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 기준에 따른 물품의 포장개수</li> <li>포장단위의 구분없이 각 포장단위별 포장개수를 합산하여 기재(PCS단위로 기재할 필요없음)</li> <li>산물(BULK CARGO)의 경우 "0"으로 기재</li> <li>포장되지 않고 수량단위로 운송되는 물품(예 : HANGER CONTAINER)은 당해물품 수량을 기재</li> <li>FCL화물인 경우 B/L별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하나의 B/L에 컨테이너가 여러 대인 경우는 컨테이너별 포장개수를 기재</li> <li>LCL화물인 경우 B/L별로 포장개수를 기재</li> <li>관세청 통제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li> <li>포장종류가 2종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종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를 기재</li> <li>산물은 기재생략</li> </ul>	-1,234,567CT
	A	2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CL화물인 경우 B/L별로 포장개수를 기재</li> <li>관세청 통제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li> <li>포장종류가 2종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종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를 기재</li> <li>산물은 기재생략</li> </ul>	
17. 중량 (KGS) Gross Weight	N.	14	M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합계</li> <li>먼저 '1)'을 기재한 후, Kg단위로 환산한 포장중량을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li> <li>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li> </ul>	-1123,456.05
	N.	14	M	E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합계</li> <li>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li> <li>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li> </ul>	
19. 1) 반출신고번호	AN	10	M	공통	반출물품인 경우 반출신고번호 또는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2) 포장개수중량	N.	8	M	서류	포장화물인 경우	
	N.	14	M		벌크화물인 경우	
	A	1	M	EDI	분할선적여부 (Y/N)	
	A	1	M		동시포장여부 : Set로 포장된 경우 같은 부호를 사용하며 (A~Z)로 표시	
	N.	8	M		-포장개수	
	AN	2	M		-포장종류 부호	
N.	14	M	-중량 : Kg단위로 기재			
N.	8	C	-동시포장개수			
AN	2	C	-포장종류 부호			
N	1	C	-분할선적 처수			
20. 비 고	AN.	25	C	서류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호 기재	
	AN.	4	C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AN.	4	C	EDI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호 기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영문부호 4자리	
※ 합계 Summary	N.	4	M	공통	-적재물품목록별 주요 관리항목단위 합계	
	N.	4	M		-B/L 총개수	
	N.	4	M		-B/L Type이 'C'인 M B/L 총개수(혼재화물건수)	
	N.	4	M		-물품직입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N.	14	M		-공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N.	12	M		-적하목록당 물품 총종량	
N.	8	M	-적하목록당 물품 총용적			
					-적하목록당 물품 총포장개수	
㉠세출인시	-	-	-	서류	-세관접수인으로 같음	
	N	10	M	EDI	-적재물품목록 제출일시	-9001251030
					-세관시스템에서 적하목록 수신시 수신일시를 자동등록	05 1 25 1030
㉡접수확인자	-	-	-	서류	-수작업시 기재하지 않음	
	N	6	M	EDI	-접수담당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직원코드번호 입력	-810234
					-EDI로 수신된 적재물품목록정보를 확인하면 세관담당자 직원코드 자동 입력	

[별지 제6호 서식]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제4-3-2조제3항 관련)

컨테이너봉인 및 확인대장

화물관리 번호	화물운송장 번호	반(출)입 일	운 전 자		반 입(출) 확인내역					비 고
			소 속	성 명	컨테이너 번호	차량 번호	봉인 번호	도착 일시	이상 여부	

[별지 제7호 서식]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제2-2-5조제4항 관련)

반출·반입신고수리 목록

[ 반출, 반입 ]

신고일자	수리일자	신고번호	란번호	IIS	품명	수량	금액	비고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고역 및 수송



Ⅲ-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행승인기준)** ①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행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 순 경우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 (운행승인서의 재발급)**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분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②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 (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필요  
제본  
사항

**제 6 조 (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7 조 (운행결과의 보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영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 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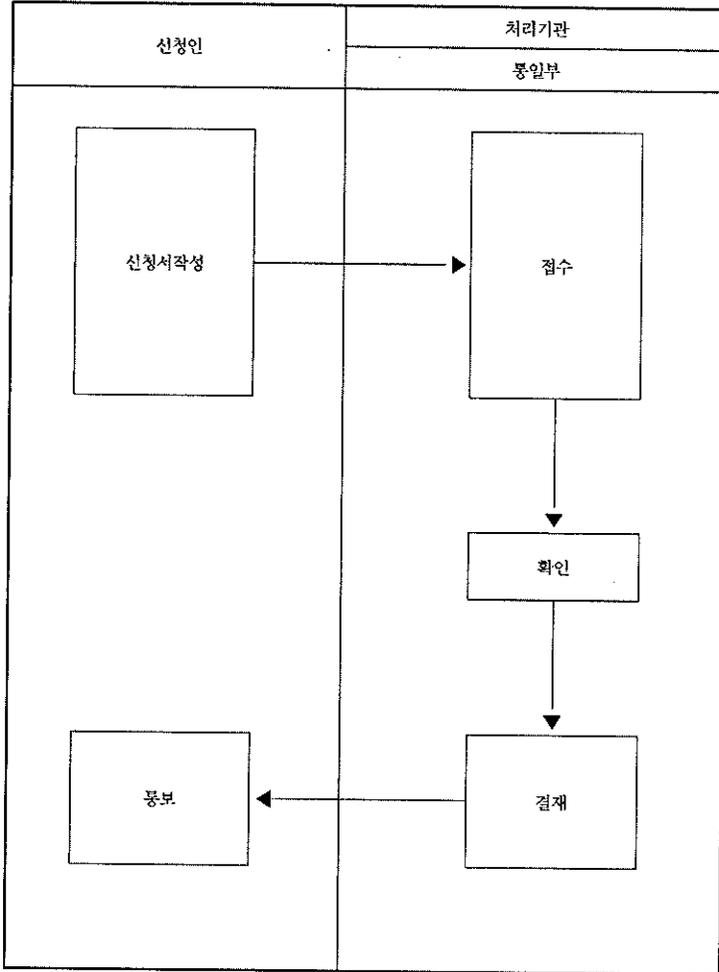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5일
<b>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b>					
신청인	성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승인번호					
재발급 사유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영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운행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종))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교역 및 수송



Ⅲ-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 칙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 등에 준하여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통행차량”이라 함은 관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화차 및 객차 등을 포함한다.
3. “도로차량”이라 함은 접경을 출입하는 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4. “관세통로”라 함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5. “통관역(또는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6.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7. “통관장”이라 함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8.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라 함은 남북간 접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9. “출입장소”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10. “출경”이라 함은 남측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측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1. “입경”이라 함은 북측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측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2. 기타 본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남북한 접경 운송수단의 출입

#### 제1절 통행차량의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제2-1조 (통행차량의 등록)** ①관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준하여 남북접경을 도로차량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차량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한 '자동차운행승인서'에 의한 업체 및 차량에 한 한다.

②통행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육로운송회사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필  
요  
문  
수  
요

세관장을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2-2 조 (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수단 중 도로차량으로 접경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받아 출입 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 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 인적사항
2. 차종 및 차량등록번호
3. 운행목적 및 운행경로
4. 운행기간
5. 기타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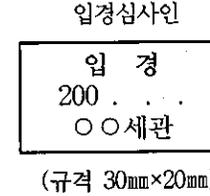
**제2-3 조 (출입확인)** ①접경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시마다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통행차량출입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에 아래의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전자식 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입경·출경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용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사항을 통행차량출입경수속시스

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 조 (등록차량 사전통보)** 세관장은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통행차량등록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복한 측 세관에 사전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2-5 조 (등록의 취소)** ①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
2. 통행차량이 밀반출입 물품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세관장은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2-4조 규정에 준하여 통보한다.

**제2-6 조 (증명서 변경, 분실 및 운행기간의 연장)** ①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여된 조건의 변경, 분실, 운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분실된 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최초 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2 절 통행차량의 도착 및 출발보고

**제 2-7 조 (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통행차량의 운전자(이하 '소속 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 또는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149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기간에 일정량을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최초 출발보고 및 최종 도착보고시에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차량용품목록(서식 제7호)
2. 여객명부(서식 제8호)
3.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서식 제9호)
4. 반입물품적하목록(서식 제11호)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서식 제12호)
5. 기타 복측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서류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서 정한 여객명부,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반출물

품적하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8 조 (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나 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제2-7조 규정에 의한 '통행차량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통과차량의 보고 및 확인)** ①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의한 도착보고서 제출로 같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0 조 (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정정·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 제 3 장 출입차량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

**제 3-1 조 (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 및 출발하는 차량에 대하여



기  
요  
민  
수  
수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제 3-2 조 (화물 및 휴대품 통관)** ①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 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및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다.

②기타 반출입되는 화물처리에 관한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의 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 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 3-3 조 (운행지역의 제한)**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3-4 조 (접경세관장의 위임사무)** 세관장은 통관장,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 등 본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3-5 조 (다른 규정의 준용)** ①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에 관한 절차는 「외국무역선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및 통행차량에 관한 고시」 및 「남북간 철도차량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

자 동 차 운 행 승 인 · 통 행 차 량 登 록 申 請 서			처리기간 5 일
○ 신청번호 : 200 - 호			
신 청 인	성 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소재지)		
차 량 제 원	차량종류	<input type="checkbox"/> 승용자동차(10인이하) <input type="checkbox"/> 승합자동차(11인이상) <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특수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이륜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차량등록 번호	적재중량	승차정원
운 행 사 항	운행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운행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월 회) <input type="checkbox"/> 부정기
	운행목적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운행경로	출 발 지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파주 <input type="checkbox"/> 강원도 고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운행지역		<input type="checkbox"/> 개성공단 <input type="checkbox"/> 금강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의 승인 및 관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차량등록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 세관장 귀 하	
구비서류 1. 운행계획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허가 등록증 사본 1부(사업용 운행에 한한다) 5. 북한인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봉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 음

※ 용지규격: 세로23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신청서작성요령 (신청인 ⇔ 봉일부)

NO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	신청번호	AN	12	M	- 신청서 접수시 전산시스템이 생성하여 부여	- 2005-00000454
2	신청일자	N	7	M	- 'YYYYMMDD'	- 20050007
3	성명(회사명)	AN	45	M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회사인 경우 회사명을 기재	- 홍길동 - (주)봉일교역
4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A	13	M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1234567800123 - 1234567800
5	대표자성명	AN	12	M	-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임격정
6	연락처	AN	16	M	-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	- 02-1234-5678
6-1	전화번호		16	M		
6-2	팩스번호		16	C	- 신청인의 팩스 번호를 기재	
7	주소(소재지)	AN	90	M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불, 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지를 기재한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1번지 정부청사
8	차량	A	1	M	- 승용차 : 'P' 승합차 : 'B' 화물차 : 'C' 특수차 : 'S' 이륜차 : 'A' 기타 : 'Z' * 승차정원 기준으로 10인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하고, 11인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 * 볼모저 등 건설장비는 특수차로 분류 - 차량종류가 기타인 경우 차종 기재	- P, C
8-1	차량종류					
8-2	기타 내역	A	35	C		- 경운기, 트랙터
9	차량등록번호	AN	16	M	- 차량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 경기30두9417
10	적재중량	999.99	5	C	- 톤(ton) 단위로 차량의 화물적재 중량 기재 * 예) 1.5톤 트럭의 경우 : 1.5	- 1.5
11	승차정원	A	4	C	- 차량의 승차정원을 기재	- 5, 40
12	운행기간	A	8	M	- 차량운행 시작일 기재 : YYYYMMDD - 차량운행 종료일 기재 : YYYYMMDD	- 20050404 - 20050525
12-1	운행 시작일		8	M		
12-2	운행 종료일	A	8	M		
13	운행구분	A	1	M	- 정기 : '0' 부정기 : '1'	- 0, 1
13-1	차량운행구분					
13-2	정기운행 회수	N	4	C	- 정기운행의 경우 월 운행회수 기재	- 60
14	목적	A	2	M	- 화물운송 : '01' 여객운송 : '02' 기타 : '00' - 운행목적이 기타인 경우 해당 목적 기재	- 01, 99 - 도로공사
14-1	운행목적					
14-2	기타 내역	AN	30	C		
15	운행경로	A	2	M	- 경기도파주 '01' 강원도 고성 '02' 기타 '99'	- 01, 99
15-1	출발지					
15-2	출발지 기타내역	AN	30	C	- 출발지 지역명 기재(검정시 기준)	- 강원도 화천
15-3	운행지역	A	2	M	- 개성공단 : '01' 금강산 : '02' 기타 : '99'	- 02, 99
15-4	운행지 기타내역	AN	30	C	- 기타 북한내 도화지의 지역명을 기재	- 평양
16	승인일자	N	8	M	- YYYYMMDD * 승인시 신청인에게 봉보	- 20050607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증명서			
신청(증명)번호	200 - 호	승인일자	200 . . .
신청인	성명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소재지)		
차량 제원	차량종류	<input type="checkbox"/> 승용자동차(10인이하) <input type="checkbox"/> 승합자동차(11인이상) <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특수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이륜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차량등록 번호	적재중량	승차정원
운행 사항	운행기간	200 . . . 부터 200 . . . 까지	운행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월 회) <input type="checkbox"/> 부정기
	운행목적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운행경로	출발지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파주 <input type="checkbox"/> 강원도 고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운행지역 <input type="checkbox"/> 개성공단 <input type="checkbox"/> 금강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간 자동차의 운행승인 및 통행차량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교역 및 수송

[별지 제2-1호 서식]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증명서 사양 (통일부 ⇒ 관세청)

NO	항 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1	신청번호	AN	12	M	- 신청시 접수시 전산시스템이 생성하여 부여 - 'YYYYMMDD'	- 2005-00000454 - 20050007
2	신청일자	N	7	M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성명용, 회사인 경우 회사명용 기재	- 홍길동 - (주)봉일교역
3	성명(회사명)	AN..	45	M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1234567890123 - 1234567890
4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A	13	M	-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대표자 성명용 기재	- 임끼정
5	대표자성명	AN	12	M	-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	- 02-1234-5678 - 02-1234-5679
6-1	연락처전화번호	AN..	16	M	- 신청인의 팩스 번호를 기재	-
6-2	팩스번호		16	C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란, 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지를 기재한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1번지 정부청사
7	주소(소재지)	AN..	90	M	- 승용차 : 'P' 승합차 : 'B' 화물차 : 'C' 특수차 : 'S' 이륜차 : 'A' 기타 : 'Z' * 승차인원 기준으로 10인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하고 1인이상은 승합차로 분류 * 발도저 등 건설장비는 특수차로 분류	- P, C
8-1	차량차량종류	A	1	M	- 차량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 경기30두0417
8-2	기타 내역	A	35	C	- 톤(ton) 단위로 차량의 화물적재량 기재 * 예) 1.5톤 트럭의 경우 : 1.5	- 1.5
9	차량등록번호	AN	16	M	- 차량의 승차정원용 기재	- 5, 40
10	적재중량	999.99	5	C	- 차량운행 시작일 기재 : YYYYMMDD - 차량운행 종료일 기재 : YYYYMMDD	- 20050404 - 20050625
11	승차정원	A	4	C	- 정기 : '0' 부정기 : '1' - 정기운행의 경우 월 운행회수 기재	- 0, 1 - 60
12	운행기간			M	- 화물운송 : '01' 여객운송 : '02' 기타 : '99' - 운행목적기타 내역	- 01, 99 - 도로공사
12-1	운행 시작일	A	8	M		
12-2	운행 종료일	A	8	M		
13	운행구분			M	- 정기도파주 '01' 강원도 교양 '02' 기타 '99' - 읍면지 지역별 기재(집결지 기준)	- 01, 99 - 강원도 화천
13-1	차량운행구분	A	1	M	- 개성공단 : '01' 금강산 : '02' 기타 : '99'	- 02, 99
13-2	정기운행 회수	N	4	C	- 기타 특관내 도차자의 지역명을 기재	- 평양
14	목적			M	- YYYYMMDD * 승인시 신청인에게 통보	- 20050607
14-1	운행목적	A	2	M	- 통일부에서 관세청으로 전자문서 통지일시 기재 : YYYYMMDDHHMM * 년(YYYY)+월(MM)+일(DD)+시(HH)+분(MM)	- 200506071510
14-2	기타 내역	AN	30	C		
15	운행경로			M		
15-1	출발지	A	2	M		
15-2	출발지 기타내역	AN	30	C		
15-3	운행지역	A	2	M		
15-4	운행지 기타내역	AN	30	C		
17	승인일자	N	8	M		
18	통지일시	N	12	M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3호 서식] 통행차량출입확인서

통행차량 출입확인(서)

○ 차량번호:

출경		입경		출경		입경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출경심사인 확인자 :		입경심사인 확인자 :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통행차량등록명부

문서번호 : 200 -

○ ○ 세관장 귀하

발급 번호	발급 일자	구 분 (정 부정기)	회사명	차 종	차 량 등록번호	최재량 (승객정원)	운 행 유효기간	운행 지역	기 타

\* 용지규격: 세로210mm\*가로297mm(A4형, 백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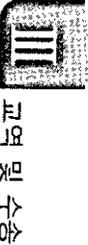
위와 같이 납부한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봉보합니다.

200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통행차량 증명(변경,재발급,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제출번호		2. 당초제출번호		
3.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서명)	
	주 소			
4. 차량종류	<input type="checkbox"/> 승용자동차(10인이하) <input type="checkbox"/> 승합자동차(11인이상) <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특수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이륜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5. 차량등록번호				
6. 운행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부정기			
7. 변경내용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간연장 <input type="checkbox"/> 증명사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 타			
7. 변경내용				
정정항목명		변경전		변경후
9. 분실장소(구체적으로)				
10. 신청사유(변경, 분실, 기간연장)				
위와 같이 당초 승인받은 통행차량 출입증명서의 내용을 변경(유효기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하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6호 서식]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서

<b>통행차량</b> <input type="checkbox"/> 출발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도착보고서		치리기간	즉시
		○ 제출번호 : □□□□ - □□□□□□□□ - □□□□□□ ※ 통행차량등록증명번호 + 운행일련번호	
○ 적하목록번호 :			
1. 차량회사명	2. 차량국적	3. 차량종류	4. 차량등록번호
5. 차량형식	6. 생산년도	7. 총 화차수	7. 총 객차수
9. 출발 국가	10. 최초 출발지	11. 경유(전 출발지)지	
12. 도착(출발)일시	13.출발(도착)예정일시	14. 목적지(최종목적지)	
15. 반복운송 차량	<input type="checkbox"/> 도래 등 끌개 <input type="checkbox"/> 석탄 등 광물 <input type="checkbox"/> 총 운행횟수( 회)		
16. 적재물품	주요물품	총 포장수(C/T)	총중량(kg)
17. 승무원수 : 총 명 (한국인:        외국인 :        )		18. 여객수 : 총 명 (한국인:        외국인 :        통과여객수 :        )	
19. 첨부서류 차량용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여객명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적하목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20. 보고일자, 서명 보고일자 : □□□□□□□□□□ 년/월/일	
관세법 제149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행차량의 도착(출발) 보고를 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세관장    귀하</p>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6-1호]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서 작성요령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서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	신청번호	AN	12	M	-신청서 접수시 전산시스템이 생성하여 부여	-2005-00000454
2	신청일자	N	7	M	-'YYYYMMDD'	-20050607
3	성명(회사명)	AN..	45	M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회사인 경우 회사명을 기재	-홍길동 -(주)홍인교역
4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A	13	M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234567890123 -1234567890
5	대표자성명	AN	12	M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	-임재정
6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16	M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 -신청인의 팩스 번호를 기재	-02-1234-5678 -02-1234-5679
6-2			16	C		
7	주소(소재지)	AN..	90	M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읍, , 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지를 기재한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가 1번지 정부청사
8	차량 차량종류	A	1	M	-승용차 : 'P' 승합차 : 'B' 화물차 : 'C' 특수차 : 'S' 이륜차 : 'A' 기타 : 'Z' * 승차인원 기준으로 10인 이하는 승용차로 분류하고, 1인이상은 승합차로 분류 * 볼도지 등 걸림상하는 특수차로 분류	-P, C
8-2				C		
9	차량등록번호	AN	16	M	-차량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경기30부9417
10	적재중량	999.9 9	5	C	-톤(ton) 단위로 차량의 화물적재 중량 기재 * 예) 15톤 트럭의 경우 : 15	-15
11	승차정원	A	4	C	-차량의 승차정원을 기재	-3, 40
12	운행기간			M		
12-1	운행 시작일	A	8	M	-차량운행 시작일 기재 : YYYYMMDD	-20050404
12-2	운행 종료일	A	8	M	-차량운행 종료일 기재 : YYYYMMDD	-20050525
13	운행구분			M		
13-1	차량운행구분	A	1	M	-정기 : '0' 부정기 : '1'	-0, 1
13-2	정기운행 회수	N	4	C	-정기운행의 경우 월 운행회수 기재	-60
14	목적			M		
14-1	운행목적	A	2	M	-화물운송 : '01' 여객운송 : '02' 기타 : '99'	-01, 99
14-2	기타 내역	AN	30	C	-운행목적외 기타인 경우 해당 목적 기재	-도로공사
15	운행경로			M		
15-1	출발지	A	2	M	-경기도내주 '01' 강원도 교상 '02' 기타 '99'	-01, 99
15-2	출발지 기타내역	AN	30	C	-출발지 지역명 기재(검정지 기준)	-강원도 화천
15-3	운행지역	A	2	M	-개성공단 : '01' 금강산 : '02' 기타 : '99'	-02, 99
15-4	운행지 기타내역	AN	30	C	-기타 북한내 도착지의 지역명을 기재	-평양
17	승인일자	N	8	M	-YYYYMMDD * 승인시 신청인에게 통보	-20050607
18	통지일시	N	12	M	-통일부에서 관세청으로 전자문서 통지일시 기재 : YYYYMMDDHHMM * 년(YYYY)+월(MM)+일(DD)+시(HH)+분(MM)	-200600071510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통행차량증명번호 입력번호	AN AN	12 5	M	공통 공통	-통행차량증명번호(12자리) -증명번호별 운행일련번호기재	200500009729 00002
	출경·입경 구분	N	1	M	서류 EDI	-출발보고서, 도착보고서 -출경: 1, 입경: 2	-출발보고 -1
	적하목록번호	AN	11	C	공통	-적하목록번호 기재 * 1건의 적하목록화물을 여러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선도차량만 기재 * 적재화물이 없는 경우 기재생략	-96HD001013 0
1	차량회사명	AN.	25	M	서류	-당해 차량의 운행유 책임자는 회사명 상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한글 7자 이내로 기재	-통일교역(주)
2	차량의 국적	A	2	M	공통	-차량의 국적, ISO국가코드	-KR, KP
3	차량종류	AN	2	M	공통	-궤차: 'T1' 화차: 'T2', 버스: 'B' 승용: 승합차 'P', 화물차 'C', 기타 'Z'	-T1, C
4	차량번호	AN.	16	M	공통	-차량번호(철도의 경우 열차번호)	-경기30두9417
5	차량형식	AN.	20	M	공통	-차량의 명칭, 상표이름을 기재	-소나타 EF 2.0
6	생산년도	N	4	C	EDI	-차량의 생산 또는 제작연도발 표시	-2002
7	총 궤차수	N	2	C	EDI	-화차의 개수발 기재(철도차량에 한함)	-1
8	총 화차수	N	2	C	EDI	-화차의 개수발 기재(철도차량에 한함)	-12
9	출발지 국가	A	4	M	공통	-출발하는 차량의 국가명, ISO 국가코드	-KR
10	최초 출발지	A	12	M	공통	-출발하는 차량의 최초 도시(역)명	-인천
11	경유지	A	12	M	공통	-차량이 최종적으로 경유하는 도시명(철도의 경우는 역명을 기재)	-서울
12	도착(출발)일시	N	12	M	공통	-차량이 통관장(역)에 도착(출발)하는 일시 'YYYYNDDHH24MI' * 반복운송차량의 경우에는 최초출발 일시 기재	-200212251430
13	출발(도착)예정 일시	N	12	M	공통	-차량이 통관장(역)에 도착(출발)하는 일시 'YYYYNDDHH24MI' * 반복운송차량의 경우에는 최종도착 일시 기재	-200212251500
14	목적지	A	12	M	공통	-차량의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목적 도시(역)명	-개성
15-1	반복운송차량	N.	1	C	공통	-해당여부	-해당란 체크
15-2	-모래 등 골재	N.	1	C	공통	-해당여부	-해당란 체크
15-3	-석탄 등 광물	N.	1	C	공통	-해당여부	-해당란 체크
15-3	-총 운행횟수	N.	2	C	공통	-당일 총 운행횟수 기재	-10
16	적재물품						
16-1	주요품명	AN.	20	C	EDI	-주요품명을 기재하고 외 ◦종으로 기재	-TV외 3종
16-2	수량	N	5	C	EDI	-수량을 개수발 기재	-65
16-3	중량	N	5	C	EDI	-수량의 총 중량을 기재(KG)	-250
17-1	승무원 수	N.	3	C	항공 공통	-T/S 제외	-20
17-2	-한국인	N.	3	C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여객수						
18-1	-한국인	N	5	C	공통	-T/S(통과여객)를 제외한 내국인 승객수	-250
18-2	-외국인	N	5	C	공통	-T/S(통과여객)를 제외한 외국인 승객수	-150
18-3	-통과여객수	N	5	C	공통	-순수한 통과여객(국적 불문)	-50
	첨부서류						
19-1	-차량용품 목록	N	1	C	EDI	-차량용품 목록 세관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9-2	-승객명부	N	1	C	EDI	-승객명부 세관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9-3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 목록	N	1	C	EDI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세관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9-4	-적하목록	N	1	C	EDI	-적하목록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20	보고일자	N	7	M	EDI	-YYYYMMDDI'	-200206071500
	제출세관	AN	3	M	EDI	-입-출항보고 세관번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010
	제출과	AN	2	M	EDI	-입-출항보고 세관번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12



고려 및 수송

[별지 제7호서식] 차량용품목록

<b>차량용품목록</b>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취소		처리기간	즉시
		<input checked="" type="radio"/> 제출번호 □□ - □□□□ - □□□□□□			
1. 차량 종류 (화차, 객차, 승용, 화물, 기타)	2. 차량등록번호	3. 도착/출발 일시	4. 총기류/마약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5. 외지 차량용품 구입 또는 외지수리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6. 일련번호	7. 품명 및 규격	8. 수량	9. 신고 물품 여부	
14. 보고일자 및 보고자(운전자 또는 회사대리자) 서명 보고일자 : □□□□/□□/□□ 서명 : _____					
관세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용품목록을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 세관장 귀하</div>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용, 백색)

[별지 제7-1호 서식] 차량용품목록 작성요령

차량용품목록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제출번호	AN..	11	M	EDI	-적하목록 제출건은 적하목록관리번호, 적하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관리번호(적하목록관리번호 체계를 따름)	-96HD0010 130
1	차량종류	AN	2	M	공통	-객차: 'T1' 화차: 'T2', 버스: 'B' 승용·승합차: 'P', 화물차: 'C', 기타: 'Z'	-P
2	차량등록번호	AN..	9	M	EDI	-차량등록증 상의 등록번호(열차의 경우는 열차 번호)	-경기20두 9417
3	도착/출발 일시	N	12	M	EDI	-차량이 통관역에 도착(출발)하는 일시 'YYYYNNDDHH24MI'	-200206071 500
4	총기류/마약류	A	1	M	EDI	-총기류 소지여부 '유': Y, '무': N	-N
5	외지 차량용품 구입 또는 외지 수리 유무	A	1	M	EDI	'Y' 또는 'N'	-N
6	일련번호	N..	3	M	EDI	-차량용품 신고서상의 기재 일련번호	
7	품명 및 규격	AN..	100	M	EDI	-차량 용품명	
8	수량	N..	3	M	EDI	-차량용품의 수량을 기재	
9	신고물품 여부	A	1	M	EDI	'Y' 또는 'N'	-N
	제출세관	AN	3	M	EDI	-입·출항보고 세관번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010
	제출과	AN	2	M	EDI	-입·출항보고 세관번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 LOOP : 일련번호 10    L1  
 일련번호 13   

\* LOOP 설명  
 L1 : 차량용품수 만큼 반복

[별지 제8호 서식] 여객명부

여객명부				페이지 번호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최종 <input type="checkbox"/> 취소		◎ 제출번호 - -	
				1. 차량번호			
2. 일련번호	3. 성명	4. 성별	5. 생년월일	6 여권번호	7 국적	8 탑승지	
관세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명부를 제출합니다. ○ ○ 세관장 귀하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 승객 내역 초과시 별지 계속 기록

[별지 제8-1호] 여객명부 작성요령

여객명부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제출번호	AN	11	M	공통	-적하목록 제출건은 적하목록관리번호, 적하목록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체관리번호(적하목록관리번호 체계를 따름)	-961ID0010130
1	차량 등록기호	AN.	9	M	공통	차량등록증의 번호(철도의 경우 열차번호)	-경기30두9417
2	일련번호	A..	20	M	공통	-일련번호를 기재	
3	성명	AN..	12	M	공통	-탑승객의 성명	-홍길동
4	성별	A	1	M	공통	-남자 'M' 여자 'F'	- M
5	생년월일	A..	30	C	공통	-생년월일	-570520
6	여권번호	A..	30	C	공통	-여권소지자의 경우	-TL0235720
7	국적 국적부호	A.. A	60 2	M M	서류 EDI	-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국적명 ISO 국가코드	-KR
8	탑승지	AN..	12	M	EDI	-최초 탑승지의 도시명(철도는 역명)	
	제출일시	N	12	M	EDI	-'YYYYMMDDHHMM'	-200206081500
	제출세관	AN	3	M	EDI	-입항보고한 세관의 세관부호(통계부호표 참조)	-010
	제출과	AN	2	M	EDI	-입항보고한 세관의 세관부호(통계부호표 참조)	

※ LOOP : 일련번호 2    일련번호 7-2    L1

※ LOOP 설명  
L1 : 총 인원만큼 반복



표어 및 수송

[별지 제9호 서식] 승무원명부및휴대품목록호 관련)

<b>승무원명부 및 휴대품목록</b>						◎ 제출번호 □□□□ - □□□□□□□□ - □□□□
1. 차량종류	2. 차량등록번호	3. 도착 일시	4. 직명	5. 성 명	6.생년월일	
7. 여권번호						휴대품 목록(소지한 경우에만 기재)
8. 품명 및 규격		9. 수량	10.구입금액 (천원)	11. 총기 / 마약류 소지유무 □유 □부		
13. 보고일자 및 보고자(운전자 또는 회사대리자) 서명						
보고일자 : □□□□/□□/□□ 서명 :						
관세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을 제출합니다.  ○ ○ 세 관 장 귀하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9-1호]승무원명부및휴대품목록작성요령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제출번호	AN..	17	M	EDI	-통행차량등록증명번호(년도4자리 + 증명번호8자리)와 일련번호(남북출발 도착운행횟수) 5자리를 기재	-20060008119 00001
1	차량종류	AN	2	M	공통	-객차 : 'T1' 화차 : 'T2', 버스 : 'B' 승용-승합차: 'P', 화물차: 'C', 기타: 'Z'	-T1, C
2	차량등록기호	AN..	9	M	EDI	-차량등록증의 번호(철도의 경우 열차번호)	-경기30두 9417
3	도착일시	N	12	M	공통	-YYYYMMDDHHMM	-200212251500
4	직명	AN..	35	M	EDI	-직책	-기관사
5	성명	A..	20	M	EDI	-승무원의 성명	-홍길동
6	생년월일	A	30		EDI	-생년월일 기재	
7	여권번호	AN	20	M	EDI	-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8	품명 및 규격	AN..	100	M	EDI	-승무원휴대품 명	
9	수량	N..	3	M	EDI	-수량을 기재	
10	구입금액	N..	10	M	EDI	-금액을 기재	
11							
11-1	총기류 소지 유무	A	1	M	EDI	-무기류 유무 'Y' 또는 'N'	
11-2	마약류 소지여부	A	1	M	EDI	-마약류 유무 'Y' 또는 'N'	
	제출세관	AN	3	M	EDI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제출과	AN	2	M	EDI	-입·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 LOOP : 일련번호 4-7  
 일련번호 8-10 L1  
 일련번호 11 L2

\* LOOP 설명  
 L1 : 품목수 만큼 반복  
 L2 : 승무원수 만큼 반복

[별지 제10호 서식] 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정정(취소)신청서

<b>통행차량도착·출발보고 정정(취소)신청서</b>				처리기간
제출번호 - - 호				즉 시
1. 신청인	상 호	성 명	(서명)	
	주 소			
2. 차량종류	<input type="checkbox"/> 철도화차 <input type="checkbox"/> 철도객차 <input type="checkbox"/> 승용자동차(10인이하) <input type="checkbox"/> 승합자동차(11인이상) <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특수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이륜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도착/출발구분	<input type="checkbox"/> 도착 <input type="checkbox"/> 출발			
4. 정정서류 구분	<input type="checkbox"/> 도착/출발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차량용품부록 <input type="checkbox"/> 여객명부 <input type="checkbox"/>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적하목록			
5. 제출번호				
6. 차량등록번호				
7. 정정신청내용				
정정항목명	정정(취소)전	정정(취소)후		
7. 정정사유				
위와 같이 도착·출발보고의 정정(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하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중, 백색)

[별지 제11호 서식] 반입물품적하목록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반입물품적하목록 CARGO MANIFEST		1. 연번(PAGE NO.)					
2. 적하목록 권리번호 :									
3. 철도(승용화차)명	4. 입차번호(차량번호)	5. 입경횟수	6. 국제(연차, 차관)						
7. 출발지	8. 도착지	9. 도착일시							
10. 인관번호 DANK 2452N	11. DIM. TYPE (S: Struck, C: Crissl, E: Empty Container) 외화물-시상 외: 반입화물, T: 한적(화물) 외: 화물용 중량번호	13. C: 수리인 N: 통지차 S: 승차인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 권라이니번호 / 승차번호	15. 품 명	16. 포장개수	17. 총중량(KGS)	18. 특수 화물 코드	19. 반입장소 (화차장소)	20. 비 고

364x297mm 백상지 (1/32) (1/1)



고려 및 수습

[별지 제11-1호] 반입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반입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가. 철도(도로)운항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 PAGE NO.	N. N.	3 3	M	서류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 매수별 일련번호 · 현재 페이지 번호 · 총 페이지 수(전체서류 매수)	21 OF 150 페이지번호 ↓ 전체서류매수
2. 적하목록 권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	AN	11	M	공통	-철도(도로차량)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 연도(NZ) + 철도(도로)회사부호(A4) + 일련번호 (AN4) + CHECK DIGIT(N1)로 구성 · 철도(도로)회사부호는 당해 운송을 책임지는 철도 (도로운송)회사의 영문부호 4자리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 시 미사용 가능 -적하목록관리번호는 적하목록이 관제시스템에 최초 로 제출된 시점에서 확정되며 제출자 임의로 변경불가 -일련번호는 1년 이내에 세관별 통관역(통관장)별로 중 복되지 않도록 회사(대리점)가 사용적으로 부여	- II운송회사가 04년, 통관역 에 도착한 차 량의 적재물품 목록 관리번호 ?수작업: 04-HDAS- C234-2 -EDI: 04-HDASC23 42
2-1. 운송구분	AN	2	M	EDI	-운송구분부호 2자리 기재 · 차량에 의한 경우: "20", 철도에 의한 운송: "30"	
3. 철도회사 (운송회사)명 Name of Carrier	AN. AN	25 4	M	서류 EDI	-당해 열차(차량)의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호 · 관제장에 등록된 회사의 상호를 영문 25자(라이너)로 기재 -관제장에 등록된 회사 코드 기재	-HYUNDAI ASAN Corporation -HDAS
4. 열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 번호 또는 대표 차량번호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대표 차량번호 기재	-경기 95 자 6002
5. 일경횟수	N	3	M	공통	-동일차량 당일 일경횟수 일련번호 기재	
6. 국적 (열차, 차량)	A.	7	M	서류	-차직상의 국적을 기재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 해당국가 약어를 기재 -차직상의 열차/차량의 국적을 기재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국적 → KOREA -국적 → KR
7. 출발지	A. A	20 5	M	서류 EDI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발송역 및 국가명 기재 · 발송일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역(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물품별 출발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 출발지별로 화물명 세를 작성하고, 출발지가 바뀌면 PAGE를 달리한다.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지역코드 · 해당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기재 · 물품별 출발지 다른 경우는 출발지별로 화물정보를 입력	
8. 도착역 (도착지) Port of Discharge	A. A	20 5	M	서류 EDI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 착지명 기재(T/S화물) · 도착지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 착지명 기재(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재	-부산항 →PUSAN [KRPUS] -KRPUS KRRDH
9. 도착일시 Date of arrival	N N	8 8	M	서류 EDI	-차량의 통관장(역) 일경(예정)일을 기재 · 년월일(YYYYMM/DD) -차량의 통관장(역) 일경(예정)일을 기재	-2002/12/31 -20040601

나. 화물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0. 일련번호 MSN HSN	N. N.	4 3	M	공통	-운송회사가 발행한 적하목록별 Master B/L단위의 일 련번호 기재 · Master B/L별로 4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 -House B/L이 있는 경우에는 HSN 기재하고 "20.비 고"란에 화물운송수선업자(포워더)의 부호 기재 · Master B/L별로 일련번호와 연계하기 위하여 화물 운송수선업자(포워더)가 부여한 House B/L 단위의 3자리 이내의 일련번호 · 적하목록관리번호와 조합하여 개별화물에 대한 식 별번호로 사용됨	-1, 2, 3, ... 9999, 9999
11. D/B/L TYPE (S:Simple C:Consol E:Empty Container)	A	1	M	공통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유무 표시 ·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이 없는 경우는 'S', House B/L이 있는 경우는 'C'로, 공컨테이너가 수입되는 경우는 'E'로 기재 · 즉, 운송사가 화주에게 직접 B/L을 발행한 때는 'S', 운송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때는 'C'로 표시 'C'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House B/L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 Express Cargo 중 Sample화물 · D : Express Cargo 중 Document	S C E X D
2) 화물구분 Cargo Classification	A	1	M	공통	-적재물품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반입 및 일시양륙의 구분 · 반입화물(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하여 양륙하는 화 물)의 경우는 'T', 일시양륙 화물(우리나라에서 관제 하기 위하여 양륙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T'로 구분 하여 기재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하여 일시양륙하는 화물은 화 물구분에 "T"를 기재함으로써 일시양륙 신청으로 같음 -서류의 경우 반입화물과 일시양륙화물은 PAGE를 달 리하여 기재	
12. 화물운송장 번호	AN.	16	M	서류	-운송사명의로 발행되는 화물운송장번호 · Master B/L번호를 16자리로 이내로 기재 · House B/L인 경우에는 House B/L번호를 16자리 로 이내로 기재	-HLHI0404010
13. 수하인 Consignee	AN. AN. AN. AN.	35 105 5 35	M C O	서류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한 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맨 앞에 "C"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지시적인 경우 "To Order" 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한 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입력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 (지시적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CISAMYOUNG EXPRESS CO. 371-20, SINSCO -DONG, MAPO-KU, SEOUL, KOREA (02)542-0670



관세수입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통지처 Notify Party	AN.	35	M	서류	-물품도착통지처 · 맨 앞에 "N"을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SAME AS ABOVE"를 기재하고 이하 생략가능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N)HYUNDAI ELECTION CS CO LTD SAN 135-1, A MI - R I, BUBAL-MYCN ICHON-KUN, KYUNGKI-DO, KOREA (032)45-6010
	AN.	105	C		EDI	
	AN.	25	O			
송하인 Shipper	AN.	35	M	서류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맨 앞에 "S"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SIU-FREIGHT AMERICA INC 320, COTREY WAY, SANFRANC ISCO, CA, 94000 U.S.A
	AN.	105	O		EDI	
	AN.	25	O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의 화차번호 또는 차량이 여러 개의 경우 차량번호 모두 기재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경기95자 6902
14.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봉인번호/ Seal No.	AN.	11	C	서류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 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 컨테이너 규격과 종류를 ISO 코드 4자리로 ( )에 기재(ISO/DIS6346.2 사용) ·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I" 표시후 컨테이너로 10자리 이내로 봉인번호 기재 ·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시Seal과 접역Seal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 2개의 봉인번호를 "I" 표시로 연결하여 기재 ·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M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CYUL2196854 (20GP) /541088-7709 881  IN BULK 20GP
	AN.	4	C			
	AN.	10	C			
	AN.	35	O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AN.	11	C	EDI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 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 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 컨테이너 SIZE TYPE CODE(ISO/DIS6346.2) ·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컨테이너별로 선시Seal 및 접역Seal을 모두 입력 ·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AN.	4	C			
	AN.	10	C			
15. 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200	M	공통	-물품별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 생략) ·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	-에 SPEAKERS (ELECTRO- VOICE BRAND) SPEAKERS ETC
16. 포장개수 No of PKGS	N.	8	M	공통	-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 기준에 따른 물품의 포장개수 ·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각 포장단위별 포장개수를 합산하여 기재(PCS단위로 기재할 필요 없음) · 산물(BULK CARGO)의 경우 "0"으로 기재 · 포장되지 않고 수량단위로 운송되는 물품(예 : HANGER CONTAINER)은 당해물품 수량을 기재 · FCL화물인 경우 B/L별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하나의 B/L에 컨테이너가 여러 대인 경우는 컨테이너별 포장개수를 기재 · LCL화물인 경우 B/L별로 포장개수를 기재 · 관세청 봉제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 · 포장종류가 2종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중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를 기재 · 산물은 기재생략	-1,234,567CT
17. 중량 (KGS) Gross Weight	N.	14	M	서류	-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합계 · 먼저 "I"을 기재한 후, Kg단위로 환산한 포장중량을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 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	-1)E23,456.05
	N.	14	M	EDI	-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합계 ·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 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	
18. 특수 화물코드 Special Goods Code	AN.	4	C	공통	-위험물품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 기재 · 검역대상물품 및 보은/보냉물품인 경우 다음 코드 기재 · 동물검역대상 물품 : QA · 식물검역대상 물품 : QP · 보은/보냉물품 : RF · 특수화물 코드가 복수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전부 기재	-12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9. 반입장소 (하차장소)	AN	10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차물품 구분코드(A2) + 보세구역번호(NS)</li> <li>· 하차물품 구분코드(A2)</li> <li>· ID : 입항전반입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 즉시 차상반출</li> <li>· IT : 하차전 보세운송신고 수리물품 중 즉시 차상반출 하는 물품</li> <li>· SD : 입항전반입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장소 장치 후 반출물품</li> <li>· ST : 하선전 운송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장소 장치후 반출 물품</li> <li>· GD : 하차장소 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봉관되는 물품</li> <li>· GT : 하차장소 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보세운송 되는 물품</li> <li>· 보세구역번호(NS)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보세구역 부호 기재</li> </ul>	
20. 비고	AN.	25	C	서류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호 기재	
	AN.	4	C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AN.	4	C	EDI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영문부호 4자리	
※ 합계 Summary	N.	4	M	공통	· 적재물품목록별 주요 관리항목단위 합계	
	N.	4	M		B/L 총개수	
	N.	4	M		B/L Type이 'C'인 M B/L 총개수(혼재화물건수)	
	N.	4	M		물품적입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N.	14	M		공관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N.	12	M		· 적하목록당 물품 총중량	
N.	8	M	· 적하목록당 물품 총용적			
N.	8	M	· 적하목록당 물품 총포장개수			
◎재출입시	-	-	-	서류	· 세관접수인으로 같음	
	N	10	M	EDI	· 적재물품목록 제출일시 · 세관시스템에서 적하목록 수신시 수신인시를 자동등록	- 9001251000 (GR L 25 1030)
◎접수확인자	-	-	-	서류	· 수작업시 기재하지 않음	
	N	6	M	EDI	· 접수담당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직원코드번호 입력 · EDI로 수신된 적재물품목록정보를 확인하면 세관담당자 직원코드 자동 입력	- 810234

[별지 제12호 서식] 반출물품적하목록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반입물품적하목록 CARGO MANIFEST		1. 연번(PAGE No.)		
3. 발효/운송회사명		4. 열차번호(차량번호)		2. 적하부의 관리번호 :		
5. 출경항수		6. 목적(역지, 차량)				
7. 출발지		8. 도착지		9. 출발일시		
10. 운송장번호	11. 화물구분 (E : 반출화물 R : 이적화물)	12. 화차번호 (차량번호) (열차번호) 열차번호	13. 총 명	14. 수출신고번호 (수입/화물관리번호)	15. 포장개수단위	16. 중량(Kg)

361x25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12-1호 서식] (반출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반출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가. 철도(도로)운행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 PAGE NO.	N. N.	3 3	M	서류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 매수번호 일련번호 · 현재 페이지 번호 · 총 페이지 수(전체서류 매수)	21 OF 150 페이지번호 ↓ 전체서류매수
2. 적하목록 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	AN	11	M	공통	-철도(도로차량)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철도(도로)회사부호(A4) + 일련번호(LAN4) + CHECK DIGIT(N1)로 구성 · 철도(도로)회사부호는 당해 운송을 책임지는 철도(도로운송)회사의 영문부호 4자리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 시 미사용 가능 -적하목록관리번호는 적하목록이 관제정시스템에 최초로 제출된 시점에서 확정되며 제출자 임의로 변경불가 -일련번호는 1년 이내에 세관별 통관역(통관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대리점)가 자율적으로 부여	H운송회사가 04년, 통관역에 도착한 차량의 적하목록품목 관리번호는?  ·수작업: 04-HDAS-1234-5  ·EDI: 04-HDAS12345
2-1. 운송구분	AN	2	M	EDI	-운송구분부호 2자리 기재 · 차량에 의한 경우: "20", 철도에 의한 운송: "30"	
3. 철도회사 (운송회사)명 Name of Carrier	AN.	25	M	서류	-당해 열차(차량)의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호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HYUNDAI ASAN Corporation
4. 열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 코드 기재 · 열차 번호 또는 대표 차량번호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대표 차량번호 기재	HDAS  -경기 95 자  6002
5. 운송횟수	N	3	M	공통	-동일차량 당일 운송횟수 일련번호 기재	
6. 국적 (열차, 차량)	A. A	7 2	M M	서류 EDI	-차적상의 국적을 기재 · 관세청 문제부호표상 해당국가 약어된 기재 -차적상의 열차/차량의 국적을 기재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국적  → KOREA  -국적 → KR
7. 출발지	A. A	20 5	M M	서류	-차량에 실물을 적재한 발송역 및 국가명 기재 · 발송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역(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물품별 출발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 출발지별로 화물명 세를 작성하고, 출발지가 바뀌면 PAGE를 달리한다.	
	A	5	M	EDI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지역코드 · 해당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기재 · 물품별 출발지 다른 경우는 출발지별로 화물정보를 입력	
	A. A	20 5	M M	서류 EDI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취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도착지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취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재	-부산항  →PUSAN [KRIPUS]  -KRPUS
8. 도착역 (도착지) Port of Discharge	A. A	20 5	M M	서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취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재	
9. 도착일시 Date of arrival	N N	12 12	M M	서류 EDI	-차량의 통관장(역) 출경(예정)일시를 기재 · 년월일(YYYY/MM/DD HHMM) -차량의 통관장(역) 출경(예정)일시를 기재	-2004/09/01 10:30  -200409011030

나. 화물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0. 운송장번호	AN	16	M	공통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운송장번호기재 (16자 이내로 기재)	-HDAS041001234567
11. 화물구분 Cargo Classification	A	1	M	공통	-적하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반출 및 이적의 구분 · 반출화물의 경우는 'E', 이적화물인 경우에는 'R'로 구분하여 기재	-E
12. 화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의 화차번호 또는 차량이 여러 개의 경우 차량번호 모두 기재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경기 95 자  6002
12.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용인번호/Seal No.	AN.	11	C	서류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기재 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운송장번호가 있을 경우 운송장번호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컨테이너 규격과 종류를 ISO 코드 4자리로 ( )에 기재 (ISO/DIS6346.2 사용) -운송회사의 컨테이너용인번호 · "J"표시후 컨테이너번호 10자리 이내로 용인번호 기재 ·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시Seal과 검역Seal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용인번호를 "J"표시로 연결하여 기재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GM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CYUL2199854 (20GP) /541088-7709881  IN BULK  20GP
13. 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11	C	EDI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 번호를 반드시 기재 ·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운송장번호가 있을 경우 운송장번호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AN	4	C		-컨테이너 SIZE TYPE CODE(ISO/DIS6346.2)	
	AN.	10	C		-운송회사의 컨테이너용인번호 · 컨테이너번호로 선시Seal 및 검역Seal을 모두 입력	
	AN.	35	C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13. 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200	M	공통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 생략)	-에 SPEAKERS (ELECTRO-VOICE BRAND) SPEAKERS ETC



전자  
인  
수  
인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4. 수출신고 번호 (수입화물 관리번호)	AN	18	M	공통	-화물구분이 'E(수출화물)'인 경우 수출신고번호 기재 -화물구분이 'R(이적화물)'인 경우 수입화물관리번호 기재 -NCV 기재 불가	
15. 포장개수 /단위	A N AN	1 8 2	M M M	EDI	-분할선적여부 (Y/N) -포장개수 -포장종류 부호	
16. 중량	N	14	M	EDI	-중량 : Kg단위로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육로운송회사 신고서

육로운송회사 신고서									
① 신고(등록)부호						② 부호신고 세관코드			
③ 육로운송회사명		(한글) (영문)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국 적	
⑧ 주 소		본 사							
		지 점							
⑨ 전화번호 (FAX 번호)								FAX	
⑩ 메일주소									
⑪ 작성일자		년 월 일		⑫ 작성자명		(인)			
<p>관세법 제149조·제150조 및 남북한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인) 세 관 장 귀하</p>									
<p>※ 작성시 유의사항</p> <p>1. ① : 육로운송회사 부호를 영문 4자리로 기재하되, 이미 신고한 육로운송회사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p> <p>2. ② : 신고서류 제출할 세관코드 기재(서울세관은 010, 속초출장소는 101 등)</p> <p>3. ③~⑥ : 사업자등록증 참조</p> <p>4. ⑦ : 육로운송회사 소속 국가명</p> <p>5. ⑧ : 본사 주소 및 국내 주요지점 주소 기재</p>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Ⅲ-9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 칙

**제1-1 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규정 등에 준하여 남북간 접경을 왕래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 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동력차, 화차, 객차 및 특수차 등을 말한다.
2. '관세통로'라 함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로 및 우리나라의 철로중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3. '통관역'이라 함은 남북접경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남북간을 왕래하는 철도차량의 출입

#### 제1 절 철도차량 운송회사의 등록

**제2-1 조 (육로운송회사 등록)** 철도차량으로 반출입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육로운송회사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2 절 철도차량의 출발 및 도착보고

**제2-2 조 (출발·도착보고 및 제출서류)** ①통관역장은 철도차량이 통관역을 출발하려고 하는 때 또는 통관역에 도착한 때에는 철도차량출발·도착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
2. 여객명부(별지 제4호 서식)
3. 승무원 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별지 제5호 서식)
4.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8호 서식)
5. 그 밖에 북측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서류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1호의 철도용품목록 및 제3호 중 승무원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제출서류 중에서 여객명부, 반입물품적하목록 또는 반출물품적하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되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통관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필  
요  
사  
유

**제 2-3 조 (출발허가)** 통관역장은 열차가 통관역을 출발하기 전까지 제 2-2조에 따른 '철도차량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출발 및 도착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이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 정정(취소)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정정·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 제 3 장 철도차량 검사 및 휴대품 통관 등

**제 3-1 조 (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남북간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확인(전자적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2 조 (반출입물품과 휴대품의 통관 및 화물운송 등)** ①철도차량으로 반출입되는 물품 및 철도차량의 승무원과 여객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및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다.

②그 밖에 반출입되는 화물에 관한 하차·적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의 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 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 3-3 조 (접경세관장의 위임사무)** 세관장은 통관역,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3-4 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및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3-5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8.20>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육로운송회사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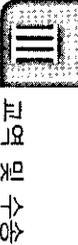
<b>육로운송회사 신고서</b>			
① 신고(등록)부호		② 부호신고 세관코드	
③ 육로운송회사명	(한글) (영문)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국 적
⑧ 주 소	본 사 지 점		
⑨ 전화번호 (FAX 번호)		FAX	
⑩ 메일주소			
⑪ 작성일자	년 월 일	⑫ 작성자명	(인)
관세법 제149조·제150조 및 「남북간 철도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 세 관 장 귀하			
※ 작성시 유의사항 1. ① : 육로운송회사 부호를 영문 4자리로 기재하되, 이미 신고한 육로운송회사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2. ② : 신고서류 제출할 세관코드 기재(서유세관은 010, 속초출장소는 101 등) 3. ③~⑥ : 사업자등록증 참조 4. ⑦ : 육로운송회사 소속 국가명 5. ⑧ : 본사 주소 및 국내 주요지점 주소 기재			
첨부서류	1. 민원인 제출 : 없음 2. 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2호 서식]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서

<b>철도차량</b>		<input type="checkbox"/> 출발보고서 <input type="checkbox"/> 도착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 제출번호 : □□□□-□□□□□□-□□□□□□ * 철도차량등록증명서번호+운행년도+일련번호		○ 적하목록번호 :		
1.차량회사명	2.차량국적	3.차량종류	4.운행일자번호(편명)	
5.총 화차수	6.화차등록증명번호	7.총 객차수	8.객차등록증명번호	
9.출발지 국가	10.최초 출발지	11.경유(전 출발지)지		
12.출발(도착)일시	13.도착(출발)예정일시	14.목적지(최종목적지)		
15.적재물품	주요물품	열차번호	총 포장수(C/T)	총중량(kg)
16.승무원수 : 총 명 (한국인 :      외국인 :      )		17.여객수 : 총 명 (한국인 :      외국인 :      통과여객수 :      )		
18.첨부서류 철도용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여객명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적하목록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19.보고일자, 서명 보고일자 : □□□□/□□/□□ (년/월/일) 서명 (인)		
관세법 제149조 제1항 및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출발(도착)보고를 합니다.				
○ ○ 세 관 장 귀하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2-1호]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서 작성요령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서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제출번호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 운행년도 일련번호	AN AN AN	12 2 5	M M M	공통 공통 공통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12자리) -운행하는 연도물 기재 -증명번호별 운행일련번호기재	200500009729 06 00002
	출경·입경 구분	N	1	M	서류 EDI	-출발보고서, 도착보고서 출경: 1, 입경: 2	-출발보고서 -1, 2
	적하목록번호	AN	11	C	공통	-적하목록번호 기재 *적재화물어 없는 경우 기재생략	93110010130
1	차량회사명	AN..	25	M	서류	-당해 차량의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한글 7자 이내로 기재	-철도공사
2	차량국적	A	2	M	공통	-차량의 국적, ISO국가코드	-KR, KP
3	차량종류	AN	1	M	공통	-동력차: 'T' 객차: 'P' 화차: 'C', 기타 'Z'	-P, Z
4	운행연차번호	AN..	12	M	공통	-해당연차의 운행번호(번명)	-CT201
5	총 화차수	N	2	C	공통	-화차의 개수물 기재	-1, 12
6	화차등록증명번호	AN	12	C	공통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12자리)	-200500009729
7	총 객차수	N	2	C	EDI	-객차의 개수물 기재	-2, 12
8	객차등록증명번호	AN	12	C	공통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12자리)	-200500009729
9	출발지 국가	A	4	M	공통	-출발하는 차량의 국가명(ISO 국가코드)	-KR
10	최초 출발지	A	12	M	공통	-출발하는 차량의 최초 철도역명	-문산역
11	경유지	A	12	C	공통	-최종적으로 경유하는 철도역명	-순하역
12	출발(도착)일시	N	12	M	공통	-차량이 봉관역에 출발(도착)하는 일 시 'YYYYMMDDHH24MI'	-200212251430
13	도착(출발)예정 일시	N	12	M	공통	-차량이 봉관역에 도착(출발)할 예정 일시 'YYYYNDDHH24MI'	-200212251800
14	목적지	A	12	M	공통	-차량의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목적 도시(역)명	-개성역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5	적재물품						
15-1	-주요품명	AN..	20	C	EDI	-주요품명을 기재하고 외 0종으로 기재	-TV의 3종
15-2	-차량번호	AN..	12	C	EDI	-주요물품이 적재된 차량번호를 기재	-PX001245
15-3	-수량	N	5	C	EDI	-수량물 개수물 기재	-65
15-4	-중량	N	6	C	EDI	-수화물의 총 중량을 기재(KG)	-9999.99
16	승무원 수						
16-1	-한국인	N..	3	C	공통	-T/S(통과여객)를 제외한 내국인 승무원수	-20
16-2	-외국인	N..	3	C	공통	-T/S(통과여객)를 제외한 외국인 승무원수	-15
17	여객수						
17-1	-한국인	N	5	C	공통	-T/S(통과여객)를 제외한 내국인 승객수	-250
17-2	-외국인	N	5	C	공통	-T/S(통과여객)를 제외한 외국인 승객수	-150
17-3	-통과여객수	N	5	C	공통	-순수한 통과여객(국적 불문)	-50
18	첨부서류						
18-1	-철도용품 목록	N	1	C	EDI	-철도용품목록 세관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8-2	-승객명부	N	1	C	EDI	-승객명부 세관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8-3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N	1	C	EDI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세관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8-4	-적하목록	N	1	C	EDI	-적하목록 제출여부	유무란 체크
19	보고일자	N	8	M	EDI	-'YYYYMMDD'	-20020607
	전수일시	N	12	X	EDI	-'YYYYMMDDHH24MI'	-200206071505
	수리일시	N	12	X	EDI	-'YYYYMMDDHH24MI'	-200206071635
	제출세관	AN	3	M	EDI	-임·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석인쇄 없 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010
	제출과	AN	2	M	EDI	-임·출항보고 세관부호, 서석인쇄 없 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12

[별지 제3호서식] 철도용품목록

<b>철도용품목록</b>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최종 <input type="checkbox"/> 취소	처리기간
◎ 제출번호 : □□□□-□□□□□□□□-□□-□□□□□□ * 철도차량등록증명서번호+운행년도+일련번호			주시
1. 차량 종류	2. 차량번호	3. 도착/출발 일시	
4. 총기류/미약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5. 외지 차량용품 구입 또는 외지수리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6. 일련번호	7. 품명 및 규격	8. 수량	9. 신고물품 여부
10. 제출일자 및 제출자 서명 <div style="text-align: right;">제출일자 □□□□/□□/□□ (년/월/일) 서명 : : (인)</div>			
관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목록을 제출합니다.  <div style="font-size: 2em; letter-spacing: 1em;">○ ○ 세 관 장    귀하</div>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3-1호 서식] 철도용품목록 작성요령

**철도용품목록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성예
	제출번호 철도차량등록번호 운행년도 일련번호	AN AN AN	12 2 5	M M M	공통 공통 공통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12자리) -운행하는 연도를 기재 -증명번호별 운행일련번호기재	200500009729 06 00002
1	차량종류	AN	1	M	공통	-재차: 'P' 화차: 'C', 기타: 'Z'	-T1
2	차량번호	AN	9	M	공통	-철도차량의 고유번호	-PX001245
3	도착/출발 일시	N	12	M	EDI	-차량이 봉관역에 도착(출발)하는 일 시 'YYYYMMDDHH24MI'	-200206071500
4	총기류/미약류	A	1	M	EDI	-총기류 소지여부 '유': Y, '무': N	-N
5	외지 차량용품 구입 또는 외지수리 유무	A	1	M	EDI	- 'Y' 또는 'N'	-N
6	일련번호	N	3	M	EDI	-철도용품 신고서상의 기재 일련번호	-1
7	품명 및 규격	AN	100	M	EDI	-철도용품명	-분말식소화기 DX-032, 3.3kg
8	수량	N	3	M	EDI	-철도용품의 수량을 기재	-3
9	신고물품 여부	A	1	M	EDI	- 'Y' 또는 'N'	-N
10	제출일자	N	8	M	EDI	- 'YYYYMMDD'	-20020607
	제출세관	AN	3	M	EDI	-출발(도착)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010
	제출과	AN	2	M	EDI	-출발(도착)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10

\* LOOP : 일련번호 6   일련번호 9   L1

\* LOOP 설명  
L1 : 철도용품수 만큼 반복



제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여객명부

<b>여객명부</b>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최종 <input type="checkbox"/> 취소	페이지 번호 /
◎ 제출번호 : □□□□-□□□□□□□□-□□□□□□□□ * 철도차량등록증명서번호+운행년도+일련번호					1.차량번호	
2.일련번호	3.성명	4.성별	5.생년월일	6.여권번호	7.국적	8.탑승지
관세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명부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margin-top: 10px;"> <span>○ ○</span> <span style="font-size: 24px;">세관장</span> <span>귀하</span> </div>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 승객 내역 초과시 별지 계속 기록

[별지 제4-1호] 여객명부 작성요령

여객명부 작성요령

NO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제출번호	AN	12	M	공통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12자리)	200500009729
	철도차량등록번호	AN	2	M	공통	-운행하는 연도를 기재	06
	운행년도	AN	5	M	공통	-증명번호별 운행일련번호기재	00002
	일련번호	AN	5	M	공통		
1	차량번호	AN.	9	M	공통	-철도차량의 고유번호	-PX001245
2	일련번호	A..	20	M	공통	-여객의 일련번호를 기재	-1
3	성명	AN..	12	M	공통	-탑승객의 성명	-홍길동
4	성별	A	1	M	공통	-남자 'M' 여자 'F'	-M
5	생년월일	A..	6	C	공통	-생년월일	-570520
6	여권번호	A..	30	C	공통	-여권소지자의 경우	-TL0235720
7	국적	A..	60	M	서류	-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국적명	-대한민국
7-2	국적부호	A	2	M	EDI	ISO 국가코드	-KR
8	탑승지	AN..	12	M	EDI	-철도역명 또는 철도역코드부호 (도라산역: '110557' 제진역: '200000')	-도라산역 -110557
	제출일시	N	12	M	EDI	-'YYYYMMDDHH24MI'	-200206081300
	제출세관	AN	3	M	EDI	-출발(도착)보고한 세관의 세관부호 (통계부호표 참조)	-010
	제출과	AN	2	M	EDI	-출발(도착)보고한 세관의 과부호 (통계부호표 참조)	-10

\* LOOP : 일련번호 2       L1  
 일련번호 8       L1

\* LOOP 설명  
 L1 : 총 인원만큼 반복

[별지 제5호 서식] 승무원명부및휴대품목록

<b>승무원명부 및 휴대품목록</b>							◎ 제출번호 : □□□□-□□□□□□□□-□□-□□□□□□ * 철도차량등록증명서번호+운행년도+일련번호			
1. 차량종류		2. 차량번호			3. 도착 일시					
4. 직명	5. 성명	6. 생년월일	7. 여권번호	휴대품 목록(소지한 경우에만 기재)				II 총기/마약류 소지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8. 품명 및 규격	9.수량	10. 구입 금액 (천원)				
12. 제출일자 및 제출자 서명										
제출일자 □□□□/□□/□□ (년/월/일)										
서명 : (인)										
관세법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을 제출합니다.										
<b>○ ○ 세 관 장 귀 하</b>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5-1호] 승무원명부및휴대품목록작성요령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작성요령**

N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제출번호						
	철도차량등록번호	AN	12	M	공통	-철도차량등록증명번호(12자리)	200500009729
	운행년도	AN	2	M	공통	-운행하는 연도를 기재	06
	일련번호	AN	5	M	공통	-증명번호별 운행일련번호기재	00002
1	차량종류	AN	2	M	공통	-차차: 'P' 화차: 'C', 기타: 'Z'	-P,C
2	차량번호	AN	9	M	공통	-철도차량의 고유번호	-PX001245
3	도착일시	N	12	M	공통	-YYYYMMDDHH24MI	-200212251500
4	직명	AN	35	M	EDI	-직책	-기관사
5	성명	A	20	M	EDI	-승무원의 성명	-홍길동
6	생년월일	A	30	M	EDI	-생년월일 기재	-601010
7	여권번호	AN	20	M	EDI	-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XF1234567
8	품명 및 규격	AN	100	M	EDI	-승무원휴대품명	-캠코더 SONY ct-100
9	수량	N	3	M	EDI	-수량을 기재	-2
10	구입금액	N	10	M	EDI	-금액을 기재(천원단위)	-4,010
11							
11-1	총기류 소지 유무	A	1	M	EDI	-무기류 유무 'Y' 또는 'N'	-유무란체크
11-2	마약류 소지 여부	A	1	M	EDI	-마약류 유무 'Y' 또는 'N'	
	제출세관	AN	3	M	EDI	-출발(도착)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제출과	AN	2	M	EDI	-출발(도착)보고 세관부호, 서식인쇄 없이 EDI 전송항목으로만 사용 (관세청에서만 사용)	

\* LOOP : 일련번호 4-7  
 일련번호 8-10    L1    L2  
 일련번호 11

\* LOOP 설명  
 L1 : 품목수 만큼 반복  
 L2 : 승무원수 만큼 반복



관세법 제149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 정정(취소)신청서

<b>철도차량 출발·도착보고 정정(취소)신청서</b>			처리기간
○ 제출번호 - - 호			즉 시
1. 신청인	상 호	성 명	(서명)
	주 소		
2. 차량종류	<input type="checkbox"/> 동력차 <input type="checkbox"/> 객차 <input type="checkbox"/> 화차 <input type="checkbox"/> 특수차( )		
3. 도착/출발구분	<input type="checkbox"/> 출발 <input type="checkbox"/> 도착		
4. 정정서류 구분	<input type="checkbox"/> 출발/도착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철도용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여객명부 <input type="checkbox"/>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 <input type="checkbox"/> 적하목록		
5. 제출번호			
6. 차량번호			
7. 정정신청내용			
정정항목명	정정(취소)전	정정(취소)후	
8. 정정사유			
위와 같이 출발·도착보고의 정정(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하			

\* 용지규격: 세로297mm×가로210mm(A4종, 백색)

[별지 제7호 서식] 반입물품적하목록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반입물품적하목록 CARGO MANIFEST		1. 연번(PAGE NO.)						
3. 철도운송회사명		4. 열차번호(차량번호)		2. 적하목록 관리번호 :						
7. 출발지		8. 도착지(도착지)		5. 입경횟수						
				6. 국적(열차)						
10. 열차번호 IMSN ZISEN		11. UICL TYPE (S: Sample, C: Car-L, E: Empty Containers) 차량종류 (H: 편입번호, T: 한적화차) ↓ E: 화물운송열차	13. C: 수하인 N: 통신회 S: 승하인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원대이나번호) /용인번호	15. 품 명	16. 포장개수	17. 총중량(KGS)	18. 특수 화물 코드	19. 반입장소 (취소장소)	20. 비 고

\* 11~20mm 백상지 (A4종)

[별지 제7-1호] 반입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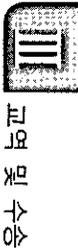
반입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가. 철도운항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 PAGE NO.	N. N.	3 3	M	서류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 매수별 일련번호 · 현재 페이지 번호 · 총 페이지 수(전체서류 매수)	21 OF 150 페이지번호 ↓ 전체서류매수
2. 적하목록 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	AN	11	M	공통	-철도차량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철도회사번호(A1) + 일련번호(AN4) · CHECK DIGIT(N1)"로 구성 · 철도회사번호는 당해 운송을 책임지는 철도회사 의 영문부호 4자리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시 미 사용 가능 · 적하목록관리번호는 적하목록이 관제정보시스템에 최초 로 제출된 시점에서 확정되며 제출자 임의로 변경불가 · 일련번호는 1년 이내에 세관변경 통관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대리점)가 자율적으로 부여	-H운송회사가 04년, 통관역 에 도착한 차 량의 적제물 품목록 관리 번호는? -수작업: 04-HDAS-C 234 2 -EDI: 01-HDASC234E
2-1.운송구분	AN	2	M	EDI	-운송구분부호 2자리 기재 (철도에 의한 운송: "30")	-30
3. 철도회사 (운송회사)명 Name of Carrier	AN. AN	25 4	M M	서류 EDI	-당해 열차(차량)의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호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상호를 영문 25자리아내로 기재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 코드 기재	-HYUNDAI ASAN Corporation - HDAS
4. 열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 번호	-PX001245
5.입경횟수	N	3	M	공통	-동일차량 동일 입경횟수 일련번호 기재	-3, 5
6. 국적 (열차, 차량)	A.	7	M	서류 EDI	-차적상의 국적을 기재 · 관세청 통제부호표상 해당국가 약어를 기재 -차적상의 열차/차량의 국적을 기재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국적 → KOREA -국적 → KR
7. 출발지	A. A	20 5	M M	서류 EDI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발송역 및 국가명 기재 · 발송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역(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 ] 에 기재 -물품별 출발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 출발지별로 화물명 세를 작성하고, 출발지가 바뀌면 PAGE를 달리한다.	- 부산항 → PUSAN [KRPSU]
8. 도착역 (도착지) Port of Discharge	A. A	20 5	M M	서류 EDI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도착지명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를 [ ] 에 기재	- KRDRS KRRDH
9. 도착일시 Date of arrival	N N	8 8	M M	서류 EDI	-차량의 통관역 입경(예정)일용 기재 · 년월일(YYYY/MM/DD) - 차량의 통관장(역) 입경(예정)일용 기재	- 2002/12/31 - 20040901

나. 화물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0.일련번호 MSN HSN	N. N.	4 3	M C	공통	-운송회사가 발행한 적하목록별 Master B/L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별로 4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 · House B/L이 있는 경우에는 HSN 기재하고 "20. 비고"란에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부호 기재 · Master B/L별로 일련번호와 연계하기 위하여 화 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부여한 House B/L 단 위의 3자리 이내의 일련번호 · 적하목록관리번호와 조합하여 개별화물에 대한 식 별번호로 사용됨	-1, 2, 3, ..., 9998, 9999
11. 1) B/L TYPE (S:Simple C:Consol E:Empty Container)	A	1	M	공통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유무 표시 · Master B/L에 종속되는 House B/L이 없는 경우 는 'S', House B/L이 있는 경우는 'C'로 공관데이 너가 수입되는 경우는 'E'로 기재 · 즉, 운송사가 화주에게 직접 B/L을 발행한 때는 'S', 운송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때는 'C'로 표시 · 'C'로 표시된 경우 별도로 House B/L내역을 기재 한 환재화물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 Express Cargo 중 Sample화물 · D : Express Cargo 중 Document	-S -C -E -X -D
2) 화물구 분 Cargo Classificati on	A	1	M	공통	-적재물품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반입 및 임시양육의 구분 · 반입화물(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하여 양육하는 화 물)의 경우는 'T', 임시양육 화물(우리나라에서 환적 하기 위하여 양육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T'로 구분 하여 기재 ·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하여 임시양육하는 화물은 화 물구분에 'T'를 기재함으로써 임시양육 신청으로 감을 · 서류의 경우 반입화물과 임시양육화물은 PAGE를 달 리하여 기재	-I, T
12. 화물운송장 번호	AN.	16	M	서류	-운송사명의로 발행되는 화물운송장번호 · Master B/L번호를 16자리로 이내로 기재 · House B/L인 경우에는 House B/L번호를 16자리 로 이내로 기재	-HILH0404010
13. 수하인 Consignee	AN. AN. AN. AN. AN.	35 105 5 5 35	M C O C O	서류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 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맨 앞에 "C"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지시적인 경우 "To Order~" 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CISAMYOUNG EXPRESS CO 371-20, SINSEO -DONG, MAPO-KU, SEOUL, KOREA (02)542-0870
	AN. AN.	35 105	M C	EDI	-Master B/L상 물품의 수취인 및 소유자 또는 정당하 게 배서된 화물운송장의 소지자 · 수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입력 · 수하인 성명 또는 상호 (지시적인 경우 "To Order~"를 기재) · 수하인 주소 · 수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통지처 Notify Party	AN.	35	M	서류	-물품도착통지처 · 맨 앞에 "N"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SAME AS ABOVE"를 기재하고 이하 생략가능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N)HYUNDAI ELECTRON CS CO LTD SAN 135-1, A M I - R I, DUAL-MYON ICHON-KUN, KYUNGKI-DO, KOREA (0332)45-6010		
		105 25	C O					
	AN.	35	M	EDI	-물품도착통지처 · Consignee가 "To order~"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통지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통지처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는 생략 - 통지처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통지처 성명 또는 상호 · 통지처 주소 · 통지처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105 25	C O					
송하인 Shipper	AN.	35	M	서류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 맨 앞에 "S"를 기재한 후 계속하여 내용을 기재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SJU-FREIGHT T AMERICA INC 320, C O R E Y W A Y, SANFRANCISCO, CA, 94000 U.S.A.		
		105 25	M O					
	AN.	35	M	EDI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송하인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를 기재 · 송하인 성명 또는 상호 · 송하인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명/도시명 기재) · 송하인의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			
		105 25	M O					
14. 화차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의 화차번호 또는 차량이 여러 개의 경우 차량번호 모두 기재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정기95차 0902		
14.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AN.	11	C	서류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CYUL219864 (20GP) /541088-7709881  IN BULK		
		4	C				-컨테이너 규격과 종류를 ISO 코드 4자리로 ( )에 기재 (ISO/DIS6346.2 사용)	20GP
		10	C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표시후 컨테이너별로 10자리 이내로 봉인번호 기재 ·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사Seal과 검역Seal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 2개의 봉인번호를 "/"표시로 연결하여 기재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M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자리 이내로 기재	
	AN.	35	O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4.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AN.	11	C	EDI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수입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B/L이 있을 경우 B/L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AN.	4	C	-컨테이너 SIZE TYPE CODE(ISO/DIS6346.2)	
			AN.	10 35	C C	-운송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컨테이너별로 선사Seal및 검역Seal을 모두 입력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포장기호 및 번호를 3자리 이내로 기재.	
15. 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200	M	공통	-물품명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격은 기재 생략) ·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품명을 기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	-예 SPEAKERS (ELECTRO- VOICE BRAND) SPEAKERS ETC	
16. 포장개수 No. of PKGS	N.	8	M	공통	-운송용 포장종류의 구분 기준에 따른 물품의 포장개수 ·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각 포장단위별 포장개수를 합산하여 기재(PCS단위로 기재할 필요 없음) · 산물(BULK CARGO)의 경우 "U"으로 기재 · 포장되지 않고 수량단위로 운송되는 원통(예 : HANGER CONTAINER)은 당해물품 수량을 기재 · FCL화물인 경우 B/L별 총포장개수를 기재하고, 하나의 B/L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인 경우는 컨테이너별 포장개수를 기재 · LCL화물인 경우 B/L별로 포장개수를 기재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 · 포장종류가 2종이상인 경우 포장종류별 물품 총중량이 많은 쪽의 포장단위를 기재 · 산물은 기재생략	-1,234,567CT	
17. 중량 (KGS) Gross Weight	N.	14	M	서류	-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합계 · 먼저 "1)"을 기재한 후, Kg단위로 환산한 포장중량은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 · 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	-1123,456.05	
			AN.	14	M	EDI	-Master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합계 ·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 운송용기(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은 컨테이너의 중량은 제외함)

항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8. 특수 화물코드 Special Goods Code	AN..	4	C	공통	- 위험물품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 기재 - 검역대상물품 및 보온/보냉물품인 경우 다음 코드 기재 · 동물검역대상 물품 : QA · 식물검역대상 물품 : QP · 보온/보냉물품 : RF - 특수화물 코드가 복수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코드를 전부 기재	-12
19. 반입장소 (하차장소)	AN	10	M	공통	- 하차물품 구분코드(A2) + 보세구역부호(N8) - 하차물품 구분코드(A2) · ID : 입항전반입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 즉시 차상반출 · IT : 하차전 보세운송신고 수리물품 중 즉시 차상반 출하는 물품 · SD : 입항전반입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장소 장치 후 반출물품 · ST : 하차전 운송신고 수리물품 중 하차장소 장치후 반출 물품 · GD : 하차장소 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통관되는 물품 · GT : 하차장소 장치후 또는 도착과 동시에 보세운송 되는 물품 - 보세구역부호(N8) :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보세구역 부호 기재	-ID01001024
20. 비고	AN..	25	C	서류	-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 호 기재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영문부호 4자리	
	AN..	4	C		-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 호 기재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영문부호 4자리	
	AN..	4	C	EDI	- House B/L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부 호 기재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영문부호 4자리	
※ 합계 Summary	N..	4	M	공통	- 적재물품목록면 주요 관리항목단위 합계 - B/L 총개수 - B/L Type이 'C'인 M B/L 총개수(혼재화물건수) - 물품직입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 공판컨테이너 총개수(규격 구분없음) - 적하목록당 물품 총종류 - 적하목록당 물품 총용적 - 적하목록당 물품 총포장개수	
	N..	4	M			
	N..	4	M			
	N..	4	M			
	N..	14	M			
	N..	12	M			
	N..	8	M			
○제출인시	-	-	-	서류	- 세관접수인으로 같음	
○제출인시	N	10	M	EDI	- 적재물품목록 제출인시 · 세관시스템에서 적하목록 수신시 수신일자를 자동등록	-9601251030 (96.1.25.10:30)
○접수확인자	-	-	-	서류	- 수작업시 기재하지 않음	
○접수확인자	N	6	M	EDI	- 접수담당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직원코드번호 입력 · EDLR 수신된 적재물품목록정보를 확인하면 세관 담당자 직원코드 자동 입력	-810234

[별지 제8호 서식] 반출물품적하목록

대한민국세관 KOREA CUSTOMS SERVICE		반입물품적하목록 CARGO MANIFEST		1. 원면(PAGE NO)	
3. 원도(운송회사명)		4. 열차번호(차량번호)		5. 출경회수	
7. 출발지		K. 도착역(도착지)		9. 출발일시	
10. 운송장번호		11. 화물구분 (B : 반출화물 R : 이적화물)		12. 화사번호 (화물번호) 관세사 번호 승인번호	
13. 용 명		14. 수출신고번호 (수입화물관리번호)		15. 포장숫자(단위)	
				16. 중량(Kg)	

361x257mm(배상지 40g/m)



고여 및 수송

[별지 제8-1호 서식] 반출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반출물품적하목록 작성요령

가. 철도(도로)운항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1. PAGE NO.	N. N.	3 3	M	서류	-서류로 작성되는 경우의 서류 매수별 일련번호 · 현재 페이지 번호 · 총 페이지 수(전체서류 매수)	21 OF 150 페이지번호 ↓ 제서류매수
2. 적하목록 관리번호 Manifest Reference No.	AN	11	M	공통	-철도(도로차량)회사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제출 일련번호 · "연도(N2) + 철도(도로)회사부호(A4) + 일련번호 (AN4) + CHECK DIGIT(N1)"로 구성 · "철도(도로)회사부호"는 당해 운송을 책임지는 철도(도로운송)회사의 영문부호 4자리 ※CHECK DIGIT는 EDI에서만 검증하며, 서류제출시 미사용 가능 -적하목록관리번호는 적하목록이 관세청시스템에 최초 로 제출된 시점에서 확정되며 제출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일련번호는 1년 이내에 세관별 봉관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회사(대리점)가 자율적으로 부여	-H운송회사가 04년, 통관역에 도착한 차량의 적재물품목록 관리번호는? -수작업: 04-HDAS-123 4-5 -EDI: 04-HDAS12345
2-1.운송구분	AN	2	M	EDI	-운송구분부호 2자리 기재 (철도에 의한 운송: "30")	-30
3.철도회사 (운송회사)명 Name of Carrier	AN.	25	M	서류	-당해 열차(차량)의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호 ·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의 상호를 영문 25자리 이내로 기재	-HYUNDAI ASAN Cooperation
	AN	4	M	EDI	-관세청에 등록된 회사 코드 기재	-HDAS
4.열차번호	AN.	17	M	공통	-열차 번호 기재	-PX001245
5.출경횟수	N	3	M	공통	-동일차량 동일 출경횟수 일련번호 기재	-1,2,3
6.국적 (열차, 차량)	A.	7	M	서류	-차적상의 국적을 기재 · 관세청 봉계부호표상 해당국가 약어를 기재	-국적 →KOREA
	A	2	M	EDI	-차적상의 열차/차량의 국적을 기재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국적→KR
7.출발지	A.	20	M	서류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발송역 및 국가명 기재 · 발송방을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 역(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물품별 출발지가 다른 경우는 동일 출발지별로 화물명 세를 작성하고, 출발지가 바뀌면 PAGE를 달리한다.	-부산항 →PUSAN [KRPU]
	A	5	M	EDI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지역코드 · 해당지역의 ISO코드(UN/LOCODE)를 기재 · 물품별 출발지 다른 경우는 출발지별로 화물정보를 입력	-KRPU
	A.	20	M	서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도착지명용 20자리 이내로 기재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를 [ ]에 기재	-부산항 →PUSAN [KRPU]
8.도착지 Port of Discharge	A.	20	M	서류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재	-부산항 →PUSAN [KRPU]
	A	5	M	EDI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도착지 또는 최종 도착지명 기재(T/S화물) · 해당지역의 ISO지역코드(UN/LOCODE) 5자리 기재	-KRPU

나. 화물정보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성요령	작성예
9. 출발일시 Date of arrival	N	12	M	서류	-차량의 통관장(역) 출경(예정)일시를 기재 · 년월일(YYYY/MM/DD) HH:MM	-2004/09/01 10:30
	N	12	M	EDI	-차량의 통관장(역) 출경(예정)일시를 기재	-200409011030
10. 운송장번호	AN	16	M	공통	-운송회사가 발행한 화물운송장번호기재 (16자 이내로 기재)	-HDAS041001 23AB01
11. 화물구분 Cargo Classification	A	1	M	공통	-적하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반출 및 이적의 구분 · 반출화물의 경우는 'E', 이적화물인 경우에는 'R'로 구분하여 기재	-E
12. 차량번호 (차량번호)	AN.	17	M	공통	-열차의 차량번호 또는 차량이 여러 개의 경우 차량번호 모두 기재 · 열차는 열차번호, 도로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CX125
12. 컨테이너 번호 Container NO./	AN.	11	C	서류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기재 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를 기재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운송장번호가 있을 경우 운송장번호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CYUL2199854 (20GP) /541088-7709 881 IN BULK
	AN	4	C		-컨테이너 규격과 종류를 ISO 코드 4자리로 ( )에 기재 (ISO/DIS6346.2 사용)	20GP
	AN.	10	C		-운송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 "7"표시후 컨테이너번호 10자리 이내로 봉인번호 기재 ·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사Seal과 검역Seal이 봉인되어 있는 경우 2개의 봉인번호를 "7"표시로 연결하여 기재 ·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A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AN.	35	O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맨 앞에 "(AN)"을 기재한 후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AN.	11	C	EDI	-컨테이너 소유주의 고유번호 ·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 번호를 반드시 기재 · 하나의 운송장번호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벌크화물은 구분하여 'IN BULK'로 표시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개의 운송장번호가 있을 경우 운송장번호별로 컨테이너 번호 기재	
	AN	4	C		-컨테이너 SIZE TYPE CODE(ISO/DIS6346.2) -운송회사의 컨테이너봉인번호	
	AN.	10	C		-컨테이너별로 선사Seal 및 검역Seal을 모두 입력 -물품의 포장기호, 번호(MARKS & NO.)	
	AN.	35	C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포장단위 화물은 포장기호 및 번호를 35자리 이내로 기재.	

항 목	TYPE	SIZE	조건	구분	작 성 요 령	작 성 예
13.품명 Description of Goods	AN..	200	M	공통	-품명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규칙은 기재 생략)	-예 SPEAKERS (ELECTRO- VOICE BRAND) SPEAKERS ETC
14.수출신고 번호 (수입화물 관리번호)	AN	18	M	공통	-화물구분이 'E(수출화물)'인 경우 수출신고번호 기재 화물구분이 'R(이적화물)'인 경우 수입화물관리번호 기재 -'NCV' 기재 불가	
15.포장개수 /단위	A N AN	1 8 2	M M M	EDI	-분할선택여부 (Y/N) -포장개수 -포장종류 부호	
16.중량	N	14	M	EDI	-중량 : Kg단위로 기재	



전  
요  
민  
수  
상



## IV. 협력사업

---



IV-1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채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

- 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가. 남북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 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다.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 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 (사업실적 인정범위)**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한민서인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5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수익/비용 분석 포함)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환경관리 계획
- 바. 추진일정 계획

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상대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

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 조달 방법

바. 당사자의 임무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남북양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5.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에는 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대차대조표는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협력사업 신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대차대조표의 기재방법 등은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 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사업 신고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9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0조제4항제5호의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사업 투자 금액 관리)** 협력사업의 투자와 관련한 금액은 미국달러화 및 원화로 병기하되, 환율은 승인 및 신고수리 직전일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7.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력사업  
분야사업



IV-2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업무

**제3조 (사무소의 설치승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
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삭 제>**

**제5조 (승인 처리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 (사무소의 폐지)** ①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 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통일부  
협력사업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 (사무소 설치 보고등)** ①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

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V-3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1절에 따라 신고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5조 (적용규정)**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6조 (투자의 요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1.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3.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4.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5.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7조 (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제  
기획  
위원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삭 제 <삭제 2008.9.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신고수리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다만,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다만, 협력사업 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는 협력사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또는 변경신고수리서 사본

④신고의무자가 대북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한 후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기관의 확인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투자에 대하여 사후에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제 7 조의 2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의 투자의 신고)** ①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특구지역 투자자가 제4조 제2호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북한 현지법인

명의를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대부투자를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자금 송금 및 해당 자금 지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 현지법인이 건설공사비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기타 북한 현지법인이 시설계약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특구지역 투자자는 통일부 협력사업승인 이전에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을 분양 받은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투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의한 투자의 신고 시점에 신고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견요청)** 제6조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금의 송금 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에 송금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 제 <개정 2007.10.18>

**제 10 조 (투자금 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신고 수리된 사업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환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 등으로 협력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 11 조 (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북투자자 또는 북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권(채권)취득보고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2. 송금(투자)보고서: 송금(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인원 현황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내용을 포함한다):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대북투자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삭 제 <개정 2006.6.19>

②삭 제 <개정 2006.6.19>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자의 승인 또는 신고수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 2-1 절 지급 등에 대한 방법

**제 13-1 조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할 목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영업 중인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정된 거래에 한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3-2 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의 예치)** <삭제 2008.9.22>

**제 13-3 조 (외국환은행 북한지점 대외계정의 처분)** <삭제 2008.9.22>

### 제 2-2 절 자본거래

**제 13-4 조 (신고의 예외거래)** 거주자가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관리기관과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 3 절 북한지사

**제 14 조 (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 15 조 (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북한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

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통일부고시)에 따른 사무소설치인증을 얻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신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신고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신고일부 180일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 20 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업무)** 북한지사는 동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북한지사내 관한 사후관리 등)** ①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



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북한지사의 폐지 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된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 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기획재정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

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허가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 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등)** ①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대북투자자 및 북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사무소와 독립채산제를 적용받지 않는 북한지점의 경우 제2호에 의한 연간 영업활동 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의 신고: 즉시
2.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보고(월보): 매익월 15일 이내
3. 제17조 제1항의 신고: 1월이내

부 칙 <2009·7·31>

- 4. 제18조 제5항의 신고수리: 1월이내
- 5. 제19조의 결산보고: 1월이내
- 6.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1월이내
- 7. 제22조 제1항의 신고: 즉시
- 8. 제22조 제3항의 보고: 1월이내
- 9.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1월이내
- 10.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대북투자자의 투자물품 반출입관련 정보를 매익월 10일 이내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한국수출입은행장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4조 제1항의 1 및 2의 보고(월보): 매익월 말일 이내
- 2. 대북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매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 3. 대북투자 경영분석보고서: 매익년도 10월 이내

제 25 조 (권한의 위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6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기대효과
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의 명칭
  -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 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력사업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  
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  
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 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7-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V-5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3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협력사업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기대효과
- 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의 명칭
  -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 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북지원사업자
- 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9조 (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10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 ②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③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④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⑤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당 연 1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

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 12 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

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 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물품 등의 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 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③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 13 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의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5 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

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9.9.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남북협력기금지원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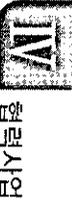
①신청인 (단체명)	한글: 한자:	②대표자	
③주소	(TEL) (FAX)		
④사업명			
⑤사업상대자			
⑥기금신청금액	총소요자금 :		
	자체재원확보액 :		
	기금지원신청액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대북지원사업계획서 1부                  2.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1부                  3.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 1부                  4.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복한 상대방과의 의향서 등 포함) 1부                  5.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⑥</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인쇄용지(묵급)80g/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대북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고인	단체명 (성명)	한글: 한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협력사업자 승인번호	협력사업승인 (변경)번호		
②사업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③사업기간				
④사업주요실적				
⑤자금사용총액			⑥자체재원확보액	
⑦지원자금수령액				
⑧지원자금사용액				
⑨지원자금불용액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 제4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p> <p>첨부서류 : 1.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보고인 ⑥</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통일부  
민정



## V.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5.28]</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li> <li>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5.28]</li> </ol> <p>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p> <p>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li> <li>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li> <li>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li> <li>4. 기금의 운용수익금</li> </ol>	<p>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5.12.14&gt;</p> <p>제2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lt;개정 2005.12.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li> <li>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li> </ol>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8.12.2&gt;</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 개정 2009.5.28]</p> <p>제5조 (장기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p> <p>第6條 삭제 &lt;1993.12.31&gt;</p> <p>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 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수입금</p> <p>제3조 삭제 &lt;2005.12.14&gt;</p> <p>제4조 삭제 &lt;2005.12.14&gt;</p> <p>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lt;개정 1991.2.1, 2005.12.14&gt;</p> <p>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li> <li>2. 기금운용계획</li> <li>3. 결산보고 사항</li> <li>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5.28]</li> </ol> <p>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li> <li>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li> </ol>	<p>야 한다.</p> <p>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1991.2.1, 2005.12.14&gt;</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li> <li>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li> <li>3. 자금사용계획</li> <li>4. 추정대차대조표</li> <li>5. 추정손익계산서</li> <li>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p> <p>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용자</p> <p>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p> <p>5.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p> <p>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p> <p>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전문개정 2009.5.28]</p>	<p>1991.2.1, 2005.12.14&gt;</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1991.2.1, 1993.3.6, 1994.12.23, 1999.5.24, 2005.12.14,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li> <li>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li> <li>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li> </ol> <p>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1.2.1, 2005.12.14&gt;</p> <p>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p>	<p>제2조 (협의회 의결사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8.6.1, 2003.2.6, 2004.5.14, 2008.1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li> <li>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li> <li>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li> <li>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li> </ul> </li> <li>4.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li> <li>5.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이상의 보증</li> </ol> <p>5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2.1, 2005.12.14&gt;</p> <p>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2008.10.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는 협의회의의 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li> </ol>	<p>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li> <li>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제3조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3.2.6, 2004.5.14, 2008.1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li> <li>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li> </ol> <p>2의2.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li> <li>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정통화의 인수</li> <li>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도예외 기금사용</li> </ol>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 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남한과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p>	<p>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p> <p>6. 삭제 &lt;2008.12.2&gt;</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p> <p>②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p>	<p>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9조 (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lt;개정 2008.10.10&gt;</p> <p>②제1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10.10&gt;</p> <p>제10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p> <p>제11조 삭제 &lt;2002.12.30&gt;</p> <p>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p> <p>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5.28]</p> <p>제10 조 (일시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p>	<p>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영 제8조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p> <p>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전문개정 2008.10.10]</p> <p>제14 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p> <p>②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p> <p>제15 조 (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gt;</p> <p>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5.28]</p>	<p>2. 손익계산서</p> <p>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p> <p>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p> <p>제16조 (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p> <p>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개정 1991.2.1, 2005.12.14&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8조 (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채·공채의 매입</li> <li>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li> <li>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09.5.28]</li> </ol> <p>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p> <p>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p>	<p>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gt;</p> <p>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p> <p>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2.1, 2005.12.14&gt;</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附則 &lt;제4240호,1990.8.1&gt;</p> <p>이 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附則(정부조직법) &lt;제4268호,1990.12.27&gt;</p> <p>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第2條 省略</p> <p>第3條 (國土統一院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p> <p>②南北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2項, 第7條第1項 내지 第4項, 第9條第1項·第2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第2項, 第12條 및 第14條중 “國土統一院長官”을 각각 “統一院長官”으로 한다.</p> <p>③省略</p> <p>第4條 내지 第10條 省略</p> <p>附則(국채법) &lt;제4675호,1993.12.31&gt;</p> <p>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부칙 &lt;제13237호,1990.12.31&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lt;제13269호,1991.2.1&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p> <p>①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p> <p>②내지 ⑮생략</p> <p>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lt;제13869호,1993.3.6&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lt;제384호,1991.3.27&gt;</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p> <p>[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p> <p>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p> <p>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p> <p>[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2條 내지 第7條 省略</p> <p>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南北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6條를 削除한다.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                      金の 元利金償還                      ⑥내지 ①省略</p> <p>附則(재정융자특별회계법)                      &lt;제5170호,1996.12.12&gt;</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내지 第3條 省略</p> <p>第4條 省略</p> <p>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南北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및 第12條第2號중 “財政投融                      資特別會計”를 각각 “財政融資特別會計”                      로 한다.                      ⑤ 내지 ⑤省略</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체육부장관”                      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lt;70&gt; 생략</p> <p>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lt;제14438호,1994.12.23&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lt;95&gt; 생략                      &lt;96&gt;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                      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                      한다.                      &lt;97&gt; 내지 &lt;327&gt; 생략</p> <p>부칙 &lt;제16326호,1999.5.24&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                      으로 한다.</p> <p>부칙(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lt;제3호,1998.6.1&gt;</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                      으로 한다.</p> <p>부칙 &lt;제17호,2003.2.6&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22호,2004.5.14&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49호,2008.12.2&gt;</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6條 省略</p> <p>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lt;제5454호,1997.12.13&gt;</p> <p>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附則(정부조직법) &lt;제5982호,1999.5.24&gt;</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lt;但書 省略&gt;</p> <p>第2條 省略</p> <p>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lt;66&gt;省略 &lt;67&gt;南北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7條第3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으로 한다.</p> <p>&lt;68&gt;乃至 &lt;78&gt;省略</p> <p>第4條 乃至 第6條 省略</p> <p>附則(國債法) &lt;제6075호,1999.12.31&gt;</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lt;33&gt;생략 &lt;34&gt;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p> <p>&lt;35&gt;내지 &lt;109&gt;생략</p> <p>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lt;제17824호,2002.12.30&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lt;16&gt;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를 삭제한다.</p> <p>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장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p> <p>&lt;17&gt;내지 &lt;28&gt;생략</p> <p>제6조 생략</p>	<p>제2조 (기금 자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2條 및 第3條 省略</p> <p>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⑥省略</p> <p>⑦南北協力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第8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償還</p> <p>⑧乃至 &lt;16&gt;省略</p> <p>부칙(국고금관리법) &lt;제6836호,2002.12.30&gt;</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lt;20&gt;생략 &lt;21&gt;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중중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전단중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p>	<p>부칙 &lt;제19180호,2005.12.14&gt;</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lt;제20721호,2008.2.29&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p> <p>③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p> <p>④부터 ⑥까지 생략</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p> <p>&lt;22&gt;내지 &lt;31&gt;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lt;제8135호,2006.12.30&gt;</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南北協力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제21079호,2008.10.10&gt;</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한다.</p> <p>제5조제1항중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p> <p>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p> <p>⑤내지 &lt;17&gt;생략</p> <p>제9조 생략</p> <p>부칙(정부조직법) &lt;제8852호,2008.2.29&gt;</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157&gt; 까지 생략</p> <p>&lt;158&gt; 南北協力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중 “統一院長官”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統一院長官”을</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통일부장관”으로, “財政經濟院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p> <p>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統一院長官”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統一院長官”을 “통일부장관”으로, “財政經濟院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統一院長官”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p> <p>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統一院長官”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p> <p>&lt;159&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칙 &lt;제9744호,2009.5.28&gt;</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Ⅵ. 남북협력기금 관련 하위법규

---



VI-1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제1장 총 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 제2장 기금의 관리

**제3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

급할 수 있다.

#### 제6조 (여유자금의 운용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장 기금의 업무

**제7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하 “남북교역·경제보험”이라 한다)
6.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경제협



력사업자금지원"이라 한다)

7.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9. 물품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10.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1.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 손실보전"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4.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5.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이하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이라 한다)
16.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인도적

지원자금"이라 한다)

17.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북한 비핵화 지원자금"이라 한다)
18.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 제8조 (지원 절차)

-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금 종류에 따라 별지 서식에서 정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통일부장관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용자에게 지원방침을 통보한다.
-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집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 (기금의 집행)

-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을 집행한다.
- ②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 범위내에서 전

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기금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5호 내지 제7조제14호의 지원 등 자금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의해 개설한 예금 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 제10 조 (사용결과 보고)

①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서식에서 정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한다.

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자금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금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은 해당 기금사용자를 기금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 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 조 (지원 통화) 기금지원 통화는 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지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 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지원제도·기금지원에 대한 심의, 기금사용결과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된다.

③그 밖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에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2 조의 2 (기금의 평가)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단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13 조 (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나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제 4 장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14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은 자 및 남북

한간 인적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 15 조 (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6 조 (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 17 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5조의 지원조건, 제16조의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5 장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 18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9 조 (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

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 20 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6 장 남북교역·경협보험

**제 21 조 (보험의 대상)**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납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 다. 대금지급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마. 개성공업지구 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
  - 바. 마목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에 따라 제품 구매자 앞 납품불능

또는 지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금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관련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마.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 제 22 조 (보험계약 체결한도)

- 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기업별·종목별·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험계약 체결방침 및 한도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별·종목별·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 제 23 조 (보험계약 대상거래)

- ① 보험계약 체결 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호의 마목 및 바목은 납한주민과 그 납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21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인 거래로 하고 라목은 결제기간 5년 이내인 거래로 하며, 마목 및 바목은 위탁가 공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보험계약 신청자 등)**

①기금에 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호의 남북교역보험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2. 제21조제2호의 경협보험계약: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②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

리자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보험계약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조 5의2에 의거 협의회 의결을 거쳐 설정된 보험한도내에서 계약방침을 결정한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한다.

**제 26 조 (부보율)** 부보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부보율을 정할 수 있다.

**제 27 조 (보험계약 조건)** 담보위험, 보험계약기간 등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8 조 (보험금 지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 7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지원

**제 29 조 (자금지원)**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남한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30 조 (지원금액·지원조건)**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 2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 31 조 (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승인을 얻거나 제17조의 2에 의한 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32 조 (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33 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34 조 (접수업무 위탁)** 대출 신청접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 35 조 (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8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경우에 한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31조의 대출의 대상, 제32조의 대출비율, 제33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기금의 대출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용자로는 경제협력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 3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 37 조 (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 제 8 장 채무보증

제 38 조 (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제 39 조 (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 6. 담보

- 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 제 9 장 금융기관 지원

###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 40 조 (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 41 조 (손실보전 신청등)

- ① 금융기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 42 조 (보전이자율)**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 43 조 (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 44 조 (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 45 조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기금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제 46 조 (인수조건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47 조 (북한원화의 환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 10 장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 제 1 절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

**제 48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한 또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대방 지역의 이산가족과 교류·상봉 또는 고향을 방문하는 자
2. 이산가족의 교류·상봉 또는 고향방문을 위한 주선·지원하는 자
3. 이산가족의 교류·상봉을 위하여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교류·상봉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9 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48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자의 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인 이산가족
2.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의 교류·상봉, 고향방문 및 이를 위한 주선·지원하는 자



**제 50 조 (지원 요건 등)**

- ①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은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지원, 용자, 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금액, 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 절 인도적 지원자금**

**제 51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인도적 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 2.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개선
- 3.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
- 4. 북한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 5.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 52 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51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
- 2.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3.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 4.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3 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인도적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인도적지원자금”으로 본다.

**제 3 절 북한비핵화지원자금**

**제 54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 또는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제 55 조 (구분 계리)** 통일부장관은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북한비핵화계정으로 계리할 수 있다.

**제 56 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북한비핵화지원자금”으로 본다.

**제 4 절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

**제 57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해 제48조, 제51조, 제54조 이외의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제 58 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으로 본다.

**제 11 장 보 칙**

**제 59 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 60 조 (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장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61 조 (대손충당금)** ①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

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 62 조 (민원사무처리기간)** ①제7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3 조 (관리 등)**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관리 및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수탁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제 64 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5 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7-7-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①신청인	성명 (단체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TEL) (FAX)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주선·지원자							
②방문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방문증명서번호				
③방문목적			④방문지역 <input type="checkbox"/> 남한 <input type="checkbox"/> 북한					
⑤방문계획 (종 박 일)	일 정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숙박일수	교통 수단	숙 소
	방문지에 도착 할 때까지							
	방문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방문지에서 출발한 이후							
⑥자금신청 사 유	<input type="checkbox"/> 자비에 의한 왕래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남북한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함							
⑦자 금 신청액	총 액	금						
	내 역	교통비 : 숙박비 :	식 비 : 기타경비 :					
⑧자금수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원화, 북한원화) 직접 수령 요망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은행에금계좌로 송금요망 예금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 요망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면								
신 청 일                      년        월        일								⑨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input type="checkbox"/> 없 <input type="checkbox"/> 음

-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4호서식] 작 제  
[별지 제5호서식]

**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고인	단체명 (성명)	한글 : 한자 :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협력사업자 승인 번호	협력사업승인 (변경) 번호	
②협력사업 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③협력사업 기간			
④협력사업 주요실적			
⑤자금사용총액		⑥협력사업수익금	
⑦지원자금수령액			
⑧지원자금사용액			
⑨지원자금불용액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보 고 인</p> <p style="text-align: right;">통 일 부 장 관 귀 하</p>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신청서**

①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사업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③사업개요	계약금액		
	사업내용		
	결제조건 반출, 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④보험계약 신청내용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역보험	<input type="checkbox"/> 경협보험
	보험금액	적용환율	
	보험금계약비율	보험기간	
⑤기타사항	남북협력기금의 용자여부		
	특기사항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5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 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통 일 부 장 관 귀 하</p>			
			수수료 없음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서)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별지 제7호서식]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변경전 계약증서번호		(약정일자: )
③변경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④변경사유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5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후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⑤</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8호서식]

**남북교역·경협보험금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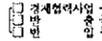
①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계약내용	증서번호	증서발행일
	계약금액	계약기간
③보험대상	대상기간	
	부보율	
	대상금액	
④보험금신청	보험신청액	적용환율
	산출명세	* 첨부 "남북교역·경협보험 신청액 산출명세"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5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8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역·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보험금 신청경위 2.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3. 남북교역·경협보험계약증서 사본 4. 보험금 신청액 산출명세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⑤</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남북협력기금 관련 위원회

[별지 제9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자금대출신청서

①차 주				②대표자																									
③주소				(TEL)	(FAX)																								
④사업명				⑤사업상대자																									
⑥대출신청금액				⑦자금용도																									
⑧대출이율				⑨대출형식	원화표시 중서대출																								
⑩대출기간				⑪거치기간																									
⑫원금상환방법																													
⑬이자납입방법																													
⑭채권보전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소재지</th> <th>부동산종류</th> <th>소유자</th> <th>비고</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급보증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발급예정 금융기관</th> <th>은행</th> <th>지점</th>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적금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예금주</th> <th>예·적금종류</th> <th>금액</th> <th>예치기관</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신용							소재지	부동산종류	소유자	비고					발급예정 금융기관	은행	지점				예금주	예·적금종류	금액	예치기관				
소재지	부동산종류	소유자	비고																										
발급예정 금융기관	은행	지점																											
예금주	예·적금종류	금액	예치기관																										
⑮기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 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이사회기결의서 사본 1부 5. 동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①의뢰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채무보증 신청내용	보증한도	보증목적		
	수혜자			
	보증기간	— (통산 년 월)		
③사업명				
④보증대상 채무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이율	대출기간		
	원리금상환방법			
	상환재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동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VI-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절 통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및 제7장의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및 채무보증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채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 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1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증을 말한다.
- 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
- 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개성공업지구

나.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제3조 (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4조 (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조 (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다.

**제6조 (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의하여 산정

한 대출이자율이 1% 미만일 경우 1%로 한다.

②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가. 투자자금대출: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대출: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매 1월 후취. 다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승인권자가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2. 반출·반입자금대출: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 설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 후취

**제7조 (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 8 조 (채권보전)** ①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표5] 내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장제3절 실적한도대출의 재대출시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물이 멸실, 훼손 기타 사유로 그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이 이전보다 하향 평가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대출기간, 채권보전을 기존 대출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채권보전조치)** 대출을 취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제 10 조 (예외취급)**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40억원 미만, 반출·반입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11 조 (면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관련 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지원대상

**제 12 조 (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1조에서 정한 자
2. 반출·반입자금대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제 13 조 (우선지원대상)** 제12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 등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5. 유희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 7. 농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 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 14 조 (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 2.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 3.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4.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5.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승인을 얻어 예외 취급할 수 있다.
  -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 나. 북한내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 제 3 절 신용대출

**제 15 조 (신용대출 대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제 16 조 (신용대출한도 관리)** ①신용대출한도는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제 17 조 (중소기업 특례)**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대출한도를 별도로 부여한다.

- 1. 대상거래: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 2. 대상자: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3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10만달러 이상일 것
    - 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 ②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지정지구 이외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 나.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 보증할 것
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며,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 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 금액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한도에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5억원 미만, 반출·반입자금 대출의 경우 2억원 미만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이 P5이하인 경우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거래: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 이상일 것

3. 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70% 이상일 것

## 제 2 장 경제협력사업 대출

### 제 1 절 통 칙

**제 18 조 (대출종류)**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이하 “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
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
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 (이하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
4.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하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
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제 19 조 (집행방법)** ①대출금은 소요시기별로 분할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집행 또는 일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자기자금과 대출금의 분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상환방법)** ①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 할상환
2. 운전자금대출: 만기일시상환



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②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1. 투자자금대출: 5년 이내
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6개월 이내
3.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7년 이내

**제21 조 (사업성 검토 등 의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자금대출, 사회기반시설자금 대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신청사업으로서 기금의 심사필요성에 의하여 의뢰하였으나 지원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차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 제 2 절 투자자금대출

**제 22 조 (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3 조 (소요자금 산정)**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법인설립

(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한다.

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공장이전비 포함)
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②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료
2.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
3.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감가상각분

**제 24 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 25 조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절 운전자금대출

**제 26 조 (대출요건)**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기업신용등급이 P5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7 조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다음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금액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소액의 개보수투자시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기업신용등급	대출한도
P1 ~ P2	1회전 운전자금 × 120% 이내
P3 ~ P4	1회전 운전자금 × 110% 이내
기 타	1회전 운전자금 × 100% 이내

**제 28 조 (1회전 운전자금)** 1회전 운전자금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 29 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 30 조 (대출기간의 연장)** ①차주가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차주의 신용도, 북한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4을 상환하여야 한다.

#### 제 4 절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제 31 조 (대출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
  - 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 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일 것
  - 가.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인 자

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제 32 조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제 33 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환토록 한다.

1.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
2.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 34 조 (집행절차)** 대출금은 대금납입시기에 따라 집행하되, 차주로부터 자기자금 송금사실을 확인한 후 분양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절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제 35 조 (대출요건)**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당해 사업내용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구비할 것
  - 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 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일 것

다.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2.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는 경우
- 3.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
- 4. 사업추진방식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 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 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방식

**제 36 조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당해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총사업비용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제 37 조 (대출조건)** ①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②대출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 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 38 조 (지원방침의 결정)**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의 지원방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39 조 (채권보전)** 제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보전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 사업의 자산(설비, 건물, 토지, 현금, 채권 등으로서 장래 취득분을 포함한다) 및 수익금의 담보 취득
- 2. 관련 계약서상의 차주의 일체 권리에 대한 담보 취득
- 3. 북한 당국 및 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서 또는 확약서 취득
- 4.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보장 또는 확약서
- 5. 기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 40 조 (세부 취급사항)** 통일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6 절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제 41 조 (취급요건)**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에 소재할 것
- 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
- 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6 이상일 것

**제 42 조 (대출금액)**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차주 순자산의 1배 범위내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P4 이상인 경우에는 차주 순자산의 2배 범위내로 한다.

**제 43 조 (담보의제)** ①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②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적담보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 44 조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①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장건물 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준공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다.

③기타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5 조 (대출이자율 조정)** ①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②대출이자율 조정시에는 최초 지원방침 결정시점의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한다.

③조정된 대출이자율은 최초대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자징수일에 이를 정산한다.

**제 46 조 (집행절차)** ①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50%에 달할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②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등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47 조 (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제 48 조 (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 물품 등의 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등의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동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9 조 (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제 50 조 (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②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치비
3. 유희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보수비

제 51 조 (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

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2 조 (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 제 3 절 실적한도대출

제 53 조 (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54 조 (대출금액)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최근 5년내에서 3년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7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80
최근 5년내에서 3년미만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5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60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제 55 조 (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제54조에서 규정한 교역실적은 대출신청시 확인가능한 직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위탁가공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반출금액이 완제품 반입

금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반출: 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된 때, 반출 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된 때
2. 반입: 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제 56 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로서 보증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 57 조 (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②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 58 조 (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은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등에 터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

융 등을 중복 수혜받을 수 없다.

## 제 4 장 협조대출제도

**제 59 조 (취급원칙)** ①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 60 조 (채무보증)** ①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③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1 조 (취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서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서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62 조 (사후관리)**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관리 및 처분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사후관리 등

### 제 1 절 관리업무

**제 63 조 (관리업무)** ① 사업진행상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
2. 동태점검
3. 약정관리
4. 담보관리
5. 상시관찰기업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질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 64 조 (대출금 사용확인)** 대출금 집행후에는 차주로부터 관련증빙을 받아 대출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집행 중지,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65 조 (사업진행상황 조사)** ①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영상황, 회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

치를 취한다.

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부터 연 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
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약정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66 조 (동태점검)** ① 기업신용등급이 P4 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로 [별표 9]에서 정한 “기업동태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동태점검 결과 다음 각호 1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 신용등급 조정, 상시관찰기업 선정(신용여신잔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최근 6개월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
2.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
3. 외부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4.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언론매체의 중대악재 보도 등
5.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발생 등
6.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등

**제 67 조 (약정관리)** ① 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점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약정이행 촉구
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 68 조 (담보관리)** ①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 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 연 1회 이상
2. 기타 담보: 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②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9 조 (상시관찰기업)** ①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66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②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 제 2 절 기 타

**제 70 조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실적한도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1 조 (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보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9.7.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  
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다.

[별표 1]

### 대출이자율의 결정 기준

1.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 가. 대출이자율의 운용: 고정금리로 운용
- 나. 대출이자율의 결정방법: 기준금리에 신용위험조정율을 더한 율
- 다. 대출이자율(조정율 포함)의 확정기준일: 대출승인신청 접수일

2. 기준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되,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평균 해당기간물의 유통수익률로 적용함.

대출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초과
국고채 기간물	6월 물	1년 물	3년 물

3. 신용위험조정율

가. 신용위험조정율은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아래표에서 정하는 조정율로 차등적용함.

구분	적용 기준	조정율(% 포인트)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지급 보증 및 물적 담보	i) 적격금융기관 등1)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포함)	-1.5%	-1.0%	-1.0%
	ii) 기타 i)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iii) 적격금융기관 등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iv) 기타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예금 및 확정채권			
	v)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복합소재자산 포함)			
신용 대출	vi) 장기신용등급 AA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1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0%	0.1%	0.2%
	vii) 장기신용등급 A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2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1%	0.2%	0.4%
	viii) 장기신용등급 BBB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3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2%	0.3%	0.6%
	ix) 기업신용등급 P4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3%	0.4%	0.8%
	x) 기업신용등급 P5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4%	0.5%	1.0%
	xi) 기업신용등급 P6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5%	0.6%	1.2%
	xii) 기업신용등급 P6 미만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1.0%	1.2%	2.4%

- 1) 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적격보증기관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포함(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
- 2) 기업신용등급 P3+, P3<sup>0</sup>, P3-는 P3로, P4+, P4<sup>0</sup>, P4-는 P4로, P5+, P5<sup>0</sup>, P5-는 P5로 각각 봄

나. 동일한 신청건에 대하여 적용할 신용위험조정율 적용기준이 대출부분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출부분별로 각각 산출한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하거나, 대출부분별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종 대출이자율의 10%를 할인한다.

라.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높은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함.



[별표 2]

**신용대출대상기업**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 가. 대출기간 5년 초과: 장기신용등급 AA 이상
- 나. 대출기간 5년 이하: 장기신용등급 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 가. 대출기간 2년 초과: 기업신용등급 P4급(P4+, P40, P4- 포함) 이상
- 나. 대출기간 2년 이하: 기업신용등급 P6 이상

[별표 3]

**차주별 신용대출한도**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중소기업 특례 신용한도1)
AA 이상	순자산의 70%	순자산의 80%
A 이상	순자산의 60%	순자산의 70%
BBB 이상	순자산의 50%	순자산의 60%

1) 제17조 (중소기업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신용대출한도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기업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중소기업 특례 신용한도1)
P1	순자산의 70%	순자산의 80%
P2	순자산의 60%	순자산의 70%
P3(P3+, P30, P3-)	순자산의 50%	순자산의 60%
P4(P4+, P40, P4-)	순자산의 40%	순자산의 50%
P5(P5+, P50, P5-)	순자산의 30%	순자산의 40%
P6	순자산의 15%	순자산의 30%

1) 제17조 (중소기업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신용대출한도

[별표 4]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	지연배상금률
30일 이내	대출이자율 + 3%
90일 이내	대출이자율 + 6%
90일 초과	대출이자율 + 9%

###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및 신용대출인정비율

####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령에 의거한 개성공업지구 담보인정비율

목적물 \ 취득시점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토지이용권	투자금액1)의 60%	감정평가액4)의 65%
건물	투자금액2)의 60%	감정평가액4)의 65%
기계설비	투자금액3)의 40%	감정평가액4)의 45%

- 1) 토지분양대금(또는 임차료)
- 2) 신축비용(기존건물은 잔존가치)
- 3) 평가금액(또는 시장구입가격)
- 4) 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되 감가상각, 선순위 담보한도,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 2. 개성공업지구 이외 북한지역 신용대출인정비율

목적물 \ 기업신용등급	F5 이상	F6	SM
토지이용권	감정평가액1)의 40%	감정평가액1)의 30%	감정평가액1)의 20%
건물	감정평가액1)의 40%	감정평가액1)의 30%	감정평가액1)의 20%
기계설비	감정평가액1)의 40%	감정평가액1)의 30%	감정평가액1)의 20%

- 1) 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되 감가상각, 선순위 담보한도,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서 발급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여야 함

### 북한소재자산의 담보 취득 및 관리

####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령에 의거한 개성공업지구

##### 가.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 (1) 담보의 취득

- (가)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채권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도 가능함
  - 담보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함
  - 공장의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 기계기구 등 부속 공용물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부동산등록세부규정'에 의한 공장저당의 형태로 취득함
  - 개성공업지구 입주예정업체가 분양기관에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업체의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 등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저당권설정계약대로 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등록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함
- (나) 저당권 설정금액은 여신금액의 130%이상으로 함. 다만, 회사의 신용상태, 지원사업의 사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다) 담보물건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납한 또는 제3국의 화재보험·손해보험 등에 부보토록 함. 단,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가치유지, 부보가능시 즉시 가입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특별약정을 추가토록 함
  - 보험금액은 여신금액의 120%로 함.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이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 시 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2) 담보의 관리

- (가) 북한담보의 신규 취득, 담보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담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함
- (나) 담보물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의 적정성, 가격변동상황 등을 점검함
  - 부동산: 연 1회 이상
  - 양도담보물을 제외한 동산: 연 1회(P6 이하는 반기 1회). 단, 기업신용등급이 P6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담보물 점검을 실시함
- (다)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기타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현장 점검을 통하여 관리함

나.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 (1) 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차주로부터 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보장하는 “담보제공확약서”를 징구함
- (2) 공사기간중의 각종 건축자재, 기계기구, 기타 후취담보물건에 대하여는 그 경과적 채권보전책으로 양도담보를 취득함
- (3) 공사기간중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을 답사하고 양도담보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설치상황을 조사함
- (4)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 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함

2. 개성공업지구 이외 북한지역

가. 담보의 취득

(1) 남한주민에 의한 단독투자시

목적물	취득요건
토지이용권 및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토지임대기관에 저당권을 등록</li> <li>- 저당권 행사 등에 관한 북한 토지임대기관의 보장서1) 징구</li> <li>-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다만 실사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실시할 것</li> <li>- 임차 잔존기간이 대출만료시점에서 10년 이상 존재</li> <li>- 임차료 전액 납부 완료</li> <li>- 건물의 부속 기계설비는 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li> </ul>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과의 계약서에 남측 투자자 소유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li> <li>- 북측 계약자의 양도담보권 확인각서2) 징구</li> <li>- 차주의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3) 징구</li> </ul>

- 1) “기금의 저당권행사 인정, 저당권행사기간중 토지사용료 면제, 철거비용 요구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2) “기 상계한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기계설비의 반출 또는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원부자재 및 가공품의 반출을 보장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3) 지정지구의 경우 원부자재 등의 양도담보계약서는 해당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합영방식에 의한 투자시

남한주민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북한소재자산에 한하여 인정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함.

- 당해 법인(합영회사)으로부터 양도담보제공확약서 징구. 단, 북측 관계 당국 및 북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첨부
- 당해 법인과외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법인 의사결정기관의 결의서 첨부).

- 단, 복측 관계당국 및 복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 당해 법인으로부터 양도담보권 실행 및 반출보장 각서 징구. 단, 복측 관계당국 및 복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다만 실사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실시할 것
- 차주에 대하여는 특약 체결 (담보의 제공·유지, 담보권 실행 등에 대한 제반 협조의무 수행, 기금 수탁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수행 등)

나. 담보의 관리

(1) 담보물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의 적정성, 가격변동상황 등을 점검함

- 토지이용권 및 건물: 차주로부터 매년 1회 건물, 토지관리상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이행실적 보고서 징구
- 기계설비: 차주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관리상태보고서를 징구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2) 차주의 담보관리의무 불이행, 담보물의 멸실·훼손, 권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출금액 감액, 채권보전 보장,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함

(3) 채권회수절차

① 토지이용권 및 건물

- 차주에게 저당권실행에 필요한 의무사항(현장확인 보장, 저당물 관리, 원매자 물색 등)을 수행토록 함.
- 매 2년 마다 편익비용 분석(전매가능성, 관리비용 등)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자산의 관리상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당권유지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함.

- 저당물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시 통일부장관의 가지급금 한도승인을 받아 적절한 관리를 수행함.(저당물 공고, 전문기관 알선의뢰, 토지이용권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지출 등)

② 기계설비

- 차주로 하여금 기계설비를 반입후 변제토록 중용
-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수가치가 회수비용에 못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양도담보권 포기



[별표 7]

### 1회전 운전자금 산출

1. 1회전 운전자금은 북한소재법인(지사, 공장 등 포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 1의 방식을 택하여 산출함.
  - 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 나.  $(\text{추정매출액} - \text{감가상각비}) \times \text{1회전기간} / 365$ 
    - 1회전기간
      - $(1/\text{매출채권회전율} + 1/\text{재고자산회전율} - 1/\text{매입채무회전율}) \times 365$
      - 단, 1회전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30일을 1회전기간으로 함.
2. 북한에 기진출한 사업으로서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별표 8]

### 채무보증료율 및 대지급료율

1.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 가. 요율산정체계: 기준보증료율 + 신용위험수수료
  - 나. 기준보증료율: 연 0.5%
  - 다. 신용위험수수료: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의 40% 적용
2. 대지급료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가. 대지급기간 30일 이내: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3%포인트
  - 나. 대지급기간 90일 이내: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6%포인트
  - 다. 대지급기간 90일 초과: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9%포인트

[별표 9]

### 기업동태점검표

(    년   월   일 )

#### 1. 기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설립일자	
주요생산제품		업종	
신용등급		회사채등급	

#### 2. 재무상황

구분	항목	년	년	년	금년반기결산일
재무상황	총 자산				
	자기자본				
	총차입금 (단기차입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회전율				

3. 기업동태점검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연체여부 등)</li> <li>· 합병, M&amp;A, 및 경영권 분쟁 등 발생</li> <li>· 공인회계사 의견(감사의견)</li> <li>· 소송제기, 중대악재 보도 등</li> <li>·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등</li> <li>·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항</li> </ul>	

4. 심사역 종합의견

[별표 10]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하 “기금대출”이라 한다)과의 협조대출에 참여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조대출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협약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한 지원범위내에서 갑이 취급하는 기금대출 지원사업에 을이 협조대출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협약의 적용대상 대출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대출로 한다.

제3조 (준수사항) 을은 이 협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대출금액) ①갑과 을의 대출금액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로 한다.

②을의 대출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에서 갑의 기금대출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5조 (대출형식) 대출형식은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은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종류별 대출기간 범위내로 한다.

②을의 대출기간은 갑의 기금대출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남북협력기금 관련 하위법규

다만, 대출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갚이 부득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기간을 5년 이상에서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상환방법) 을의 대출금은 기금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토록 하며, 상환받는 금액은 갑과 을의 대출분담비율,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상환계획에 따라 배분한다.

제8조 (기타 대출조건) ①대출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갑의 취급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며, 을의 취급분은 을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이 적용할 대출이자율 수준 등에 관하여 을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채무보증) 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을의 취급분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담보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갑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채무보증금액)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대상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범위내로 한다. 다만, 갑은 대상거래의 지원 필요성,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취급절차) ①갑은 차주로부터 대출상당 또는 대출신청을 받고 차주의 요청이 있거나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을에게 협조대출을 신청토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갑에게 협조대출 의향서 또는 동의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 1의 절차에 의하여도 협조대출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이 협조대출 대상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추천
2. 을이 차주의 요청에 따라 갑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협조대출취급의향서를 발급. 이 경우 갑은 협조대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③갑과 을은 신속한 협조대출 처리를 위하여 차주와의 상담진행과정에서 대

출금액,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④차주는 갑과 을에게 대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제공한다.

⑤갑은 차주에 대한 지원방침이 결정되는 즉시“협조대출취급조건통지서” 및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⑥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을에게 발급하고, 을은 갑의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⑦갑과 을은 대출취급시기의 변경, 대출금액의 증감 등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12 조 (심사 등) 차주 및 대출신청사업에 대한 조사 및 심사는 갑과 을 각자의 관계법규 및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 (사후관리) 갑은 이 협약에 의해 취급되는 대출금의 회수와 담보의 관리 및 처분 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차주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차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상호협조 등) 갑과 을은 기금대출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그 업무가 신속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6조 (기 타)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으면 1년씩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8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이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협약에 명시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갑과 을은 기 취급한 협조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_\_\_\_\_ 을 \_\_\_\_\_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기금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남북협력기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교류협력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제3조 (우선지원대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
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협력사업
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발전·보존·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
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
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
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지원한도)** ①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기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의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

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2008.11.28>

①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의 실행 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VI-4

교역보험 취급기준



## 교역보험 취급기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교역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종목)** 이 기준의 적용대상종목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류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선적후 반출보험”은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적전 반출보험”은 반출계약 체결후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3. “반입보험”은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 등의 구매자에 대한 납품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

험계약자의 관계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보험약관을 말한다.
  - 가. 선적후 반출보험 약관
  - 나. 선적전 반출보험 약관
  - 다. 반입보험 약관
  - 라.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약관
  - 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
7. “건별보험계약”이라 함은 계약서 또는 신용장 건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8. “회전한도책정”이라 함은 동일 남북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 10.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 11.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을 말한다.
- 12. “국별신용도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하거나 또는 OECD 국별신용도분류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국별신용도등급을 말한다.
- 13. “신용불량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말한다.
- 14. “본지사”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혈연관계,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또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5. “단순대행반출(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입) 의뢰자와 반출(입)계약상대간의 반출(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16. “연속반출(입)거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북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입)하는 거래관계(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반출(입)거래까지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7. “보험금 지급신청 유예기간”(이하 “신청유예기간”이라 한다)이

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을 말한다.

- 18. “물품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제5 조 (보험계약의 제한)**

①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
- 3.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거래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 책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남한주민
  - 가. 보험계약자의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이고, 기업신용등급도 S등급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가능
  - 1) 신설법인으로서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는 자

2) 미화 3만불 이하 소액 보험계약신청자

2. 북한의 계약상대방

가. 보험계약체결일 현재 만기일 연장 또는 상사분쟁 중에 있는 북한주민을 계약자로 하는 경우

나.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이 제15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

다. 보험계약체결일 현재 자료불비 등으로 신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가능

3. 신용장방식 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신용등급이 D- 미만인 경우 또는 개설은행 소재국의 비상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③상당단계에서 제1항 및 제2항 단서조항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전에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진행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제6조 (담보위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은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보험계약체결시점 및 보험기간)

①보험계약체결시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가목: 반출전
2.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나목: 제작전
3.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다목: 대금 입금전
4.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라목: 반출전

5.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마목 및 바목: 개성법인 생산시설 가동 이후

②보험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가목: 반출일 ~ 결제기일
2.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나목: 보험계약체결일 ~ 반출기일
3.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다목: 대금입금일 ~ 물품반입기일
4.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라목: 반출일로부터 5년 이내
5.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마목 및 바목: 보험계약체결일부터 1년

제8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선적후 반출보험: 선적금액
2. 선적전 반출보험: 반출계약금액
3. 반입 보험: 입금대금
4. 위탁가공설비 보험: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
5.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반출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계액
6.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납품계약액

②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

제9조 (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단,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부보율을 따른다.

제10조 (보험료율)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 11 조 (기타 보험계약의 제한)**

①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조항에서 “가목”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에 해당되거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각 세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에 따른 건별 보험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

②제1항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제 2 장 교역보험계약**

**제 1 절 신용조사**

**제 12 조 (신용조사의 실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보험계약대상거래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별계약체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개성공업지구 납품보장이행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 (신용조사의 방법)**

①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보험계약신청자: 재무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재무등급이 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2. 북한계약상대방: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을 조사하여 신뢰도에 따라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내용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신용장개설은행: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장개설은행 소재국: 국별신용도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 제2호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는 입수자료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 또는 제3국 기관을 경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

①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1.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무등급 1등급
2. 신설법인, 기타 신용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재무제표가 없으나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무등급 7등급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현황표, 전년도 남북교역실적증명원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법인세신고서 및 법인세납부영수증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제 15 조 (북한계약상대방의 평가특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 등급으로 분류한다.

1. 신뢰조사가 불가능한 자
2. 보험사고의 귀책이 있는 자
3. 사고위험 및 손실발생이 통지된 자
4. 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
5. 신뢰도평가서상의 평가항목중 3개항목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자

**제 16 조 (신용조사 처리기간)**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7영업일 이내에 완료하고,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계약체결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복측계약상대방의 자료입수 또는 확인과정이 지체될 경우에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2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 (신용등급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평가한다.

1. 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험계약신청자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해지된 경우

### 제 2 절 선적후 반출보험

**제 18 조 (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부대되는 용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1. 남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
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제 19 조 (보험계약신청)**

- ①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의 성립후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는다.
- ②보험계약신청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시 건별 또는 회전한도책정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전한도 책정신청은 동일 계약자 사이에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2년 이상의 교역기간과 연평균 20만불 이상의 교역실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제 20 조 (심사)**

- ①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제1항의 심사기간에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회전한도 책정심사)**

- ①회전한도책정신청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무신용장 방식 반출거래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각각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회전한도책정신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초과하여 특별책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무신용장방식 거래로 최근 1년간 결제실적이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의 1.5배 이상인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
  1.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의 등급이 하락한 경우
  2. 국내 타 반출자와의 거래중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회전한도책정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정상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을 생략할 수 있다.
- ⑤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사유발



생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회전한도채정액이 소멸된 이후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받아 재책정한다.

1.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성립이 제한되는 경우
2. 회전한도채정후 보험계약관계의 성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제 22 조 (보험계약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 또는 회전한도채정을 제한한다.

1.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 조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하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 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제 23 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통일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체결승인여부, 회전한도채정액 등 보험계약체결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과 보험증서를 교부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체결방침 통보기한에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4 조 (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통지서를 FAX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반출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반출통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1. 통지기일을 경과하여 통지된 경우.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2. 최종 반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3. 반출금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4.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보험계약 제한등급으로 변경되었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경우. 다만, 통일부장관이 반출자의 이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채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5.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등급이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채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 가. 동일한 계약당사자간에 거래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
  - 나. 결제기한 연장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이 보험계약제한대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당해 북한계약상대방이 미결제대금을 결제할 경우 그 결제금액 범위내
  - 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반출거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거래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7. 반출통지시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반출 당시 이미 대금미회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반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

협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을 통지한 날까지 선적완료된 건은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④회전한다책정시 기금수탁관리자는 회전한다책정의 범위내에서 선적 또는 이행시기별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반출통지서를 받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건별로 누적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계약건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다책정액을 되살려 운영한다.

#### 제 25 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보험계약의 효력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 경우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반출일로 소급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29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 제 26 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7영업일 이내에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7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는 해당 계약의 변경일로부터 10영업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제출받을 수 있다.

④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27 조 (결제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회전한다책정액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결제통지서를 받아 결제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 제 28 조 (다른 계약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 29 조 (보험료 납부통지)

①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와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의 추가보험료는 보험관계성립통지일 또는 보험계약변경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까지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한 내용변경의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면제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제 30 조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 3 절 선적전 반출보험

**제 31 조 (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1. 남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출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
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물품등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 제 32 조 (보험계약신청)

① 거래당사자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 보험계약가능등급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자로부터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는다.

1. 당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거래와 관련한 남북한 당국의 제 승인서 또는 승인신청서
3. 보험계약신청액 산출명세표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신청은 건별신청에 한한다.

**제 33 조 (심사)** 심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 34 조 (보험계약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

1. 반출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을 경과하여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한 보험계약신청서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동조항에서 예외취급을 허용 하거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 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제 35 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 36 조 (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37 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소급한다.

**제 38 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 39 조 (반출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및 보험계약한도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반출통지서를 받아 반출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제 40 조 (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 41 조 (보험료 납부 등)** 보험료 관련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 4 절 반입보험

**제 42 조 (적용대상거래)** 이 장의 적용대상거래는 반입대금(반출물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대금지급후 2년 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입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1. 북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계약
2. 남한기업의 북한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등 또는 남한기업이 위탁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반입하는 계약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등을 보험계약자의 제3국지사 등에 수출하는 계약

**제 43 조 (보험계약신청)** 보험계약신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 44 조 (심사)** 심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출자”는 “반입자”로 본다.

### 제 45 조 (회전한도 책정심사)

①회전한도책정신청시 기금수탁관리자는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각각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회전한도책정신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을 초과하여 특별책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무신용장방식 거래로 최근 1년간 결제실적이 회전한도책정가능액의 1.5배 이상인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

1.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신청자와 북한계약상대방의 등급이 하락한 경우

2. 국내 타 반입자와의 거래증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회전한도책정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회전한도책정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사유발생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회전한도책정액이 소멸된 이후 다시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받아 재책정한다.

1.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이 제한되는 경우
2. 회전한도책정후 보험관계의 성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

### 제 46 조 (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①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품 등을 반입하는 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반입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가액은 원부자재 등의 반출금액과 임가공비 지급액(설비반출계약에 의거 상계되는 임가공비 해당분을 포함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이행키로 약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은 각 이행시기마다 반입될 각각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47 조 (위탁가공시의 대금지급일)**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가공방식의 반입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본다.

1.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
2. 원부자재 등의 반출일 또는 임가공비 지급일중 늦은 날 (별도 임가공비 등의 지급이 수반되는 경우)

**제 48 조 (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의 보험계약조건)**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



계약 불이행위험을 기금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반입계약서(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주문서 등을 포함한다)상에 보험계약자의 수령거절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의 불이행시 북한계약 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범위는 거래관행, 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 49 조 (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50 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 51 조 (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지급 통지서(대금지급을 원부자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출통지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FAX 등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대금지급통지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1. 통지기일을 경과하여 통지된 경우.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2. 최종 대금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3. 대금지급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4.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보험계약 제한등급으로 변경되었거나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경우.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전한 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5.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등급이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의 재책정없이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가. 동일한 계약당사자간에 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나. 납기 지연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이 보험계약제한대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당해 북한계약상대방이 미이행 공급계약을 이행할 경우 그 대금지급액 범위내

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반입거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거래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7. 대금지급통지시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대금지급 당시 이미 물품의 반입위험, 공급계약 불이행위험 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보험계약제한방침에 해당되는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금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관계 불성립을 통지한 날까지 대금지급이 완료된 건은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④회전한도책정시 기금수탁관리자는 회전한도책정액 범위내에서 대금지급시기별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금지급통지서를 받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건별로 누적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

계약권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회전한도책정액을 되살려 운영한다.

**제 52 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대금지급일로 소급한다.

**제 53 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 54 조 (반입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회전한도책정액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물품반입통지서를 받아 반입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제 55 조 (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 56 조 (보험료 납부 등)**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제 5 절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제 57 조 (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운영하는 개성법인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을 반입하는 거래로 한다.

#### 제 58 조 (보험계약신청)

① 보험계약신청자는 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기금수탁관리자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59 조 (심사)** 심사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 60 조 (운영방식)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제57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64조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제 61 조 (보험기액 산정)

① 보험기액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기액은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제 62 조 (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63 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 64 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을 신고한 경우 원부자재 반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 등의 반입일 또는 반입예정일 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제 65 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63조의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입일에 발생한다.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58조 제2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제 66 조 (보험금액의 증액 및 감액)**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67 조 (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68 조 (약관 적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9]의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 6 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제 69 조 (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보험계약자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설립·운영하는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로 한다.

**제 70 조 (보험계약신청)** 보험계약신청에 관해서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 71 조 (심사)** 심사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 72 조 (운영방식)**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구매자별로 제69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7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②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73 조 (보험가액 산정)**

①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할 납품계약금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의 구매자앞 납품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 74 조 (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 75 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 76 조 (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 77 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 78 조 (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 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 79 조 (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 80 조 (약관 적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10]의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 7 절 기타사항

#### 제 81 조 (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① 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 제 82 조 (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 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 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숫점 둘째미만 단수절사

#### 제 83 조 (서류제출일의 기준)

① 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 3 장 보험금 지급

### 제 1 절 사고발생통지

제 84 조 (사고발생통지 접수)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사고금액, 북한계약상대방 및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 85 조 (사고발생통지시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북한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보험계약제한조치 발동
2. 사고조사의 착수
3. 채권보전 및 손실경감조치 행사
4.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한 사고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제 2 절 사고조사

#### 제 86 조 (조사의 시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북한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7 조 (사고조사의 방법)**

①조사는 서류조사, 출장조사 또는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두조사사항은 추후 서면자료를 보완한다.

②북한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보험계약자 및 관련 업계의 진술
- 2. 기금수탁관리자의 국외사무소를 통한 조사
- 3. 재외공관, 기타 관계부처 및 기관을 통한 조사
- 4. 제3국의 전문조사기관 또는 북한의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
- 5. 직원에 의한 현지 출장조사

**제 88 조 (사고조사사항) 사고조사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험계약자
  - 가. 약관 등 기금관련법규 준수여부
  - 나. 약관상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실의 가중여부
  - 다. 반출입거래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이행상의 하자유무
  - 라.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및 결제실적
  - 마. 연속거래에 있어서 선행 반출 또는 반입거래간의 결제현황
  - 바. 사고건의 해결을 위한 접촉내용 및 조치내용
  - 사. 계약대상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여부, 처분전망
  - 아. 여신 및 담보현황

자.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방 등**

- 가. 파산, 대금결제지연 또는 계약불이행 등 사고사유
- 나. 상사분쟁의 발생여부
- 다. 계약대상물품의 판매, 재고 및 처분전망
- 라. 향후 결제 또는 회수, 계약이행 전망
- 마.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실의유무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북한**

- 가. 비상위험 발생사유 및 내용
- 나. 사고와 비상위험간의 상관관계, 파급효과
- 다. 비상위험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 라. 북한계약상대방의 현지화 입금 또는 외화할당 신청여부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89 조 (사고조사 기한)** 사고조사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의 접수시기, 사고의 내용, 상사분쟁 및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감안하여 기한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조사결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 90 조 (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사고의 내용 및 발생원인, 귀책관계, 예상손실규모, 필요한 조치사항,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조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먼저 취하게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외채권추심기관앞 추심의뢰여부 결정 및 실행
2. 보험금 지급시 기금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반출입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조치 행사
3. 기타 필요한 조치

③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고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절 지급심사

#### 제91조 (보험금 지급신청 및 접수)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 기금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손실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
3.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신청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보험계약에 의해 신청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선적후 반출보험: 결제기일 이후
2. 선적전 반출보험: 선적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
3. 반입보험: 납기일 이후
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 제92조 (지급심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급심사에 착수한다.  
②지급심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손실액 산정으로 이루어진다.

1. 사고의 발생원인
2. 보험계약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유무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
3. 통지의무, 손실발생 경감의무 등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
4. 계약이행과정상의 하자유무
5. 당사분쟁의 유무, 공모여부 등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
6. 기타 보험금 지급방침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3조 (지급심사 처리기한)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급심사보고서를 보험금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급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방침을 결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심사 처리기한은 약관에서 별도 가산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급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심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4 조 (지급방침의 종류)** 보험금 지급방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
2. 면책
3. 지급거절 등

**제 95 조 (면책)**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대상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면책처리한다.

**제 96 조 (지급거절 등)**

①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거절, 보험계약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과실의 경중,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거절,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효력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제 97 조 (신용장 불일치 사고건의 처리)**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개설

은행이 서류하자를 이유로 서류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용장조건 위반사유가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적 은행표준관행에 비추어 중요하지 아니한 사소한 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보지 아니하거나 일부 과실로 볼 수 있다.

**제 98 조 (연속반출입거래시의 결제시기 적용)**

①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②연속반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입물자의 반입시기는 선적일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이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제 99 조 (연속반출입거래시의 거래관행 인정)**

①연속반출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결제관행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 2회를 초과하여 누적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

1. 연속반출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결제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이 이전 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결제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선적된 경우. 단, 최장 결제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2. 연속반입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물품반입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물품반입계약의 이행기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 이내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지급된 경우. 단,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나.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반입물품 이행내용의 하자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중에 있는 상태에서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내 북한계약상대방과 중재, 합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분쟁이 정당하게 해결된 경우. 단 최장 분쟁해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②제1항의 면책결정기준이 되는 거래건이 결제기일(이행기일)에 지급(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가 북한계약상대방의 영업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 등 구체적인 북한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에 기인하거나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이행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보험계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0 조 (보험금의 산정)

①보험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보험금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순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대상손실,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을 금액 등을 차감한다.

제101 조 (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2 조 (손실액의 산정의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4 절 보험금의 지급

#### 제103 조 (보험금 지급 등)

①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한다.

②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보험금 지급시 대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채권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1. 반출화환 어음
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3. 반출입계약서
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

④기금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제104 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60/100(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와 복한계약상대방간에 분쟁, 법적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사고 관련 반출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보험금을 가지급할 경우 지급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추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5 조 (비용의 보전)**

①보험계약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보전가능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역이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통상의 교통비
2. 통상의 체재비(숙박비와 일비의 합계액을 말함).
3.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단,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4. 반출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5. 기타 보험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의 보전은 동 의무이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하여 줄 수 있으며, 회수전 또는 회수금액 확정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절 채권보전 및 회수**

**제 106 조 (전매의 승인)**

①손실경감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반출입물품에 대한 전매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할 수 있다.

1. 전매 구매자
2. 반출입물품의 품질 및 보관상태와 그 상품의 시장
3. 전매단가, 전매수량, 전매금액의 결정방법 등 전매계약조건
4. 결제조건
5. 기타 전매관련 비용 등

②유리한 전매가격, 전매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얻어 기금수탁관리자가 전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반출입물품의 특성 또는 최선의 전매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전매 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107 조 (가지급금 반환)**

①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

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 제 108 조 (지연배상금율)

약관과 보험증서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산정은 남북경제 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되 대출이자율은 지급 또는 납부통지일 전월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율로 한다.

#### 제 109 조 (사고거래의 종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

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거래에 대하여는 매반기말 통일부장관에게 사고거래현황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속 또는 소멸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한다.

1.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
2. 국내법상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3. 기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0 조 (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8.10>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담보위험의 범위

손실보조대상	담보대상 위험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가목	아래 ①~⑦의 사유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나목	아래 ①~⑧의 사유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다목	아래 ①~⑧의 사유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라목	아래 ⑨~⑩의 사유

\* 담보대상 위험: 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 ⑨ 수출위험: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물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⑩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 불능·파손
- ⑪ 계약불이행위험: 북한의 계약당사자가 당국 등인 경우로서, 계약서상의 설비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입게되는 설비의 사용불능

[별표 2] 보험료율

1.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 기본요율±할인율/할증율
2. 기본요율

구 분	기본요율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가목	1개월 이하 0.5%(1개월단위 0.1% 가산)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나목	3개월 이하 0.3%(1개월단위 0.01% 가산)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다목	1개월 이하 0.5%(1개월단위 0.1% 가산)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라목 <sup>주)</sup>	연 0.5%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마목 <sup>주)</sup>	연 1%
기금관리규정 제21조 1호 바목 <sup>주)</sup>	연 1%

주) 분기별로 납부하되 일할계산함

3. 할인율: 기본요율×적용율

구 분		적용율
기금관리규정 제21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i) 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50%
	ii) 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30%
	iii)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20%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sup>주)</sup>		25%

주)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단, 제21조 제1호 바목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4. 할증율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기본요율의 최고 200%까지 할증

[별표 3]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 평가

1. 신뢰평점별 등급분류표

- 보험계약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확인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A, B, C 3단계로 평가하고, 각 평가요소별 배점을 가장 합산한 평가점수에 따라 상, 중, 하 3개 등급으로 분류함.

신뢰등급	상	중	하
평점	8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50점 미만

2.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

평가요소		평점	등급별 배점		
			A급	B급	C급
내력	소속	10	10	7	3
	조직	10	10	7	3
	연혁	10	10	7	3
	소 계	30	30	21	9
결제불이행 경험		20	20	10	3
남북교역실적		40	40	20	10
정성평가		10	10	7	3
합 계		100	100	58	25

<평가 배점기준>

가. 내력

- ① 소속: 북한계약상대방 혹은 상급기관의 소속에 따른 분류
  - A: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내각소속, 민경련 등 대남 경험기관 소속, 공식 문헌등에 의한 확인가능한 무역거래인가기업
  - B: 지방기구, 기타 소속
  - C: 미확인
- ② 조직: 북한계약상대방의 조직규모 및 소재지 등에 따른 분류
  - A: 산하기업을 운영하거나, 평양·개성·국외에 지점 또는 지사가 존재
  - B: 상기 이외의 기업
  - C: 미확인
- ③ 연혁: 북한계약상대방의 동종업종 경력에 따른 분류
  - A: 10년 이상
  - B: 5년 이상
  - C: 5년 미만

나. 계약이행 경험: 과거 결제 또는 계약이행의 성실성에 따른 분류

- A: 결제불이행(계약불이행) 경험 없음
  - B: 결제불이행(계약불이행) 경험은 있으나, 당사자간 해결된 경우
  - C: 결제불이행(계약불이행) 경험 있음
- ※ 확인 불가의 경우는 “B”로 평가

다. 남북교역실적: 북한계약상대방의 남북교역 실적에 따른 분류

- A: 최근 5년내 거래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음
  - B: 최근 5년내 거래 3년 미만의 경험이 있음
  - C: 거래경험 없음
- ※ 최근 1년간 교역규모가 20만불 초과시 5점 가산

라. 정성평가: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대외의 평판, 클레임발생시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평가



[별표 4]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의 산정(무신용장 방식)

1. 평점별 회전한도 책정가능 한도

-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은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요소별 평점을 가중합산하여 산정되는 총평점에 의거 아래의 구간별로 설정
- 단, 동일 북한기업에 대해서는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총 평점	회전한도 책정가능한도
80점 이상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0점 이상 ~ 80점 미만	10억원 이하
60점 이상 ~ 70점 미만	7억원 이하
50점 이상 ~ 60점 미만	5억원 이하
40점 이상 ~ 50점 미만	3억원 이하
40점 미만	2억원 이하

2.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

가. 북한계약상대방 신뢰도(배점 30점)

신뢰도	상	중	하
평점	30	20	10

- 별표1의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평가에 의거 평가

나. 보합계약자의 신용도(배점 15점)

신용도	1~3등급	4~6등급	7등급, SM등급	S등급	기타
평점	15	12	9	6	3

- 재무등급 적용(단, 재무등급 7등급 미만인 경우 신용등급)

다. 당사자간 결제실적(배점 40점)

결제실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5만불 미만
평점	40	30	20	10	5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당사자간 결제실적

라. 기타(배점 15점)

정성평가	양호	보통	미흡
평점	15	10	5

- 정성평가: 결제기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포함여부, 물품의 시장성 등 감안

[별표 5]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의 산정(신용장 방식)

1. 평점별 회전한도 책정가능 한도

-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은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요소별 평점을 가중합산하여 산정되는 총평점에 의거 아래의 구간별로 설정
- 단, 동일 북한기업에 대해서는 회전한도 책정가능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총 평점	회전한도 책정가능한도
80점 이상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70점 이상 ~ 80점 미만	20억원 이하
60점 이상 ~ 70점 미만	10억원 이하
50점 이상 ~ 60점 미만	5억원 이하
40점 이상 ~ 50점 미만	3억원 이하
40점 미만	2억원 이하

2. 평가요소별 평점 및 배점표

가. L/C 개설은행 신용도(배점 40점)

신용등급	A	B	B-	C	C-	D	D-	E	평가불가
평점	40	35	30	25	20	15	10	5	5

-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 적용

나. L/C 개설은행 소재국 신용도(배점 20점)

국별신용도	A	B	C	D+	D0	D-	E	미평가
평점	20	18	16	14	12	10	8	8

- 국별신용도등급 적용

다. 북한계약상대방 신뢰도(배점 15점)

신뢰도	상	중	하
평점	15	10	5

- 별표 1의 북한계약상대방의 신뢰도평가

라. 당사자간 결제실적(배점 10점)

결제실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5만불 미만
평점	10	8	5	3	1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당사자간 결제실적

마. 대금지급조건(배점 5점)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기한부
평점	5	2

- 신용장상의 대금지급조건

바. 기 타(배점 10점)

정성평가	양호	보통	미흡
평점	10	5	3

- 정성평가: 결제기간, 계약서상의 중재조항 포함여부, 물품의 시장성 등을 감안



다. 무역결제기금 관련 의무부규

[별표 6]

교역보험약관(선적후반출)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출자(이하"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출물품등(이하 "물품"이라 함)의 대금(대용물자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이하"대금지급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 (적용대상거래)

- ①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②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 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남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출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
  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물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 ③제2항의 반출계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반출계약 등에 의하여 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보험계약"이라 함은 선적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2회이상 분할하여 결제하기로 계약된 경우에는 각 결제기마다 결제받을 각각의 금액으로 합니다.
- ②"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 ④"지급불능"이라 함은 북한계약당사자의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북한계

약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회수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물품반출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출계약에서 정한 납기일로부터 2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⑥"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반출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⑦"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⑧"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 ⑨"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남한본사(지사)와 북한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북한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 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 ⑩"단순대행반출"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의뢰자와 반출계약상대방간의 반출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⑪"대행반출"이라 함은 종합무역상사인 보험계약자가 남한의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반출계약상대방에게 반출계약을 이행하고 반출대금의 미결제로 인한 손실을 반출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반출을 말합니다. 다만, 제9항의 단순대행반출을 제외합니다.
- ⑫"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은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 제4조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에 따른 물품을 반출(물품의 선적을 말하며, 선적전에 물품을 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함. 이하 같음)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대금회수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북한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
4.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5.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6.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형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7. ‘가’목 내지 ‘바’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출허가 등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출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출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5조 (보험금)

①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제6조에 의한 손실액} - \text{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times \text{제19조에서 정한 부모율}] - \text{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 제6조 (손실액)

대금회수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종 보험계약자가 결제기일까지 결제받을 수 없게 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의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감소시킨 반출채권(반출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함)의 금액. 다만, 기금이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자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4. 단순대행반출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대행반출의뢰자에게 구상하여 지급받은 금액. 다만, 사고발생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액 전액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 (면책)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 반출거래를 포함함) 이전의 반출대금이 결제기일(반출계약내용에 따른 반출대금의 최초 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부터 20일을 경과(이전의 반출대금이 결제기일부터 20일을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상태에서 추가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하지 않습니다.
  - 가.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인 경우
  - 나.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기금이 결제관행을 인정하는 경우

3.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5. 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



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 제9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 및 반출통지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제11조 (손실방지·경감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12조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 (조사에 따를 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출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4조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 제15조 (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계약의 성립후 반출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반출전에 신청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보험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 ①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②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반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③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반출의 통지 및 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을 반출한 후 반출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기금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금은 반출내용을 심사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통지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금은 반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제1항의 반출통지가 지연된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통지된 반출금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반출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있는 경우 지급보증인)의 신용악화 등으로 보험관계성립이 불가능하여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선적완료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제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반출당시 이미 대금미결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반출거래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18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반출일로부터 결제기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제20조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선적금액, 대응물자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3. 복한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료 납부 등)

①보험계약자는 반출통지한 반출대금에 대하여 반출한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여진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확정일출급 또는 일자후정기출급인 경우에는 반출한 날부터 반출계약서에서 정하여진 날수. 다만, 추심일(또는 환어음매입일)후 정기출급인 경우에는 반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10일을 더하여 정하여지는 날
2. 일람출급인 경우에는 30일. 다만, 물품도착시 일람출급조건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반출한 날에 기금이 정한 표준항해일수를 더하여 정하여지는 날
3. 일람후정기출급인 경우에는 반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30일을 더한 날 수.

②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환급)

①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 (사고발생 통지)

①보험계약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신청)

①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결제기일 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①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출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7조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 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0조 (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3조 (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 (이의신청)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 (적용환율 및 단수결제)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결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결제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결제

제37조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7]

교역보험약관(선적전 반출)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출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출계약에 따라 물품 등을 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반출이 지연된 경우(이하 "반출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 (적용대상거래)

①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2년이 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출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남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출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이 위탁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계약
3. 남한주민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당 경제특구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물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계약

③제2항의 반출계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반출계약 등에 의하여 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보험계약"이라 함은 반출계약금액(또는 선적예상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2회이상 분할하여 결제하기로 계약된 경우에는 각 결제마다 결제받은 각액의 금액으로 합니다.
- ②"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반출불능"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출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④"반출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과 계약체결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

여 반출계약에서 정한 반출기일로부터 2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반출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⑥"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⑦"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⑧"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남한본사(지사)와 북한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북한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⑨"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4조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반출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2.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3. 북한의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4.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불능
5.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6.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 또는 지급국에 원인이 있는 외화송금 지연
7. '가'목 내지 '바'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출허가 등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 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출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출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8.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 제5조 (보험금)

①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9조에서 정한 부보율]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 제6조 (손실액)

반출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종 보험계약자가 반출할 수 없게 된 물품대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출불능이 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반출불능이 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출불능이 된 날부터 2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3. 보험계약자가 반출불능으로 인하여 반출계약의 해제, 해약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출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출계약에 의한 물품의 대금에서 위약금,계약금,손해배상 또는 기타 보험계약자가 당해 해제 등을 위해 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뺀 잔액
4.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물품의 반출로 취득하게 되어 있던 이익(당해 물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함)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 (면책)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3.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 제9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출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2조(지시에 따른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따른 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출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5조(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을 말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라도 선적기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①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

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②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③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1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반출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 ①보험계약자가 반출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선적금액, 대응물자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선적기일 또는 선적예정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 ②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 ③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장애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일부터 반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제22조 (보험료의 환급)

①보험계약이 무효 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3조 (사고발생 통지)

①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제기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 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 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신청)

①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선적기일과 제23조의 통지한 날중 늦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의 보험금신청유예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①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출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6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7장 채권의 회수

#### 제27조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



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 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0조 (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출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

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칙

제33조 (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의한 기타 권리,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 (이의신청)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

일의 환율로 환산

-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제37조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8]

교역보험약관(반입)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자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입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입계약에 따라 대금(반출물자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 지급후 물품등(이하 “물품”이라 함)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반입이 지연된 경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 (적용대상거래)

- ①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②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입대금의 결제기간이 선후 또는 대금지급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입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1. 북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
  - 2. 남한주민의 북한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남한기업이 위탁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을 보험계약자의 제3국지사 등에 수출하는 계약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보험가액”이라 함은 반입대금지급액을 말합니다.
- ②“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 ④“반입불능”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대금지급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물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⑤“반입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대금지급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입계약에서 정한 납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⑥“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의액
- 3. 반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⑦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⑧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 ⑨ "제3국지사"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3국에서 당해 보험계약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현지법인을 포함합니다.
- ⑩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남한본사(지사)와 제3국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제3국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 ⑪ "단순대행반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입의뢰자와 반입계약상대방간의 반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⑫ "대행반입"이라 함은 종합무역상사인 보험계약자가 남한의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반입계약상대방에게 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반입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반입을 말합니다. 다만, 제10항의 단순대행반입을 제외합니다.
- ⑬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 제4조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반입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2.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북한의 반출불능
3.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에서의 반출불가
4. '가'목 내지 '다'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입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입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입의 제한 또는 금지

### 제5조 (보험금)

①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 제19조에서 정한 부보율]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 제6조 (손실액)

반입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반입할 수 없게 된 물품의 대금에서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선적의 경우 물품의 대금은 각각의 선적마다 선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 (반입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된 날부터 2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3.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할인, 상제, 채무면제, 사고발생후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감소시킨 것으로 확정 또는 간주할 수 있는 반입대금의 금액
4.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5. 단순대행반입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대행반입의뢰자에게 구상하여 지급받은 금액. 다만, 사고발생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액 전액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 (면책)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 반입거래를 포함) 이전의 반입대금에 대한 계약상 물품반입일이 20일을 경과(이전의 물품반입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입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반입대금을 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가. 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인 경우
    - 나.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기금이 결제관행을 인정하는 경우
  3.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5. 반입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 (보험계약의 해지 등)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 제9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 및 반입대금지급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제11조 (손실방지·경감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입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12조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 (조사에 따를 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입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4조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 제15조 (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입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대금지급전 또는 반입계약체결일(신용장방식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을 말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금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기간 이후라도 선적기일의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 ①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②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반입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③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대금지급의 통지 및 보험관계의 성립)

-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반입대금지급 후 대금지급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기금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금은 대금지급내용을 심사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통지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금은 대금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1. 제1항의 대금지급통지가 지연된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제1항에 의하여 통지된 대금지급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3.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있는 경우 지급보증인)의 신용악화 등으로 보험관계성립이 불가능하여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대금지급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제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대금지급당시 이미 물품 반입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반입거래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18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대금지급일로부터 물품반입기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제19조 (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 제20조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 ①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 1. 계약금액(입금대금, 반출물자 포함)
  - 2. 결제조건(결제통화, 선적기일 또는 선적예정일 포함)
  - 3. 복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 4. 반입물품의 중요한 규격
  - 5. 기타 중요한 내용
- ②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 ③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보험료 납부 등)

- ①보험계약자는 반입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로부터 반입납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제22조 (보험료의 환급)

①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3조 (사고발생 통지)

- ①보험계약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 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④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신청)

- ①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납기일 이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 ①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입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속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26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7장 채권의 회수

### 제27조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28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0조 (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입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 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제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칙

제33조 (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 (이의신청)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제37조 (절차사항)

가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9]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기금”이라 함)이 보험계약자가 그가 설립·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내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함)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반출하였으나, 이 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제품의 반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 약관입니다.

제2조(적용대상거래)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거래로서 보험기간동안 기금이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반입불능”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반입지연”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 배분액
    3. 반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①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② “기금 관련 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 제4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에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원부자재를 반출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이하 "사고"라 함)되는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북한 당국의 물수,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2.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 발생
3.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당국간 합의 파기, 불이행
4.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남한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6.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조치
7.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험금 지급액)

①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보험금 지급액} = [(\text{제6조에 의한 손실액} - \text{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times \text{제15조에서 정한 부보율}] - \text{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위탁가공계약 금액 등이 외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 제36조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제6조(손실액)

①반입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반입할 수 없게 된 제품의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의 합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제26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신청전 회수에 의한 금액
2.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금액(연체이자 제외)
3.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반입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된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 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4.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부터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감소시킨 것으로 확정 또는 간주할 수 있는 금액
5.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②제1항의 원부자재 금액은 개성법인에서의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실제 반출된 원부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합니다.

③제1항의 위탁가공비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text{위탁가공비} = \text{원부자재 구입비용} \times \text{위탁가공비 비율(주)} \times 1/2$$

주) 위탁가공비 비율: 전년 또는 최근 1년간 개성법인에 지급한 위탁가공비를 동일 기간동안 개성법인앞 원부자재 반출금액으로 나눈 비율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면책)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4조 각호의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었으나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에 발생한 손실
2. 제16조 제1항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다만,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8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이전 또는 제18조 제2항의 보험관계 해지 이후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4.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물품에 대해 발생한 기타 손실
5.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약관 위반, 의무불이행, 중대한 과실 등
  3.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 신청시 및 보험관계 성립시에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 당해 원부자재 등을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12조(지시에 따른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원부자재 등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조사에 따른 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위탁공계약, 원부자재 반출 및 제품반입 내역,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기금이 요청하는 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또는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4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 제15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 제16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 ①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②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③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보험계약의 신청 제한)

- ①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을 제한합니다. 단, 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통일부장관이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보험가입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 ①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 위탁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반출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는 제3항 단서의 신고일에 보험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의 반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원부자재의 반출 또는 제품의 반입후 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는 보험계약후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항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 지연하는 경우. 다만, 통지지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원부자재 등의 반출 중단 등을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원부자재가 반출된 경우는 인정

제19조(보험계약의 변경)

-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 보험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액 또는 감액신청시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변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건이 적용됩니다.

제20조(보험료 납부 등)

-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제3항 및 제4항의 보험료 연체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은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
3.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급
4.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2조(사고발생 통지)

- ①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어 연속하여 2주 이상 경과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 발생 여부를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등 위험(손실)발생내용 및 예상회수액 등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제품 반입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신청)

- ①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시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부자재 공급업체 명단 및 원부자재 대금 미결제 업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신청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보험계약자는 제22조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

- ①보험계약자가 제23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청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5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위탁가공계약 상대방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지급신청권 양수자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제25조(보험금의 가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4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6조(보험금 지급신청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 이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손실액에서 차감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전 회수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회수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27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 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 (\text{총회수금액}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기금관련규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하거나, 다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 (\text{총회수금액}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0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채권회수관리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위탁가공원부자재 등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원부자재와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 칙

#### 제33조(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제35조(이의신청)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36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계약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6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 제37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3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

####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 제1장 총 칙

#####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기금”이라 함)이 개성공업지구내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함)을 운영하는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납품계약”이라 함)하고 납품계약 이행을 위해 개성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 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으로 반입불능 또는 지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 제2조(적용대상거래)

- ①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는 제외한다)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반입하여 납품하는 거래로서 보험기간동안 기금에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를 보험금 수령자(이하 “수혜자”라 함)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할 납품계약금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한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기금이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반입불능”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반입지연”이라 함은 제4조의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위탁가공한 제품의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 ⑥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4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성법인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반입이 중단(이하 “사고”라 함)되는 경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북한 당국의 몰수, 박탈 또는 권리 침해
- 2. 북한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등 정변 발생
- 3.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간 합의 파기 및 불이행
- 4.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 5. 남한의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 6.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조치
- 7.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험금 지급액)

①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액 = (납품계약금액 - 재6조의 면책대상손실) × 0.3%/일 × 사고사유발생일수
---

- ② “납품계약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한 납품계약금액으로 보험계약상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인정합니다.
- ③ “사고사유발생일수”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반입중단일로부터 반입재개일까지의 일수로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④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납품계약금액이 외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 제26조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제6조(면책)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4조 각호의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었으나 2주 이내(2주가 되는 날은 불포함)에 반입이 재개된 경우에 발생한 손실
- 2. 제14조 제1항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제1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이전 또는 제16조 제2항의 보험관계 해지 이후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 4.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물품에 대해 발생한 기타 손실
- 5.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 면책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0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7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 2. 보험계약자의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중대한 과실 등
- 3.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8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 신청시 및 보험관계 성립시에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조(손실방지·경감의무)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지시에 따른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조사에 따른 의무)

①보험계약자는 납품계약, 위탁가공계약, 제품반입 내역,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된 증빙 서류 등 기금이 요청하는 자료를 유지·보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또는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계약 체결

제14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①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보험계약의 신청 제한)

①보험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해제 또는 해지된 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을 제한합니다. 단, 기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통일부장관이 사전에 기한을 정하여 보험가입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기금에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체결된 납품계약 등은 제3항 단서의 신고일에 보험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또

는 반입)에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될 수 있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위탁가공계약 체결후 또는 제품의 반입후 즉시 기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일 이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보험계약후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3항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 지연하는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2.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납품계약 중단 등을 통지한 경우

#### 제17조(보험계약의 변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 보험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액 또는 감액신청시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변경일로부터 기산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의 면책조건이 적용됩니다.

#### 제18조(보험료 납부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해당 분기말일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토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보험료 연체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이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9조(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 제5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0조(사고발생 통지)

①보험계약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입이 중단되어 연속하여 2주 이상 경과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 발생 여부를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해당 계약의 부분이행 여부 등 향후 전망이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제품 반입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1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보험계약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20조의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보험금의 지급)

①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청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6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3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수해자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제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제23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장 보 칙

제24조(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6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계약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보험금 지급액: 담보위험사유 발생일의 환율
3.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4.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제27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VI-5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경제사업 보험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종목)** 경제사업 보험은 다음 각호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분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대부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3. “권리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다음 각목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약관을 말한다.
  - 가.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
  - 나.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 다.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
5. “경제협력사업(이하 “경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하 “경제사업자”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받은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분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



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한다.

나. 경험사업자가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에도 본호의 투자로 본다.

7. “대부등 투자”라 함은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험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권리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

나.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하는 것

9. “투자금”이라 함은 지분등 투자의 경우 지분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원금을, 대부등 투자의 경우 대부등 원금을, 권리등 투자의 경우 권리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각각 말한다.

10. “투자송금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지분, 대부등 및 권리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나 반출한 날

나.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

다.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의 반출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등에 전입된 날

11. “경제특구지역”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북한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1호 이외의 북한지역을 말한다.

13.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

14.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다음 각목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지분등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투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나. 대부등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

다. 권리등 투자의 경우에는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

15.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7. “비상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북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사유로 투

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제 5 조 (보험계약의 제한)**

①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남한주민

- 가.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정함이 있는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
- 다.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한 경우

2.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협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피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제 6 조 (제출서류)**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1. 매 회계연도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 2. 필요한 경우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의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단,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복측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한다). 단,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 (담보위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다. 다만, 보험기간동안 계약 해지 사실이 없고 보험료 연체사실이 없는 등 계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지분등 투자보험: 지분의 취득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 2. 대부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
- 3. 권리등 투자보험: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의 평가금액

②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

**제 10 조 (보험료)** 보험료율은 교추협 의결을 거쳐 별표2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 2 장 보험계약 신청 및 승인

**제 11 조 (보험계약 신청)**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에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심사)**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을 받은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 13 조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체결 승인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보험계약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증서와 별표 3 내지 별표 5의 해당 약관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증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① 당해 투자의 증자 이전에 투자분 전액에 대해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증자 등(유무상증자, 사채 및 채권의 증액, 권리등의 추가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자 등에 대한 신청은 증액관련 협력사업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 당해 경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자 이전 투자분의 보험계약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증자분 내용심사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제 15 조 (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를 실시하고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제6조 1호에 따라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관계 성립 또는 증액되는 보험관계 성립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체결 내용에 부합하고 제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 16 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담보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7 조 (부보율)

①부보율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경제특구지역: 100분의 90
2. 북한일반지역: 100분의 70

②제1항 부보율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보율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 18 조 (보험금액의 감액)

①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

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

1. 대부원리금의 상환
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
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 19 조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①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험계약 해지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15일 이내 방침을 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1. 경협사업의 복측투자계약상대방 변경
2. 경협사업 지역의 변경(단, 경제특구지역내 변경은 제외)
3. 경협사업의 중대한 사업내용 변경(보험금액의 증액, 보험기간의 연장)
4. 기타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의 변경

②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15일 이내에 방침을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1. 보험계약자 및 피투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변경
2. 보험금액 증액 없이 보험가액만 증액하거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보험금액과 대부투자보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3. 대부 등 투자의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 조건의 변경
- 4.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신청권의 양도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5. 기타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의 변경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20 조 (다른 계약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 3 장 보험료 납부

#### 제 21 조 (보험료 납부)

①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③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 제 22 조 (보험료)

①보험료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선취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받는다.

②최초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그 분기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받는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 성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의 105%를 받는다.

③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후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는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분기별 보험료 납부통지를 분기 초일에 한다.

**제 23 조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 4 장 보험금의 지급

**제 24 조 (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 경험사업 보험금 지급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지급신청 유예기간)**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에 경험사업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가지급금)** 경험사업 보험금의 가지급금은 보험금액의 100분

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피투자회사등의 평가)**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

**제 28 조 (손실액 산정)**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제 29 조 (최저 보험금)**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

1. 연속 3년: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
2. 연속 3년 이후: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

**제 30 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 ①지분등 투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순자산평가액과 사고후 순자산평가액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손실액으로 간주한다. 단, 직전회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기회비용(전월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한도로 한다.
- ②대부등 투자의 경우는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을 손실액으로 간주한다.

③권리등 투자의 경우는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5 장 기타 사항

**제 31 조 (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

- ①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 ②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책임개시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 ③반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환율은 반출일에 실제 적용된 환율로 한다.
- ④결산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 32 조 (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 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 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수점 둘째자리만 단수절사



### 제 33 조 (서류제출일의 기준)

- ①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부 칙 <2009.7.1>

1. 이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개정내용중 담보위험의 범위는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적용한다.
2. 제4조, 제11조, 제14조, 별표 3(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의 제1조, 별표 4(대부 등 투자보험 약관)의 제1조, 별표 5(권리 등 투자보험 약관)의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담보위험의 범위

- 수용위험: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별표2] 보험료율

1. 보험료율의 결정 체계: 기본요율 - 할인율
2. 기본요율: 연 0.5%~연0.8%
3. 할인율: 기본요율×적용율  
중소기업 적용율: 25%
4. 보험금액 50억원 초과 부분의 보험요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

[별표3]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내용)

①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②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제17조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함)를 설립하고, 남한주민이 투자비용에 따른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함)을 취득하여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이하 “배당금”이라 함)을 분배받기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지분의 투자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상당한 증명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제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④“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⑤“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한 지분의 투자원금, 배당금 또는 지분 및 배당금의 상실에 따른 취득금(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수용위험

- 가. 북한당국에 의한 지분 또는 배당금 청구권의 몰수·박탈
- 나. 북한당국에 의한 피투자회사의 부동산·설비·원자재·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사업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의 침해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2. 송금위험

-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의 송금불능
  -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ㄷ.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 나.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수

3.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4. 약정불이행위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한 것에 한함.

5.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제4조 (손실액)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 약관

1. 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지분(이하 "사고지분"이라 함)의 투자원금과 당해 지분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배당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배당금청구권(이하 "사고배당금청구권"이라 함. 배당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청구권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청구권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범위를 한도로 함.

가. 배당금의 합계액은 지분의 해당 투자원금 범위 이내

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년도별 배당금은 해당 투자원금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

②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지분의 투자원금과 당해 위험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 "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 위험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 중 적은 금액
2. 배당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송금불능액으로서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의 범위를 한도로 함.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사고지분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액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6.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7. 당해 송금불능액중 지출한 금액

④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1. 사고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지분에 관하여 피투자회사등이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금액
2. 사고배당금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피투자회사등이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날수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①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제4조에 의한 손실액} - \text{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times \text{제16조에서 정한 부보율}] - \text{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지분의 투자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 나.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한 권리등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④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추가지급)

①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②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③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 (면책)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9조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지분, 배당금청구권 또는 취득금 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 (보험계약의 해지 등)

-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제11조 (손실방지·경감의무)

-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12조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지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 (조사에 따를 의무 등)

-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협사업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 마다 취득·보관해야 하며, 기금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니다.

제15조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6조 (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기간)

- ① 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 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보험계약체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19조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됩니다.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경험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당해 지분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험료를 받습니다.

제21조 (보험료 납부 등)

-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회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1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제2항의 승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환급)

-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3조 (사고발생 통지)

- ① 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제1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신청)

-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배당금청구권과 관련하여 배당금 지급기일 이전에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 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로 배당금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의 불능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손실발생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이 사고발생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당률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의결된 배당률이 있는 경우
  2. 기타 보험계약자가 배당률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

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 제26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직전년도 순자산평가액과 사고후 순자산평가액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손실액으로 간주합니다. 단, 직전회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기회비용(전월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한도로 한다.

## 제7장 채권의 회수

### 제28조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 ①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 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



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1조 (사고발생통지 후의 이익잉여금의 발생)

①보험계약자가 제3조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사유로 사고발생을 통지한 후 피투자회사등에게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32조 (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지분, 사고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분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 및 배당금청구권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재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지분, 사고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5조 (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1.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납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납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8조 (이의신청)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9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지분의 취득원금: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제4조의 평가: 평가한 날의 환율
3. 제4조 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1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제40조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1조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4]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내용)

①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②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제17조의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함)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또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장기대출금에 관한 채권(이하 "대부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④"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⑤"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한 대부동의 원금, 이자 또는 대부등 및 이자의 상실에 따른 취득금(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수용위험

- 가. 북한당국에 의한 대부동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몰수·박탈
- 나. 북한당국에 의한 피투자회사의 부동산·설비·원자재·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사업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의 침해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2. 송금위험

-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의 송금불능
  -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ㄷ.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 나.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수

3.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4. 약정불이행위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된 것에 한함.

5.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제4조 (손실액)

①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대부등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대부동의 원금(이하 "사고원금"이라 함.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원금에 한함)과 당해 위험에 관련된 대부동의 원금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이자청구권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이자청구권(이하 "사고이자청구권"이라 함. 이자기일이 도래한 청구권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청구권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②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대부등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대부동의 원금과 당해 위험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 "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 위험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 중 적은 금액

2. 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송금불능액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액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 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6.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7.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출한 금액

④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

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납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날수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피투자회사등이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해 상환 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
2. 대출금 채권의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의 채권금액에서 당해 평가시에 회수불능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제5조 (보험금)**

①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제4조에 의한 손실액} - \text{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times \text{제16조에서 정한 부보율}] - \text{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 나.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한 대부등의 원금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④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추가지급)**

①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②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 (면책)**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9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대부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 (손실방지·경감의무)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자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조사에 따를 의무 등)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험사업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납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마다 취득·보관해야 하며, 기금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6조 (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기간)

①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③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 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⑤보험계약체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19조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부터 시작됩니다.

③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후 경험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 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보험계약자는 당해 대부동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험료를 받습니다.

제21조 (보험료 납부 등)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1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 제2항의 승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보험료의 환급)

①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경우: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 (사고발생 통지)

①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는 제1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신청)

①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대부등 원금 및 이자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일 이전에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로 동 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의 불능이 확실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손실발생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금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이 사고발생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①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

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제26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로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을 손실액으로 간주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8조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 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총회수금액}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총회수금액}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1조 (사고발생 통지후의 송금불능액 등의 지출)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을 통지한 후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원금, 사고이자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대부등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 및 이자청구권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 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원금, 사고이자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

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 칙

제35조 (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1.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8조 (이의신청)

-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9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대부동의 원금: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제4조의 평가: 평가한 날의 환율
3. 제4조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1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7. 원회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제40조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1조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5]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내용)

①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 또는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자산 반출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②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제17조의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제1항의 북한지사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자산반출에 따른 권리는 반출한 설비나 자산의 소유권 등을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이하 “취득원금”이라 함)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권리등”이라 함은 제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권리 또는 소유권 등을 말합니다.

④“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제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⑤“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⑥“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 (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권리등의 상실에 따른 취득금(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수용위험: 북한당국에 의한 권리등의 몰수·박탈
2. 송금위험
  -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의 송금불능
    -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ㄷ.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 ㄹ.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수
3.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하여 권리등의 손해를 입어 권리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약정불이행위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등의 손해를 입어 권리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한 것에 한함.
5.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제4조 (손실액)

①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권리등의 취득원금(이하 “사고권리등”이라 함. 북한지사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자산 반출의 경우에는 반출 당시 평가금액을 말함)과 당해 사고권리등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②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권리등의 취득원금과 당해 위험

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 위험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 중 적은 금액에서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사고권리등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액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6.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7.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출한 금액

④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등 목록,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 (보험금)

①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 × 제16조에서 정한 부모율 ]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취득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나.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한 권리등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④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추가지급)

①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

②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 (면책)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19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권리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사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 (손실방지·경감의무)

①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지시에 따른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지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조사에 따른 의무 등)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협사업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복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마다 취득·보관해야 하며, 기금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6조 (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기간)

①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③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



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⑤보험계약체결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19조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 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됩니다.

③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경험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보험계약자는 당해 대부분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험료를 받습니다.

제21조 (보험료 납부 등)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2회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

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1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 제2항의 승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을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환급)

①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전액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경우: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 (사고발생 통지)

①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 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는 제1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보험금의 지급신청)

①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①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제26조 (보험금의 가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8조 (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총회수금액}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text{총회수금액} - \text{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times (1 - \text{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1조 (사고발생 통지후의 송금불능액 등의 지출)

①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을 통지한 후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②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32조 (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권리,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

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권리등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 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권리,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급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 (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 칙

제35조 (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1.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납환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남한주린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 (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

도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제38조 (이의신청)

①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39조 (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권리등의 취득원금: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2. 제4조의 평가: 평가한 날의 환율
3. 제4조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1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회수한 날의 환율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10원미만 단수절사

제40조 (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1조 (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VII. 남북합의서

---



VII-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18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VII-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는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 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방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방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방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방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



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 15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 18 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

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 제 4 장 수정·발효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가: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 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 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대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 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 제 7 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 제 8 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 제 9 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

체 없이 제공한다.

### 제 10 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1 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2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보장(제목에서)  
투자자산  
지분  
의장권  
천연자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국공채  
법령  
법인  
자연인  
수용  
외환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정관  
서명

북측

보호(제목에서)  
투자재산  
출자몫  
공업도안권  
자연부원  
기업리권  
공채  
법  
실체  
개별적인 사람  
물수  
외국환자시장  
전환성화폐  
규약  
수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관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 제 4 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방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5 조 고정사업장 판정

-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 제 6 조 부동산소득

-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기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 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 제 7 조 기업이윤

-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 8 조 수송소득

-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 제 9 조 특수관계기업이윤

-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 제 10 조 배당금

-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



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 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 11 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

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 제 12 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 제 13 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제 16 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제 17 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

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 제 18 조 연 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제 19 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은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 제 20 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21 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 제 22 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 23 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 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

- 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 제 24 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25 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



에 요구하지 않는다.

### 제 26 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 제 27 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 제 28 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측

고정사업장  
 사업활동  
 영위  
 인적용역을 제공  
 권한있는 당국  
 거주자 판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생활하는 주거  
 실질적인 관리장소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재화  
 지배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컨테이너  
 국제적인 경영체  
 조정  
 발생  
 수익적 소유자  
 국채  
 사용료  
 대가

#### 북측

고정영업장  
 경영활동  
 진행  
 봉사활동을 진행  
 해당기관  
 거주자 확정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살림집  
 실제적인 경영지  
 건설장, 설치, 조립장  
 물품  
 종속관계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집합  
 국제적인 운영체  
 조절  
 조성  
 수익자  
 정부유가증권  
 지적소유권사용료  
 요금

남측

독립적 인적용역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급여  
지급받은 보수  
수취인  
귀속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지배

북측

전문봉사활동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로임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납인  
이전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사업  
관리



###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 3 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 제 4 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 제 5 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제 6 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 제 7 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8 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 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 제 9 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 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 11 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 제 12 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 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 제 13 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 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 제 14 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 15 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16 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 제 17 조 조 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8 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 제 19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중재판정  
 중재인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중재인명부  
 법령  
 활동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구성하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서명  
 문본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북측

재결  
 재결원  
 책임재결원  
 재결원협의회  
 재결원명단  
 법  
 사업 보장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내오다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수표  
 문건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 제 3 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 제 4 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 제 5 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 제 6 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 제 7 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 8 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 제 9 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10 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 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방측에 통보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연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달라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VII-4

남북경협 9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방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 제 6 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 제 7 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8 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 제 9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제 7 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 제 8 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 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 제 9 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 제 10 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 제 11 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12 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3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통관	세관통과
물품	물건
말한다	의미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부	명단
상호	호상
통관절차	세관수속과 검사
송하인	송화인
수하인	수화인
운송	수송
운송인	수송자
컨테이너	집합
봉인의 이상유무	봉인의 상태
개장	개봉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통행차량, 차량	운수수단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내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내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어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내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 6 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납축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 제 7 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납축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 제 8 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 제 9 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 제 10 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11 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2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말한다	의미한다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 제 6 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 제 7 조 체 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8 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 제 9 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 제 10 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제 11 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 12 조 정보교환과 협력

-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제 13 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14 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제 15 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 제 16 조 효력발생 및 폐기

-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측	북측
통행차량등	수송수단
교통수단	운수수단
출입심사	출입검사
출입장소	출입지점
훼손	오손

남측

상황  
주거  
벌칙금  
부과하거나  
상호  
구성  
발생하는  
문본

북측

정황  
주택  
벌금  
물리거나  
호상  
조직  
제기되는  
문건



국립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자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제 4 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 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 제 5 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 제 6 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 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①각종 무기류, 흥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 ⑤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제 8 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 제 9 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 10 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족

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방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남과 북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 제 12 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 제 13 조 적용범위

-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14 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 제 15 조 효력발생 및 폐기

-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

력을 발생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정의	총칙
노선	로정
사항	문제
표지	표식
부착	표기
사실	정형
탑승인원	차량에 싣는 인원
적재화물	싣는 화물
위해	오염
각호	조항
상호주의 원칙	호상성의 원칙
귀책사유	잘못
지원	방조
소요비용	소비비용
부속서	보충합의서(부록)
문본	원문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 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 제 4 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

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 제 5 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협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 제 6 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 제 7 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호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 제 9 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발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 제 10 조 운 입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 11 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 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 12 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제 13 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 제 14 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 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 제 15 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 제 16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 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 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 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

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남북합의서

#### 제 4 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 제 5 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 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 6 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 7 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 제 8 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 제 9 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10 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제 11 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 제 12 조 통 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 제 13 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 제 14 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남측

구성  
이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보좌인원  
중재인  
기피신청  
이의신청  
중재판정부  
중재판정  
본다  
서면  
서명  
중재인명부  
열거  
교부  
분쟁해결절차  
서류  
문서보관소  
연락관  
수령  
문본  
원본

#### 북측

조직  
이 아래부터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보장성원  
재결원  
거부신청  
반대의견 제기  
재결원협의회  
재결  
인정한다  
문서교환 방식  
수표  
재결원명단  
지적  
제시  
사건심리  
문건  
문서보관장소  
연락대표  
문서접수날자  
문건  
원문

##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정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이 상대측 항구에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



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 제 5 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구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 제 6 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 제 7 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 제 8 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9 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 수단을 보장한다.

### 제 10 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 11 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 제 12 조 국제협약 및 국제 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 제 13 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제 14 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 제 15 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북합의서

남측

해상운송  
해상운송회사  
입차  
어획물  
소지  
해사당국  
통관  
해역  
항행경보  
하역  
용역  
해양사고  
전복  
보호조치  
방제  
구조·구난  
무사귀환  
대리점  
관행  
준용  
교류·협력

북측

해상수송  
해상운수기관  
용선  
물고기  
소유  
해운당국  
통과  
수역  
항해경보  
상하선  
봉사  
해상재난  
침몰  
구원조치  
제거  
구조  
안전송환  
대리인  
관례  
적용  
협력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 운항 목적
  -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 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 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외교통일부  
남북합의서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합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합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군사활동
  - 나. 잠수항행
  -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야.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찰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제 3 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 제 4 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상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5조 통 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부록 제1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회사(명칭)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운항목적				
운항기간				
출발·기항·도착항 예정일시				
운항구분	정기		부정기	회
미개설항 입항 이유	* 미개설항 입항 신청시만 작성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				



<부록 제2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서

		접수번호		
회사(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운항노선				
운항목적				
운항허가 유효기간				
운항구분	정 기		부 정 기	회
<p>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운항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p>				

<부록 제3호 양식>

20 년 월 일

해양사고통보서

보고자 :

사 고 명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상황	<input type="checkbox"/> 인명 : <input type="checkbox"/> 선박 : <input type="checkbox"/> 화물 : <input type="checkbox"/> 오염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치사항	
협조사항	

<별표 1>

## 해상항로대

### 1. 외곽항로대

#### 가. 외곽항로대 참조점

번호	참조점	번호	참조점
①	41-29-00N, 130-14-00E	⑦	35-02-00N, 129-22-00E
②	40-00-00N, 130-10-00E	⑧	34-19-00N, 128-58-00E
③	37-10-00N, 130-00-00E	⑨	33-55-00N, 128-25-30E
③-1	38-23-00N, 129-05-00E	⑩	32-42-00N, 126-41-00E
③-2	38-57-00N, 128-40-00E	⑪	32-42-00N, 126-00-00E
③-3	39-13-00N, 128-28-00E	⑫	34-00-00N, 124-41-00E
③-4	39-36-00N, 128-54-00E	⑬	36-00-00N, 124-25-00E
④	36-08-00N, 130-00-00E	⑭	36-48-00N, 124-19-00E
⑤	35-29-00N, 130-00-00E	⑮	38-03-10N, 123-57-00E
⑥	35-13-00N, 129-40-00E	⑯	38-43-00N, 125-00-00E

나. 외곽항로대 폭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 2.5마일씩 5마일로 한다.

### 2. 입·출항 항로대

#### 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

개설항구	항로대
나진항	참조점 ①과 42-07-15N, 130-15-24E점을 연결한 선
청진항	참조점 ①과 41-41-00N, 130-04-00E점을 연결한 선
홍남항	참조점 ③-3와 39-46-15N, 127-39-00E점을 연결한 선
원산항	참조점 ③-3과 39-15-00N, 127-52-20E점을 연결한 선
고성항	참조점 ③-2와 38-47-30N, 128-14-00E점을 연결한 선
속초항	참조점 ③-1과 38-11-25N, 128-37-22E점을 연결한 선
포항항	참조점 ④와 36-08-00N, 129-33-00E 및 36-04-17N, 129-28-52E점을 연결한 선
울산항	참조점 ⑥과 35-24-16N, 129-24-52E점을 연결한 선
부산항	참조점 ⑦과 35-04-11N, 129-08-47E점을 연결한 선
여수항	참조점 ⑨와 34-40-51N, 127-55-42E점을 연결한 선
군산항	참조점 ⑬과 35-56-56N, 126-25-53E점을 연결한 선
인천항	참조점 ⑰와 36-53-54N, 125-48-00E점과 37-04-40N, 126-16-05E점을 연결한 선
남포항	참조점 ⑯과 38-43-06N, 125-00-24E점을 연결한 선

나. 입·출항 항로대 폭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씩 1마일로 한다.



국립해양안전부

3. 남측 해역에서 속초항, 고성항, 원산항 또는 흥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과 각 참조점 ③-1, ③-2 또는 ③-3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에 입항하거나 속초항을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③-1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나진 또는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고성 또는 원산항에 입항하거나, 고성 또는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흥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거나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흥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4, ②, ①과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한다.
4. 입·출항시 항계내 통항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로를 이용하여 통항 한다.
5. 항로대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해역	수역
근무일	로동일
다음의 사항을	아래의 조항을
해사당국	해운당국
다만	그러나
일시	날자, 시간
상호	호상
명시하여	담아
원거리	먼거리
항행통보	항행경보
무기부품	무기부분품
양·적하	양도, 상하선
훼손	피해
기상 악화	일기 불량
검색	검열
사후처리	차후처리
항계	항경계선
도선사	수로안내원
항비	항만비
선석 배정	배자리 선정
피난	대피
해양사고	해상사고

남측

구조·구난  
방제  
대응  
탐재  
구난  
소요  
대리점  
수석대표  
수행원  
남북장관급회담  
문본  
성명  
부정기  
귀하  
피해상황  
조치사항  
참조점  
통항

북측

구조  
방지  
대책  
적선  
구조  
소비  
대리기관  
단장  
수원  
북남상급회담  
원문  
이름  
비정기  
앞  
피해정형  
조치정형  
좌표점  
통행





## 2009 남북교류협력법규집

---

발행처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별관

전화 (02) 2100-5815 / 팩스 (02) 2100-5819

인쇄일 2009년 9월 9일

발행일 2009년 9월 11일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